

아동청소년 성보호를 위한 연령조정 방안연구

책임연구원 이정민

공동연구원 이수정



연구보고 19-R53

아동·청소년 성 보호를 위한 연령조정 방안연구

책임연구원_ 이정민(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원_ 이수정(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국문초록

본 연구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한 집행 과정에서 사회 도덕적 인식과 상이한 결과가 나오면서 대두되고 있는 의제강간 연령조정에 관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에 실제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현황 및 이들 성범죄의 특성을 알아보고 실제 현행법을 적용한 예를 살펴보았다. 또, 서구사회에서 시작되어 발전된 의제강간의 진화과정을 살펴보고 각각 변천사적 의미를 확인하였다. 뿐만 아니라 최근 해당 연령을 상향 조정한 스페인의 경우와 새로 관련법 제정에 들어간 프랑스의 사례를 살펴보고 이들이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를 알아보았다. 이와 같은 기초 연구를 바탕으로 의제강간 기준연령 설정과 주로 관련이 되는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 능력을 확인하고자 전국 200여 명의 청소년 성교육 및 성상담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결과 대략적으로 아동·청소년은 남녀학생 모두 만 15세 이상은 되어야 성적 자기 결정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 설문 참여 전문가의 50% 이상이 현행법에서 기준으로 삼고 있는 만 13세의 연령은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를 위한 1)연령기준의 재정립, 2)사회적 합의, 3)연구 기반 법률개정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연구요약

1. 연구목적

- 본 연구는 급증하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현황과 특징을 알아보고 성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는 만 13세 이상 20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 실태를 확인하여, 현행법의 실효성을 재고해 보고자 함.
- 특히,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의 핵심적 사안이 될 수 있는 의제강간 연령 조정에 대해 보다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근거를 찾아, 실제 법제 정비에 필요한 과학적 근거와 사회 도덕적 명분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둠.
- 이에, 의제강간 기준연령 설정의 핵심이 되는 아동·청소년의 성의식 수준과 성적 자기결정 능력이 충분히 발휘될 것으로 추정되는 연령대를 확인하고자 함.

2. 연구방법

- 2018년 UNESCO 성교육 가이드 라인을 기초로 하여 성적 자기결정 능력 평가를 위한 하위요인을 성지식,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성폭행 상황 인식 및 대처, 그리고 성적 자율성으로 구분하여 청소년 대상 성교육을 담당하는 현장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성적 자기결정 능력 평가도구를 개발하였음.
- 아동·청소년 성교육 및 성상담을 담당하는 전국 200여 명의 현장전문가를 대상으로, 본 연구에서 개발한 성적 자기결정 능력 평가도구를 사용하여 해당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실제 생활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동·청소년의 연령을 추정하도록 함.

3. 주요결과

1)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 현재 우리나라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현황을 살펴본 결과, 만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와 달리 만 13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는 급증하고 있으며, 이들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가 그루밍 성범죄의 특성이 있어서 우리나라의 현행법으로는 이에 대한 기소 및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였음.
- 특히, 성적인 의사결정 능력이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를 위한 의제 강간죄와 관련하여 현재 우리나라에서 정한 ‘만 13세 미만’이라는 연령의 실효성을 살펴보았음. 많은 선행 연구들은 아동·청소년이 성인 수준의 성적인 합의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적어도 10대 후반이 되어야 한다고 근거를 제시하고 있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즈음 아동·청소년은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조숙하여 자칫하면 행복추구에 관한 그들의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음에 대한 우려의 의견 역시 팽배하였음.
- 우선적으로, 의제강간의 역사적 성립과 발전 과정을 살펴보았음. 초기 법령은 영국에서 12세로 정하여 시작하였지만, 산업화 이후 아동·청소년의 사회 활동 증가와 함께 이들을 보호해 줄 가정인력이 사회로 확산되면서 사회적인 보호가 필요함을 고려하여 점차 13세, 그리고 이후 16세로 상향 조정되었음을 확인하였음.
- 더욱이 기준연령을 우리나라와 같이 만 13세로 삼았던 스페인이 최근 16세로 상향 조정한 사례와, 사회적 요구에 힘입어 새로이 그 법을 제정하면서 15세를 기준으로 삼은 프랑스의 사례는 우리와 동시대, 동일한 사회적 조건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큼.

- 이에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기준연령 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핵심 쟁점인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그 의미와 측정 방법 등을 확인한 결과, 이들이 성적 자기결정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성과 관련된 충분한 지식을 기반으로 자신이 의지적으로 성행위를 선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후 일어날 상황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어야 함을 확인함.

2) 설문조사 분석

- 2018 UNESCO 성교육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문항을 개발하고, 대학교수, 성교육 및 성상담을 담당하는 현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성지식, 성에 대한 태도 및 인식, 성폭력에 대한 인식 및 대처, 성적 자율성에 해당하는 총 27문항의 성적 자기결정 능력 평가도구를 개발함.
- 전국 초 중 고등학교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교육과 성상담을 전문으로 수행하는 학교 및 사회기관 소속 현장 전문가 218명을 대상으로 성적 자기결정 능력 평가도구를 사용하여 자신들이 만난 아동·청소년집단에서 적어도 70% 정도가 충분히 이해하고 실제 생활에 적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연령을 남학생과 여학생을 구분하여 추정하도록 요청함.
- 설문 결과, 전반적으로 여학생에 대해 남학생에 비하여 성적 자기결정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연령을 낮게 추정하였음. 1) 성지식 분야에 대해서, 50% 정도의 전문가들은 남녀학생 모두 만 14세 이상이 되면 성과 관련된 여러 지식을 충분히 알 것으로 추정하였으나, 성병이나 임신과 같은 성관계 이후의 상황에 대한 지식은 만 15세 이상은 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추정하였고, 2)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역시 남학생은 만 15세 이상, 여학생은 만 14세 이상이면 충분할 것으로 추정하였음. 3) 성폭력 상황에 대한 인식 및 대처

능력 영역은 다른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일찍 인식되는 것으로 추정하였는데, 남녀학생 모두 만 13세 이상이면 성폭력 상황에 대한 인식이 가능하고 그 대처 능력은 만 14세 이상이면 가능할 것이라고 추정함. 4) 성적 자율성에 대해서도 대략적으로 남녀학생 모두 만 15세 이후면 충분히 인식하고 실제 생활에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50%의 전문가들이 추정함.

- 추가적인 설문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은 아동·청소년을 성적인 주체자로 존중해 줄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고, 그와 동시에 이 사회는 이들의 성 보호를 위해 현재 의제간강조의 기준연령인 만 13세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밝힘.

4. 정책제언

- 현재 우리나라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현황 및 현행법의 실효성에 대해 확인한 결과와 해외사례가 주는 시사점을 고려해 볼 때, 현재 우리나라는 입법적으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확인함.
-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를 위한 연령 조정을 위해 연령기준의 재정립,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 그리고 해당 연구를 기반으로 한 법률 재정비와 같은 입법적 로드맵을 제시함.

아동·청소년
성 보호를 위한
연령조정 방안연구

연구보고 19-R53

I. 서 론 1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3

2. 연구진행절차 및 연구내용 4

3. 연구방법 7

II. 이론적 배경 9

1. 우리나라의 아동·청소년 성 보호 11

1)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현황 12

2) 현행법상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 16

3) 의제강간죄에 관한 논의 19

2. 다른 나라의 아동·청소년 성 보호 22

1) 의제강간의 역사적 발전 22

2) 외국의 의제강간 기준연령 조정 사례 25

3) 국가별 의제강간 기준연령 27

4) 외국 사례가 주는 시사점 29

3.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를 위한 핵심 쟁점 31

1)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 결정권(성적 자기 결정 능력) ··· 31

2)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 능력 측정	34
4. 맺음말	36
III. 조사 결과 분석	39
1. 조사 개요	41
1) 성적 자기 결정 능력 평가도구	41
2) 전문가 집단의 선정	43
3) 기관 생명 윤리 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승인	43
2. 조사 결과	44
1) 응답에 참여한 전문가 특성	44
2) 평가도구의 양호도	48
3) 성적 자기 결정 능력의 발달과 관련된 연령 추정 결과 ..	49
4) 아동·청소년들의 성관계 경험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 조사 결과	133
5) 만 17세 이하 청소년의 성관계에 대한 사회적 허용에 대한 의견	135
6) 의제강간죄 성립 연령인 만 13세에 대한 아동·청소년 성 전문가들의 의견	136
3. 요약 및 시사점	138
IV. 결론 및 제언	141
1.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를 위한 연령 조정 필요성의 확인	143
2.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를 위한 연령 조정의 방안을 위한 입법적 로드맵	145
참고문헌	151
부 록	159

표 목차

표 II-1 청소년 대상 성범죄 중 친족관계 비율	15
표 II-2 청소년관련법의 보호연령기준	18
표 II-3 국가별 의제강간 기준연령	28
표 III-1 설문 참여자의 지역별 분포 및 평가 대상 청소년의 학년	45
표 III-2 평가에 참여한 아동·청소년 성 전문가의 직책과 경력	46
표 III-3 평가에 참여한 아동·청소년 성 전문가의 직책과 평가를 고려한 모집단의 범위	47
표 III-4 성적 자기결정 능력 연령 추정 평가도구의 하위 요인별 내적 합치도	49
표 III-5 남녀학생별 생식기 기능과 관련된 우리 몸의 기능에 관한 성 지식을 충분히 갖추고 있을 아동·청소년의 연령 추정 분포	50
표 III-6 남녀학생별 성관계 이유와 목적에 관한 성 지식을 충분히 갖추고 있을 아동·청소년의 연령 추정 분포	53
표 III-7 남녀학생별 성관계 결과에 관한 성 지식을 충분히 갖추고 있을 아동·청소년의 연령 추정 분포	56
표 III-8 남녀학생별 임신 가능 시기에 관한 성 지식을 충분히 갖추고 있을 아동·청소년의 연령 추정 분포	59
표 III-9 남녀학생별 성병 예방에 관한 성 지식을 충분히 갖추고 있을 아동·청소년의 연령 추정 분포	62
표 III-10 남녀학생별 성병 감염 경로에 관한 지식을 충분히 갖추고 있을 아동·청소년의 연령 추정 분포	65
표 III-11 남녀학생별 피임 도구 사용 방법에 대한 지식을 충분히 갖추고 있을 아동·청소년의 연령 추정 분포	68
표 III-12 남녀학생별 성관계가 합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지가 충분히 가능한 아동·청소년의 연령 추정 분포	72
표 III-13 남녀학생별 자신이 임신할(시킬)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인지가 충분히 가능한 아동·청소년의 연령 추정 분포	75

표 Ⅲ-14	남녀학생별 자신이 성병에 감염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인지가 가능한 아동·청소년의 연령 추정 분포	77
표 Ⅲ-15	남녀학생별 성관계 관련 책임에 대한 인지가 충분히 가능한 아동·청소년의 연령 추정 분포	80
표 Ⅲ-16	남녀학생별 성적 욕구에 대한 표현이 충분히 가능한 아동·청소년의 연령 추정 분포	83
표 Ⅲ-17	남녀학생별 성적 행동에 대한 의사 결정 시 다양한 감정이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의 연령 추정 분포	86
표 Ⅲ-18	남녀학생별 이성 친구와 함께 있을 때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존재함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의 연령 추정 분포	88
표 Ⅲ-19	남녀학생별 성폭력 상황에 대한 인식이 가능한 아동·청소년의 연령 추정 분포	93
표 Ⅲ-20	남녀학생별 성희롱이나 성폭력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지가 충분히 가능한 아동·청소년의 연령 추정 분포	96
표 Ⅲ-21	남녀학생별 성폭력 발생 후 대처가 충분히 가능한 아동·청소년의 연령 추정 분포	99
표 Ⅲ-22	남녀학생별 성행위에 대한 자신의 생각 표현이 자유로울 수 있는 아동·청소년의 연령 추정 분포	103
표 Ⅲ-23	남녀학생별 원하지 않는 성적 행동에 대해 언어적 표현이 충분히 가능한 아동·청소년의 연령 추정 분포	106
표 Ⅲ-24	남녀학생별 안전한 성관계에 관한 대화가 충분히 가능한 아동·청소년의 연령 추정 분포	109
표 Ⅲ-25	남녀학생별 성병 예방에 대한 의사소통이 충분히 가능한 아동·청소년의 연령 추정 분포	112
표 Ⅲ-26	남녀학생별 성적 욕구를 알아차리고 조절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의 연령 추정 분포	114
표 Ⅲ-27	남녀학생별 원하지 않는 성관계에 대해 단호한 언어적 표현을 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의 연령 추정 분포	117
표 Ⅲ-28	남녀학생별 성관계 후 임신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의 연령 추정 분포	120
표 Ⅲ-29	남녀학생별 이성 친구의 신체접촉 관련 요구에 대해 통제할 수 없음을 인식/조절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의 연령 추정 분포	123

표 Ⅲ-30 남녀학생별 성적 의사결정이 가져올 결과에 대한 예상이 충분히 가능한 아동·청소년의 연령 추정 분포	126
표 Ⅲ-31 남녀학생별 성적 의사결정에 대한 권리가 자신에게 있음을 인지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의 연령 추정 분포	129
표 Ⅲ-32 서술된 만 17세 이하 아동·청소년의 성관계를 개인적으로 허용하는 이유	134
표 Ⅲ-33 서술된 만 17세 이하 아동·청소년의 성관계를 우리 사회가 허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이유	136
표 Ⅲ-34 서술된 만 17세 이하 아동·청소년의 성관계를 우리 사회가 허용한다고 생각하는 이유	136
표 Ⅲ-35 현행 의제강간죄 상한 연령인 만 13세를 낮출 경우, 혹은 높일 경우의 적정 연령	137
표 Ⅲ-36 성적 자기 결정 능력에 대한 50% 전문가들의 추정 연령 ...	138

그림 목차

그림 II-1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건수 추이(2008년~2017년)	14
그림 III-1 평가도구 개발 과정	42
그림 III-2 남녀학생별 생식기 기능과 관련된 우리 몸의 기능에 관한 성 지식을 충분히 갖추고 있을 아동·청소년의 연령 추정	51
그림 III-3 전문가 소속별 생식기 기능과 관련된 우리 몸의 기능에 관한 성 지식을 충분히 갖추고 있을 아동·청소년의 연령 추정 분포	52
그림 III-4 남녀학생별 성관계 이유와 목적에 관한 성 지식을 충분히 갖추고 있을 아동·청소년의 연령 추정	54
그림 III-5 전문가 소속별 성관계 이유와 목적에 관한 성 지식을 충분히 갖추고 있을 아동·청소년의 연령 추정	55
그림 III-6 남녀학생별 성관계 결과에 관한 성 지식을 충분히 갖추고 있을 아동·청소년의 연령 추정 분포	57
그림 III-7 전문가 소속별 성관계 결과에 관한 성 지식을 충분히 갖추고 있을 아동·청소년의 연령 추정	58
그림 III-8 남녀학생별 임신 가능 시기에 관한 성 지식을 충분히 갖추고 있을 아동·청소년의 연령 추정 분포	60
그림 III-9 전문가 소속별 임신 가능 시기에 관한 성 지식을 충분히 갖추고 있을 아동·청소년의 연령 추정	61
그림 III-10 남녀학생별 성병 예방에 관한 성 지식을 충분히 갖추고 있을 아동·청소년의 연령 추정 분포	63
그림 III-11 전문가 소속별 성병 예방에 관한 성 지식을 충분히 갖추고 있을 아동·청소년의 연령 추정	64
그림 III-12 남녀학생별 성병 감염 경로에 관한 성지식을 충분히 갖추고 있을 아동·청소년의 연령 추정	66
그림 III-13 전문가 소속별 성병 감염 경로에 관한 지식을 충분히 갖추고 있을 아동·청소년의 연령 추정	67

그림 Ⅲ-14	남녀학생별 피임 도구 사용 방법에 대한 성지식을 충분히 갖추고 있을 아동·청소년의 연령 추정	68
그림 Ⅲ-15	전문가 소속별 피임 도구 사용 방법에 대한 성지식을 충분히 갖추고 있을 아동·청소년의 연령 추정	69
그림 Ⅲ-16	아동·청소년의 성지식 인식이 가능한 연령 추정 분포	71
그림 Ⅲ-17	남녀학생별 성관계가 합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지가 충분히 가능한 아동·청소년의 연령 추정	73
그림 Ⅲ-18	전문가 소속별 성관계가 합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지가 충분히 가능한 아동·청소년의 연령 추정 분포	74
그림 Ⅲ-19	남녀학생별 자신이 임신할(시킬)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인지가 충분히 가능한 아동·청소년의 연령 추정 분포	76
그림 Ⅲ-20	전문가 소속별 자신이 임신할(시킬)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인지가 충분히 가능한 아동·청소년의 연령 추정	76
그림 Ⅲ-21	남녀학생별 자신이 성병에 감염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인지가 충분히 가능한 아동·청소년의 연령 추정 분포	78
그림 Ⅲ-22	전문가 소속별 자신이 성병에 감염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인지가 충분히 가능한 아동·청소년의 연령 추정	79
그림 Ⅲ-23	남녀학생별 성관계 관련 책임에 대한 인지가 충분히 가능한 아동·청소년의 연령 추정 분포	81
그림 Ⅲ-24	전문가 소속별 성관계 관련 책임에 대한 인지가 충분히 가능한 아동·청소년의 연령 추정 분포	82
그림 Ⅲ-25	남녀학생별 성적 욕구에 대한 표현이 충분히 가능한 아동·청소년의 연령 추정 분포	84
그림 Ⅲ-26	전문가 소속별 성적 욕구에 대한 표현이 충분히 가능한 아동·청소년의 연령 추정 분포	85
그림 Ⅲ-27	남녀학생별 성적 행동에 대한 의사 결정 시 다양한 감정이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의 연령 추정 분포	87
그림 Ⅲ-28	전문가 소속별 성적 행동에 대한 의사 결정 시 다양한 감정이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의 연령 추정 분포	87
그림 Ⅲ-29	남녀학생별 이성 친구와 함께 있을 때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존재함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의 연령 추정 분포	89

그림 III-30	전문가 소속별 이성 친구와 함께 있을 때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존재함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의 연령 추정 분포	90
그림 III-31	아동·청소년의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에 대한 연령추정 분포	92
그림 III-32	남녀학생별 성폭력 상황에 대한 인식이 가능한 아동·청소년의 연령 추정 분포	94
그림 III-33	전문가 소속별 성폭력 상황에 대한 인식이 가능한 아동·청소년의 연령 추정 분포	95
그림 III-34	남녀학생별 성희롱이나 성폭력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지가 충분히 가능한 아동·청소년의 연령 추정	97
그림 III-35	전문가 소속별 성희롱이나 성폭력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지가 충분히 가능한 아동·청소년의 연령 추정	98
그림 III-36	남녀학생별 성폭력 발생 후 대처가 충분히 가능한 아동·청소년의 연령 추정	100
그림 III-37	전문가 소속별 성폭력 발생 후 대처가 충분히 가능한 아동·청소년의 연령 추정	100
그림 III-38	아동·청소년의 성폭력에 대한 인식 및 대처 능력에 관한 추정 연령 누적 분포	101
그림 III-39	남녀학생별 성행위에 대한 자신의 생각 표현이 자유로울 수 있는 아동·청소년의 연령 추정 분포	104
그림 III-40	전문가 소속별 성행위에 대한 자신의 생각 표현이 자유로울 수 있는 아동·청소년의 연령 추정 분포	105
그림 III-41	남녀학생별 원하지 않는 성적 행동에 대해 언어적 표현이 충분히 가능한 아동·청소년의 연령 추정	107
그림 III-42	전문가 소속별 원하지 않는 성적 행동에 대해 언어적 표현이 충분히 가능한 아동·청소년의 연령 추정	108
그림 III-43	남녀학생별 안전한 성관계에 관한 대화가 충분히 가능한 아동·청소년의 연령 추정 분포	110
그림 III-44	전문가 소속별 안전한 성관계에 관한 대화가 충분히 가능한 아동·청소년의 연령 추정 분포	111
그림 III-45	남녀학생별 성병 예방에 대한 의사소통이 충분히 가능한 아동·청소년의 연령 추정 분포	113
그림 III-46	전문가 소속별 성병 예방에 대한 의사소통이 충분히 가능한 아동·청소년의 연령 추정 분포	113

그림 III-47	남녀학생별 성적 욕구를 알아차리고 조절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의 연령 추정 분포	115
그림 III-48	전문가 소속별 성적 욕구를 알아차리고 조절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의 연령 추정 분포	116
그림 III-49	남녀학생별 원하지 않는 성관계에 대해 단호한 언어적 표현을 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의 연령 추정 분포	118
그림 III-50	전문가 소속별 원하지 않는 성관계에 대한 단호한 언어적 표현을 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의 연령 추정 분포	119
그림 III-51	남녀학생별 성관계 후 임신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의 연령 추정 분포	121
그림 III-52	전문가 소속별 성관계 후 임신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의 연령 추정	122
그림 III-53	남녀학생별 이성 친구의 신체접촉 관련 요구에 대해 통제할 수 없음을 인식/조절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의 연령 추정 ..	124
그림 III-54	전문가 소속별 이성 친구의 신체접촉 관련 요구에 대해 통제할 수 없음을 인식/조절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의 연령 추정 ..	125
그림 III-55	남녀학생별 성적 의사결정이 가져올 결과에 대한 예상이 충분히 가능한 아동·청소년의 연령 추정 분포	127
그림 III-56	전문가 소속별 성적 의사결정이 가져올 결과에 대한 예상이 충분히 가능한 아동·청소년의 연령 추정 분포	128
그림 III-57	남녀학생별 성적 의사결정에 대한 권리가 자신에게 있음을 인지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의 연령 추정 분포	130
그림 III-58	전문가 소속별 성적 의사결정에 대한 권리가 자신에게 있음을 인지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의 연령 추정 분포	131
그림 III-59	성적 자율성에 관한 아동·청소년의 연령 추정 누적 분포 ..	132
그림 III-60	만 17세 이하 아동·청소년의 성관계 허용에 대한 전문가 의견(%)	133
그림 III-61	만 17세 이하 청소년의 성관계 대한 사회적 허용(%) ..	135
그림 III-62	성관계 이유와 목적에 대한 인지가 충분히 가능한 아동·청소년의 나이 추정(%)	137

○———— 제1장 서론

-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2. 연구진행절차 및 연구내용
- 3. 연구방법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최근 미성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증가하면서 이들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를 위한 사회적 각성을 촉구하는 여러 기관들의 움직임과 함께 관련 법률 개선을 위한 입법적 시도들이 계속되고 있다(정은경, 2016). 최근 특히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은 의제강간죄와 관련된 적용 연령에 관한 것이다. 현행 형법에서는 만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관해서는 성적 접촉에 대한 동의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는 의제강간죄를 적용하여 해당 연령의 아동·청소년을 법률적으로 보호하고 있다(형법 제 305조; 김한균, 2013). 하지만, 13세 이상 20세 미만의 청소년의 경우는 해당 법령에 의해 보호되지 못하고 여러 다른 법률이 적용되면서 실제 이들이 보호되고 있지 못하다는 여론과 법조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유관 기관들은 근본적으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를 위해서 의제강간에서 정한 연령인, “만 13세”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법률 개정론을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요즘 아동·청소년들의 성적 조기성숙과 이들의 성의식 발달, 그리고 그에 따른 아동·청소년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이 완강하여 여전히 해당 법률 개정안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정부입법지원센터).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선, 우리 사회의 도덕적 기준과 다른 아동·청소년 관련 법률들의 입법 조건들을 고려하여 현행법의 실효성을 따져보고, 다양한 사회·생물

학적 연령대가 포함되어 있는 아동·청소년들의 성 보호를 위한 연령 조정에 필요한 국내외 연구사례를 검토, 분석하고자 한다. 최종적으로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를 위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여 실제 법 개정에 필요한 사회·도덕적 명분과 실증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데 본 연구의 목적을 둔다.

2. 연구진행절차 및 연구내용

아동·청소년들의 성 보호를 위한 연령 조정 입법을 지속적으로 시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보호의 대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들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에 부딪혀 해당 법개정을 위한 입법안들이 여전히 계류 상태에 놓여 있다. 이에 의제강간연령 조정 논쟁의 핵심 쟁점이 되고 있는 아동·청소년의 성의식의 발달 정도 및 성적 자기결정 능력에 대한 다각적이고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우선 우리나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의 실재를 확인하고, 외국의 관련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 문헌연구를 통해 아동·청소년의 성의식의 발달 정도 및 성적 자기결정 능력의 개념적 틀을 확인하고 현상적으로 필요한 능력 조건들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이에 기초하여 아동·청소년들의 성의식 발달과 성적 자기결정 능력에 대해 현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연령별로 성적 자기결정 능력을 평가하고 분석할 계획이다. 설문조사는 조사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를 통해 실시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얻어진 양적 데이터를 연구자들이 심층 분석하여 연령별 차이를 확인하고 평가할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의 핵심 쟁점이 되고 있는 요즘 청소년들의 성의식 발달 수준을 평가하고, 성적 자기결정 능력에 대한 연령별 차이를 확인함으로써 의제강간 기준연령에 대한 실증적인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위에서 제시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내용을 설정하였다.

1) 우리나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의 실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를 위한 연령조정안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재 우리나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유관 기관들이 보고한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의 실태를 파악하였다. 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관한 현행 법률의 법적 해석과 이들의 실제 집행과정을 알아봄과 동시에 해당 법률의 입법 취지를 다시 살펴보고, 이들이 취지에 맞게 적용되고 있는지 확인하였다. 추가적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와 관련한 최근 판결 예시들을 살펴봄으로써 해당 법률들이 실제 집행과정에서 드러내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와 관련하여 학계와 언론, 그리고 입법 기관 등에서 분석한 선행연구를 고찰하여 현재 우리나라 의제강간 연령 조정에 필요한 근거를 탐색하였다.

또한, 다양한 사람들의 여러 가지 시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좌절되고 있는 의제강간 연령 상향조정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고, 이들이 명시하고 있는 근거들에 대한 사회문화·사회 규범적 타당성을 찾아 제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의제강간 기준연령이 아동·청소년기의 발달적 측면에서 성의식 변화 및 성적 자기결정 능력 등에 대한 실제 생물학적 연령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선행연구를 통하여 확인하였다.

2) 외국의 아동·청소년 성 보호를 위한 입법 사례에 대한 문헌 고찰

의제강간에 관해 오랜 역사를 가진 서양의 해당 법조항의 발달 경위에 대한 역사적 배경을 알아보고, 해당 법령이 진화하게 된 계기를 살펴보았다. 더불어 실제로 의제강간과 관련된 기준연령이 조정된 프랑스와 스페인의 사례를 살펴보면, 사회적 요구가 실제 법률개정에 적용된 근거 및 상황을 확인하였다. 특히, 이들 두 나라의 경우는 소위 우리나라보다 성적으로 개방적이고 아동·청소년의 성적인 권리를 보장해 주고 있는 축에 속하는 나라들이기에, 해당 국가들이 연령을

설정된 기준은 우리나라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시해 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의제강간에 대한 이들의 입법 사례를 파악하여 그들이 지향하고 있는 입법적 근거 및 법률적 적용 근거를 확인하였다. 추가로 국가별 의제강간 관련 기준연령을 살펴보고, 이와 같은 국제적 분위기가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를 논의하였다.

3) 아동·청소년 성 보호를 위한 핵심 쟁점에 대한 논의

현재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와 관련하여 무조건적인 처벌이 가능한 의제강간 연령의 핵심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은 해당 연령대의 아동·청소년이 성과 관련된 행위를 함에 있어서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의미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성적 자기결정 능력의 유무와 관련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밝히고 있는 성적 자기결정 능력의 의미를 고찰하여, 현장에서 이를 측정할 수 있는 학문적, 실증적 근거를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추가적으로, 선행연구 검토 결과를 적용하여 성적 자기결정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측정도구를 개발하였다. 또, 이를 이용하여 현장에서 아동·청소년에게 성교육, 혹은 성과 관련된 상담을 하는 전문가들로 하여금 해당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연령을 평가하도록 요청하였고, 그 결과를 통해 실제 아동·청소년의 성의식 발달 수준과 합리적으로 성적 자기결정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연령대를 추정하고자 하였다.

4)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를 위한 입법 대안 제시

이제까지 제시된 입법 개정안이 좌절된 근본 원인을 찾아보고 반대 의견들이 제시하고 있는 내용의 근거 및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특히, 이미 공론화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와 성 자유에 관한 모호성의 객관화 가능성을 찾아보고

제한 연령에 대한 법적, 발달적 특이성 및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법률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특히, 복잡한 성범죄 특성을 고려한 단서 규정의 가능성 및 내용을 확인하여 제시하고자 하였다.

3. 연구방법

위에서 제시된 연구의 목적을 성취하고, 연구내용에 부합하는 연구방법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1) 성적 자기 결정 능력 평가도구의 개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 및 성적 자유 보장과 관련된 국내외 문헌들을 조사하여 분석하고, 실제 현장에서 성교육 자료의 핵심 축으로 사용하고 있는 2018년 UNESCO 성교육 가이드라인을 기초로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2) 전문가 대상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 결정 능력 평가 설문조사

의제강간 연령 관련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는 만 13세와 17세 사이 아동·청소년의 성의식 수준 및 성적 자기결정 능력에 대한 발달의 정도를 평가해 줄 학교 담임교사, 성교육 전문가 및 성상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집하여 해당 연령대 청소년들의 성의식 발달 수준과 더불어 성적 자기결정 능력이 성숙되었다고 볼 수 있는 대략적인 Critical Age를 추정해 보고자 하였다. 최종적으로는 의제강간 연령 조정을 실행하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 — 제2장 이론적 배경

- 1. 우리나라의 아동·청소년 성 보호
- 2. 다른 나라의 아동·청소년 성 보호
- 3. 아동·청소년 성 보호를 위한 핵심 쟁점
- 4. 맺음말



본 연구에서는 성인의 성적 학대와 착취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형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제강간죄(형법 305조)의 취지와 실제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보호연령의 의미를 확인하여 해당 연령 조정을 위한 법률 개정의 근간이 될 만한 사회·도덕적 명분과 학문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우리나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현황 및 특성을 알아보고, 현행법상의 아동·청소년 성 보호의 실재를 분석하고자 한다. 또, 이를 통해 현재 사회적으로 논의 중인 의제강간 기준연령 조정에 대한 논쟁의 핵심을 확인해 보고, 추가적으로 다른 나라들의 관련 입법 사례를 조사, 연구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와 관련하여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현재 아동·청소년의 성의식 발달 수준과 함께 성적 자기결정 능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1. 우리나라의 아동·청소년 성 보호

우리 사회의 아동·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이슈는 정치, 경제 및 사회 제반 분야에서 다양하게 다루고 있는 영역이다. 특히 형법이나 청소년 보호법, 소년법,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이들을 사회적 소수자로서 보호하여 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도우려고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법령들이 각기 다른 보호 연령기준을 명시하고

있어서 다양한 현실적 상황에서 법 적용에 대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와 관련하여서는 지속적으로 연령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중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여론이 형성된 배경을 살펴보기 위해 먼저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현황을 살펴보고, 현행법 안에서 아동·청소년 성 보호의 함의를 확인한 다음, 최근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의제강간 연령의 핵심 쟁점인 청소년의 성의식 발달과 성적 자기결정 능력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현황

성과 관련한 범죄는 실제 그 발생 실태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의 경우는 모르는 사람 뿐만 아니라 친인척에 의해, 또는 아동·청소년이 소속이 된 학원, 학교, 교회 등과 같은 특정 기관 안에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보고되는 것으로 보아 정확한 실상을 파악하는 것은 더욱 쉬운 일이 아니다(오승주, 2015).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는 특징적으로 긍정적인 경험과 부정적이고 폭력적인 상황을 동시에 경험하면서 아동·청소년 스스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환경에서 일어나는 것이 보통이다(이수정, 2018). 이와 같은 경우를 그루밍(Grooming)¹⁾ 성범죄라고 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는 신고가 접수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또,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이 일관적이지 않은 진술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왜냐하면, 해당

1) '그루밍(grooming)'은 마부(groom)가 말을 빗질하고 목욕시켜 말끔하게 꾸민다는 데서 유래한 것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호감을 얻거나 돈독한 관계를 만들어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폭력을 가하는 것을 뜻한다. 보통 어린이나 청소년 등 미성년자를 정신적으로 길들인 후 이뤄지는데, 그루밍(Grooming) 성폭력 피해자들은 피해 당시에는 자신이 성범죄의 대상이라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145821&cid=43667&categoryId=43667> 2019. 08.23 접속)

아동·청소년은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긍정적이기도 하고, 부정적이기도 한 상황을 동시에 경험하면서 인지적인 혼란 상황에 빠진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이수정, 2019).

대검찰청 「2018 범죄분석」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 발생 건수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증가하다가 2014년 이후 잠시 감소하는 듯하더니 2017년에 다시 증가하고 있다(대검찰청 사이트, www.spo.go.kr). 좀 더 자세히, 우리나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 나이별로 분석한 통계 자료들을 살펴보면, 2008년 이후 13세 미만이 연루된 성범죄의 경우는 큰 변화가 없는 반면, 13세 이상 20세 미만 연령대의 경우는 매년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다(참고, 그림1; 김한균, 2013; 대검찰청, 2018). 이는 실제 우리 사회에서 13세 이상의 청소년들이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의 주된 표적이 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만 13세 이상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강간죄 명목으로 기소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지만,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의 특성상 평상시 친분이나 권력 관계에 의한 위력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그루밍(Grooming) 과정을 거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실제 재판에서는 강제, 혹은 위력에 의해 관련 행위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옹호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기 어렵고, 급기야는 서로 동의하에 이뤄진 성행위로 인정되어 피해자가 무혐의처분을 받는 등 사회적인 통념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판결이 종종 내려지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

한 예로, 2014년에 40대 연예기획사 대표가 연예인을 시켜주겠다는 명목하에 당시 15세 소녀를 강간하였고, 그 소녀는 임신과 출산까지 하게 되었다. 이후, 이 여중생의 가족의 신고로 40대 남성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혐의 등으로 구속되었다. 하지만, 1심과 2심에서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서는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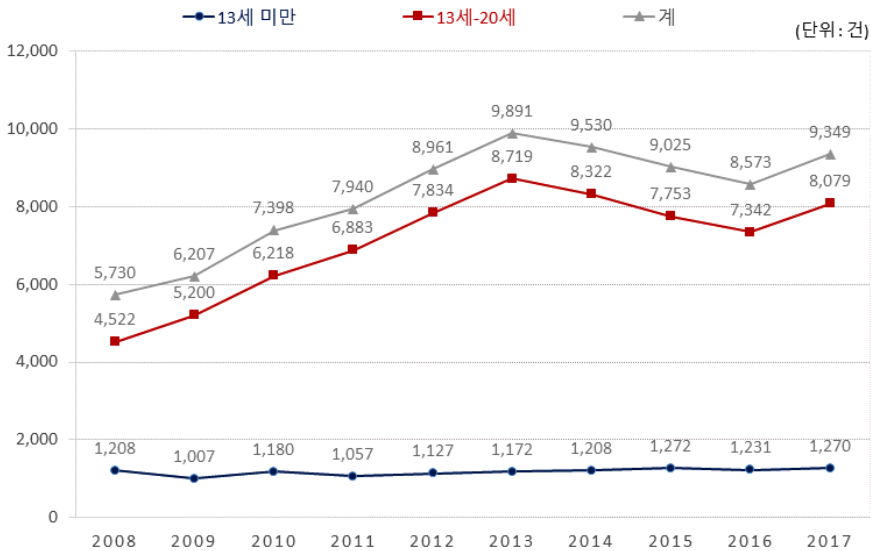


그림 II-1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건수 추이(2008년~2017년)

(대검찰청 2018 범죄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직접 작성)

판결의 요지는 둘 사이를 연인 사이로 인정한 것으로서, 성 매수나 협박에 의한 강간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다(중앙일보, 2014. 11.25). 이는 2015년 검찰에 의해 재상고되었고, 2017년 대법원에서 재상고심을 기각하면서 해당 남성에 대한 최종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미경, 2017). 이 사건은 우리 사회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서 아동·청소년이 피해자로서 옹호받고,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해당 판결은 우리 사회에서 통용되는 도덕적 판단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이후 많은 사회적 관심과 논란에 휩싸였으며, 현재까지도 우리 사회의 아동·청소년 성 보호 실태가 어떠한지 그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한 대표적인 판례로 회자되고 있다(이수정, 2018; 조국, 2018).

이러한 판례는 우리나라의 현행법이 아동·청소년들의 성을 제대로 보호하고 있는 것인지 의구심을 갖게 할 뿐만 아니라, 특히 13세 이상 20세 미만 아동·청소년들이 성범죄에 노출되었을 때 국가가 정한 법령에 의해 보호를 받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준다(조국, 2018; 천정아, 2015).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특성을 악용하여 13세 이상 20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특정하여 성범죄를 저지를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아동·청소년을 성폭력 관련 범죄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해당 법률의 입법 취지가 제대로 발휘되고 있는지 의문이 들게 된다. 특히, 최근 들어서 아동·청소년 성매매와 어린 여자아이의 결혼, 십대의 임신, 성평등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아동·청소년의 성을 어떻게 보호해야 할지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실제 우리나라의 형법에서 의제강간죄의 적용을 위해 규정한 ‘만 13세 미만’이라는 기준연령이 주는 의의는 무엇인지, 또 이 기준연령은 사회적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이수정, 2018; 천정아, 2015).

표 II-1 청소년 대상 성범죄 중 친족관계 비율

연도	전체발생건수	13세미만 대상 (해당 해의 전체 성범죄 발생 대비)	19세미만 대상 (해당 해의 전체 성범죄 발생 대비)	친족관계 (해당 해의 전체 성범죄 발생 대비)
2002	9,435	630(0.07%)	827(0.09%)	202(0.02%)
2003	10,365	754(0.07%)	1,583(0.15%)	184(0.02%)
2004	11,105	735(0.07%)	1,946(0.18%)	203(0.02%)
2005	11,757	799(0.06%)	1,780(0.15%)	190(0.02%)
2006	13,573	844(0.06%)	2,022(0.15%)	255(0.02%)
2007	13,634	851(0.06%)	2,062(0.15%)	276(0.02%)
2008	15,094	971(0.06%)	2,587(0.17%)	293(0.02%)
2009	16,156	874(0.05%)	2,699(0.17%)	286(0.02%)
2010	19,939	1,170(0.06%)	5,793(0.29%)	386(0.02%)
2011	22,034	1,053(0.05%)	6,743(0.31%)	357(0.02%)
2012	21,346	975(0.05%)	5,652(0.26%)	345(0.02%)

* 출처: 오승주(2015).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 규정에 관한 개정방안. 비교법 연구 제15권1호 p. 160

2) 현행법상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

우리나라의 현행법은 사회적 약자인 청소년을 법적 보호의 대상으로 삼아 선거권, 운전, 음주, 흡연 등 다양한 영역에서 보호 연령의 기준을 세워 보호하고자 노력하고 있다(청소년보호위원회, 2003, Bang, & Lee, 2019). 하지만, 청소년에 대한 보호 연령기준에 대해 우리나라의 헌법에서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각 법령에 대한 입법의 시각에서 정책적으로 혹은 입법재량으로 판단하게 된다(황승흠, 2003). 다시 말해서 법 집행의 객관적인 근거로 표시되어 있는 청소년 보호 연령기준은 이들의 건강한 심신의 발달과 사회적 적응을 증대하게 저해할 만한 요소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주된 목적에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입법과정에서 해당 법의 법리에 맞게 정책적 재량적으로 정해지게 된다(황승흠, 2003). 이는 결국, 우리나라의 여러 청소년 보호 연령이 각 법률마다 차이가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참고, 표 II-2). 예를 들면, 공무원 담임권은 18세인 반면, 선거연령은 19세이고, 음주나 단란주점 출입은 19세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다(청소년보호법 29조).

이와 같은 맥락에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해당 법률의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이들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조)”이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과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복지법」, 그리고 「형법」 등에 의해서 “19세 미만”이라는 연령에 근거하여 성폭력으로부터 그들의 성이 보호받고 있다(오승주, 2015). 반면에, 「형법」 제305조는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성적 학대와 착취의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해 일반적인 성범죄보다 엄중히 처벌됨을 명시하고 있다(김한균, 2015; 조국, 2018). 이 연령대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폭행이나 협박 또는 위계나 위력이 없이 단순한

간음이나 추행, 유사강간조차도 해당 형법이 적용되는 것이다. 앞 장에서 본 것처럼, 현재 우리나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약 80%가 13세 이상 20세 미만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볼 때 그 의구심은 증폭될 수밖에 없다.

물론, 이와 같은 차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최근(2018년 12월)에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과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일부 개정안이 받아들여져 “19세 이상 성인이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공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추행할 경우 처벌할 수 있고,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 범죄에도 포함(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59조 1항)” 한다는 규정이 신설(제8조의2) 및 개정(제59조 1항)되었고, “위계 또는 위력으로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간음·추행하는 범죄 경우(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제3항 제3호 개정)” 공소시효를 없애는 등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 보호를 한층 더 강화하여 올해(2019년 6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3세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이 위계나 위력, 혹은 폭행과 협박이 포함된 성범죄의 대상으로 연루된 경우는 오직 위계나 위력,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던 경우만을 처벌의 대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해당 법의 실효성을 재고하게 하고 있다.

법적인 내용만을 근거로 결론을 내린다고 한다면, 사실상 우리의 법에서는 13세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들의 자유로운 성적 활동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있는 셈이다(천정아, 2015). 하지만,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성적 발달 수준과 일반적인 사회적 인식은 이와 같은 법적 결론과 일치하지 않는다. 더욱이, 연령 규정에 대한 황승흠(2003)의 입법적 논리를 적용하더라도 우리나라 아동·청소년 성 보호 제도의 합리성에 대해 의구심을 내려놓을 수가 없다. 다시 말해서, 청소년기의 무분별한 성행위 노출은 그들의 학업성취, 직업훈련 및 적응뿐만 아니라 건강한 육체적 정신적 성장과 발달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Lara, & Abdo., 2016; Skinner et al., 2015; unicef, 2014), 그로 인해 개인

과 사회, 그리고 국가가 떠안아야 할 많은 사회적 문제로 발전할 수 있다. 그렇게 본다면, 이들을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시키고자 한다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조에서 설명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대한 입법의 의지는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표 II-2 청소년관련법의 보호연령기준

구 분	내 용	연 령	근 거
청소년 보호	유해업소출입, 약물사용, 유해 매체물 접촉 등 - 비디오 감상실, 유흥주점, 단란주점, 무도학원, 무도장, 사행행위영업, 전화통화 매개영업 - 술, 담배 - 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본드, 부탄가스, 신나	19세 미만	청소년 보호법
고용 근로	성 관련 물건	19세 미만	청소년 보호법
	음악성·포악성·잔인성·사행성조장물건 등	19세 미만	
	유흥주점의 유흥종사자	19세 미만	
	식품접객 영업소에서의 유흥행위 금지	19세 미만	식품위생법
	도덕·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장 사용금지	여자, 18세미만	근로기준법
	연소자 증명서	18세 미만	
	선원사용금지	16세 미만	선원법
행위	소년	20세 미만	소년법
	보호처분의 결정	20세 미만	소년법
	형사미성년자	14세 미만	형법
	선서무능력자	16세 미만	형사소송법
	행위무능력자	20세 미만	민법
성 보호	의제강간	만 13세	형법
	성폭력의 피해자	19세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 권한부여 : 유언가능(17세), 병역지원입대(17세), 주민등록발급(17세), 일반운전면허(18세), 공무원임용(18세), 투표권 (19세)

3) 의제강간죄에 관한 논의

의제강간에 관한 법률은 성적인 의사결정능력이 아직 성숙되지 않은 특정 연령의 아동·청소년이 성과 관련된 범죄의 대상으로 연루되었을 때, 해당 행위를 무조건적으로 강간으로 간주하여 처벌할 것에 관한 법이다(권김현영, 2015).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형법은 제305조에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및 추행에 관하여 “만 13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강간 또는 강제추행으로 의제하여 처벌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천정아, 2015). 현행법상 우리나라에서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행이나 협박 또는 위계나 위력이 행사된 경우를 전제하고 있지만, 만 13세 미만의 아동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전제 조건이 성립하지 않아도 형법에 의해 처벌받게 된다.

의제강간의 법제화의 핵심은 성적 동의 능력이 없는 아동·청소년이 성과 관련된 행위를 하게 될 경우 그들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강간으로 구분하여 가해자를 처벌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특정 연령의 아동·청소년은 이와 관련된 동의능력이 없음을 전제하는 것이다(정은경, 2016). 성적인 동의/합의능력을 Lyden(2007)은 충분한 성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어떠한 외부의 압력이 없는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해당 성행위에 대한 선택과 결정을 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렇다면, 의제강간죄의 입법취지처럼 아동·청소년을 성 관련 범죄로부터 보호함과 동시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면, 과연 그 법으로 보호되어야 할 아동·청소년의 ‘성적 동의능력’의 여부를 명확히 파악하고 있는가를 되묻게 된다. 많은 연구들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성숙되기 이전에 성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이후 청소년들의 생식능력이나 성 건강(의도하지 않는 임신이나 성병과 같은)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예를 들면, Kost, Maddow-Zimet,& Arpaia, 2017; Martin, Hamilton, Osterman, Driscoll, & Drake, 2018).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문제가 다시

학교를 그만두게 하고 진로를 결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만들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동·청소년으로서 누릴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고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unicef, 2014).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 현행법의 만 13세라는 연령 규정이 의미하는 바는 충분히 크다고 볼 수가 있다. 다시 말해서, 이는 만 13세 정도의 아동·청소년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성숙하여 자신의 성행동에 대해 자기결정 능력이 발달된 성적 주체로서 활동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과연 만 13세 이상의 아동·청소년은 자유롭게 성적인 행위를 하도록 보장해 주어도 될 만큼 성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있고, 성적 행동에 대한 동의/합의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궁금해지게 한다.

하지만 많은 선행연구들이 십대 후반에 이르러야 성인과 근접한 정도의 성의식을 갖출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김한균(2013)과 박연주, 한창근, 조원희(2017)은 만 13세 정도의 아동 역시 자신의 성과 관련된 신체에 대한 인식 수준이나 표현의 욕구가 낮고, 또 성적인 관계에서도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데 모호한 경우가 많아서 전반적으로 이들이 성적 자기결정 능력이 있다고 볼 수 있을지에 대해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특성상 친밀한 위력적 관계에서는 그들의 의사표현 의지가 통제되어서 충분히 자율적으로 행동할 수 없다고 보고하고 있다(Ryan, & Deci, 2017). 게다가 우리나라에 비하여 성에 대해 개방적인 서방의 다른 국가의 해당 법률 연령기준과 비교하여도, 우리나라의 연령기준은 일본과 함께 가장 낮은 연령기준군 중 하나에 속한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참고, 표 II-3).

의제강간죄와 관련된 규정이 포함되어 있는 형법은 여론에 의해서 좌지우지될 수 있을 만한 법은 아니지만(조국, 2018), 법 개정에는 분명 사회의 성장과 요구가 반영되어야 한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형법은 1953년에 일본의 그것을 참고하여 제정하였고(Bang & Lee, 2019), 이후 단 한 번도 개정된 사실이 없이 사용되고 있어, 현대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문제

점을 드러낸다(김한균, 2013; 정은경, 2016; 조국, 2018; 청정아, 2015). 현재 우리나라 사회는 전통적인 가족제도의 변화로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사람이 과거에 비하여 줄었고, 인터넷과 스마트폰 사용의 급등으로 아동·청소년들이 성범죄에 노출되기 쉬워졌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법적인 보호가 보다 절실히 필요한 시기이기도 하다(Bang, & Lee, 2019).

이와 같은 사실은 우리나라의 의제강간에 대한 연령기준이 다시 논의되고 조정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김한균, 2013; 이수정, 2018). 사실, 이러한 현실적인 필요가 증가하면서, 많은 법조인과 입법 관련 기관에서 이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의제강간의 연령 상향 및 관련 기준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해 수차례 입법발의를 진행한 바 있다(2010. 12. 23. 주광덕 의원; 2012. 9. 5. 조경태 의원; 2012. 9. 12. 권성동 의원; 2015. 12. 15. 남윤인순; 2016. 7. 10. 김승희 의원 등등, 정부입법지원센터).

하지만 여전히 요즘 아동·청소년의 조숙한 성적 발달과 성의식의 변화, 그리고 이성교제의 보편화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유와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해당 법률에서의 연령 상향을 ‘보호의 명분’을 내세워 아동·청소년들에게 성적 금욕주의’를 지나치게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해당 연령의 상향 조정을 반대하고 있다(홍종희, 2015; 조국, 2018). 동시에 이와 같은 보호주의적인 아동·청소년 정책이 아동·청소년의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와 같은 기본권을 침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박광배, 2000), 결국에는 의제강간 연령을 상향하지 말자는 결정이 내려졌다(홍종희, 2015).

이와 같은 결론에도 불구하고 의제강간 연령의 상향 조정에 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김한균(2013)은 의제강간 연령 상향 조정에 대한 반대 의견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이유까지 받아들이고, 우리나라의 국민적 정서, 사회·문화적·규범적 환경, 그리고 우리 아동·청소년들의 성적 자기결정 능력의 정도와 더불어 외국의 입법례들을 참고하여 포괄적인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결과적으로 최근에 있었던 의제강간에 대한 입법적 시도에서는 13세와 20세 이하의 범위에 들어가지만 발달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구분될 수 있는 15~16세 정도의 연령을 기준으로 삼고(조국, 2018),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연령 역시 고려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천정아, 2015). 또, 피해자와 가해자의 권력 관계 등까지 고려해야 하며(김한균, 2015),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건전한 성적 성장을 장려하는 입장(홍종희, 2015)에서 입법안이 조성되어야 한다는 의견으로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2. 다른 나라의 아동·청소년 성 보호

사회 문화적 배경을 달리하는 나라들은 제각각 의제강간에 대한 연령기준을 법적으로 다르게 정하여 공포하고 있다. 이에 본 장에서는 외국에서 시작된 의제강간 규정의 역사와 특징을 알아보고, 최근 이와 관련하여 연령조정안을 제정한 프랑스와, 사회적 여론의 움직임에 힘입어 의제강간 기준연령을 상향 조정한 스페인의 경위를 살펴본 다음, 이외 국가들의 의제강간 관련 기준연령을 제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본 장에서 제시한 외국사례의 연령기준과 근거 등을 종합하여 외국의 성 보호 관련 법령이 우리 사회에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하다.

1) 의제강간의 역사적 발전²⁾

의제강간법의 기준연령(Age of Consent Laws)은 한 개인에 대해 정신적, 육체적으로 성행위에 대한 동의/합의 능력이 없다고 여겨지는 특정 연령을 기준으로 삼아 해당 연령 이하의 아동·청소년을 성인에 의한 성적 폭박과 착취로부터 보호

2) 본 단락의 내용은 Stephen Robertson, "Age of Consent Laws," in Children and Youth in History, Item #230, <http://chnm.gmu.edu/cyh/items/show/230> (accessed August 14, 2019) 의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자가 번역하여 재구성한 내용임.

하려는 목적으로 설정되었다(김한균, 2013). 역사적으로 보면, 해당 연령은 각 시대별 결혼적령기 연령과 흡사한 것을 볼 수 있다(김한균, 2013).

역사적으로, 법에서 의제강간에 대한 기준연령을 표기한 것은 1275년 영국의 강간법에서 그 시초를 찾을 수 있다. Edward 1세의 법령(Westminster 1)은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12세 이하의 어린 여자와 관련이 있는 성적 행위를 처벌한다는 내용이었다고 판사이자 법학자인 Edward Coke 경이 관련법을 해석하였다. 이는 1576년에 10세로 하향 조정되기도 하였다(김한균, 2013). 이와 같은 의제강간에 관한 법령은 16세기 독일이나 이탈리아에서도 일부 소개되었고, 이 나라들도 12세를 의제강간의 기준연령으로 삼은 듯하다. 이후 18세기 말부터는 의제강간에 대한 연령 규정이 대다수의 유럽 국가에서 채택, 적용되었다. 한 예로, 프랑스의 나폴레옹법(Napoleonic code)은 1791년에 11세를 의제강간의 기준연령으로 표기하였고, 이후 1863년 해당기준을 13세로 상향 조정하였다. 이와 마찬가지로 19세기 여러 유럽 국가, 즉 포르투갈, 스페인, 덴마크, 그리고 스위스 역시 의제강간에 대한 기준연령을 초기 영국이 정했던 12세보다 상향된 13세로 정하였고, 영국 역시 1875년에 13세를 기준으로 하였다. 이와는 달리, 미국의 경우는 주마다 차이가 있었지만 대체로 10세에서 12세로 해당 연령기준을 정하였다고 보고되었다.

19세기 말에 들어서면서 성행위 당사자인 두 사람의 ‘성적 합의 능력’은 성매매 반대 캠페인을 벌이던 도덕개혁가들에 의해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화되었다. 이즈음에 영국은 해당 기준연령을 16세로 상향하였고, 1920년 미국에서도 16세에서 18세로 연령을 올려 해당 법을 집행하기 시작하였다. 사실, 이 연령은 과학적인 근거로 제시될 수 있는 월경 시작 나이보다 많기는 하지만, 아동·청소년의 심리적 성숙이 신체적인 성숙보다 늦다는 심리학적 소견이 받아들여진 결과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산업 혁명 이후 급속하게 산업사회로 발전해 가는 서구 사회에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독립된 어린 여자 아동·청소년들이 가족과 떨어져서 공장이나 일반 회사 또는 상점 등에서 일하면서 이들의 성적인 활동이 더욱 자유로워졌다. 이와 같은 사회적 변화와 맞닥뜨리면서 사회적 여론은 의제강간 규정 연령기준을 더 상향해서 이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과 이들의 사회적 활동과 성숙도를 고려하여 해당 연령을 낮추어서 성숙한 인격체로서 그들의 자유로운 성적 활동을 존중해야 한다는 반대 입장으로 팽팽한 대립구도를 형성하였다. 다시 말해서, 사회적으로 더욱더 자유로워진 만큼 어린 여자 청소년의 성을 더 보호해 주어야 할지, 아니면 그들의 성적 자율권을 더 보장해 주어야 할지가 사회적 이슈거리가 되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사회적 변화가 해당 연령을 낮추는 데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오히려, 미국 내에서는 이와 같은 대립이 “Jailbait³⁾”라는 슬랭을 만들어 내기까지 하면서 아동·청소년의 성은 법적으로 더욱 엄격히 보호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우세하였다. 하지만 1940년대와 1950년대 사이 아동·청소년의 성문화가 점점 더 자유로워지면서 2차 세계대전 후에는 성행위에 관련된 남과 여의 나이가 의제강간에서 정한 기준연령보다 어린 경우에도 그에 대한 처벌을 약화하여 집행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의제강간죄의 피해자를 여자 아동·청소년으로 한정하였던 법의 발달 초기와 달리 1791년 프랑스의 나폴레옹법(Napoleonic code)에서는 남자 아동·청소년들도 보호의 대상으로 해당 법을 적용하기 시작하였다. 그 후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이 해당 법을 남자 아동·청소년에게도 적용하기 시작하였지만, 북미의 경우는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야 해당 법을 남자 아동·청소년에게까지 적용하여 보호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은 여성주의자들(Feminists)의 강간법 개정에 힘입어 여성을 단지 성적인 관계에서 수동적이라고 보았던 당시의 고정관념과 맞서고자 하는 의도가 있기도 하였지만, 이와 같은 고정관념 때문에 보호의 사각지

3) Jailbait은 성관계 승낙을 할 수 있는 최소 연령보다 어린 연령의 매력적인 여자 아동·청소년을 지칭하는 은어로 직역하자면 “감옥으로 유인하는 미끼”가 된다. 이는 성관계 합의 가능연령보다 어린 여자 아동·청소년과 성관계를 한 경우 두 사람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강간죄가 성립하게 되기 때문에 지칭된 특정연령 이하의 여자 아동·청소년을 지칭한다.

대에 놓여있는 남성의 성폭력 피해에 대한 우려를 없애기 위해 해당 법을 성별과 상관없이 모든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도록 확대한 것으로 보인다.

추가적으로 해당 법령의 대상 범위도 확장되었다. 의제강간에 관한 법률이 제정 되던 초기에는 이성 간의 성적인 문제, 특히 어린 여자 청소년의 성이 성인 남자에 의해 착취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로 해당 법이 적용되었다면, 이후 어린 남자 아동·청소년과 성인 여자의 관계에까지 법의 적용이 확장되었다. 이후 이는 어린 남자 아동·청소년이 성인 남성에게 의해 성적으로 피해를 입는 것 같은 동성 간에 일어나는 성범죄에서 아동·청소년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해 사회적인 관심을 갖게 하였다. 결과적으로 20세기 말부터는 많은 나라들이 동성 간의 관계에서도 의제강간에 대한 연령기준을 적용하여 해당 법을 집행하면서 확장적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기 시작하였다.

의제강간에 대한 합의 기준연령에 관한 규정은 8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나라마다 제각기 그 기준을 달리하여 발전하였고, 그 범위가 13세에서 18세로 넓게 적용되고 있다. 연령에 대한 규정과 함께, 해당 법이 진화하면서 성별에 대한 규정, 그리고 사건의 전반적인 내용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역사는 이 법이 정하는 기준연령이 과학자들이나 의사들이 말하는, 소위 월경을 시작하고 사춘기가 시작하여 진행되는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설정된 것이라기보다 사회 문화적 변화에 힘입은 사회적 합의에 의한 상대적인 기준이었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다(김한균, 2013).

2) 외국의 의제강간 기준연령 조정 사례

2018년, 프랑스는 법적인 의제강간의 기준연령을 13세로 정할 것인지 혹은 15세로 정할 것인지에 대해 정부 부처 간의 심각한 논의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끝에 15세로 정하자는 방안을 택하였다(BBC News, 2018-03-05). 입법

초기에는 프랑스 법무부는 13세, 여성단체들은 15세는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고 한다(연합뉴스, 2018-03-06). 이전의 프랑스는 다른 유럽 국가들과 달리 15세 미만인 청소년과 성관계를 한 성인도 폭력이나 강요, 협박 등의 증거가 입증될 경우에만 강간죄 혹은 준강간죄로 기소될 수 있었다고 한다. 이는 프랑스 내에서 15세 미만의 아동·청소년과 성관계를 하고 이후에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되더라도, 법원에서 두 사람 사이의 성관계가 합의하에 이루어졌다고 입증하고는 무죄로 판결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는 등의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였다고 한다. 2017년 11월 30대 남성은 11세의 어린 여자아이와 성관계를 하고 검찰에 의해 강간죄로 기소되었지만, 판사는 어떠한 강압이나 위협, 그리고 폭력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보고 강간죄가 아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혐의만 인정하여 강간죄로 판결될 때보다 낮은 형량과 벌금을 선고하였다. 또 다른 28세의 남성의 경우도 11세 여자 아이와 성관계를 하고도 신체적으로 어떠한 가학적 행위가 없었다는 이유로 강간죄가 아닌 미성년자 성폭행죄로 선고받으면서, 사회적으로 의제강간죄를 제정하고 또 그 기준연령을 명시적으로 정해야 한다는 각성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결국 관련법을 입법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 법에 대해 정부 각 부처 장관과 프랑스 Emmanuel Marcon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대국민 홍보에 나서고 있다고 BBC News는 밝히고 있다(BBC News, 2018-03-05).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일본과 함께 최근까지 낮은 연령을 고수하였던 스페인도 합의하에 성관계를 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을 13세에서 16세로, 결혼을 할 수 있는 나이를 14세에서 16세로 상향 수정할 것을 2009년에 의회에서 합의하여 2013년부터 실행하고 있다. 2012년 Albacete라는 마을에서 13세 소녀가 그녀의 39세 연인에게 살해당한 사건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스페인 사회에서 성관계에 대한 합의 기준연령에 대한 논쟁이 일어났다고 한다. 사실, 사건이 일어나기 전 소녀의 부모는 경찰에게 둘 사이의 나이 차가 불합리함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둘 사이의 관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없었기 때문에 개입을 할 수가 없었다고

한다. 이후 소녀는 무참히 살해당했고, 스페인 사회에서 해당법의 실효성이 거론되기 시작하면서 결국에는 해당 법의 기준연령을 16세로 상향 조정하게 되었다. 또한, 스페인에서 해당법의 집행은 여전히 판사의 상황적 판단을 가능하게 하여 해당 법의 적용이 엄격하지 않은 편이다. 예를 들면, 연령이나 성적 발달 단계가 비슷한 남자와 여자 사이의 성관계에 대해서는 판사가 상황을 판단할 수 있게 하였다.

스페인의 의제강간 연령 상향 조정은, 다른 유럽 국가(영국, 러시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벨기에 등)와 비슷한 연령기준을 만들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스페인의 경우는 1970년 이후에 태어난 여성의 74%가 20세 이전에 첫 성경험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이는 그들의 부모세대보다 2배 이상이 많은 수치로, 아동·청소년의 성적 활동이 과거에 비하여 상당히 자유로워졌음을 보여 준다. 스페인은 십대의 임신이 미국의 삼분의 일 수준으로 미국에 비하여 매우 낮은 편에 속함에도 의제강간 연령기준의 상향이 강행되었다는 점은 눈여겨볼 만하다.

3) 국가별 의제강간 기준연령

앞서 언급한 것처럼 800년의 역사가 있는 의제강간죄의 적용 연령은 나라마다 사회마다 차이가 있다. 대부분의 나라는 14세와 18세의 사이로 그 연령의 기준을 삼고 있으며, 16세를 기준으로 삼는 나라가 73개국으로 가장 많다. 눈여겨볼 것은 북한이 우리나라에 비해 높은 연령인 15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중국도 우리보다 높은 14세로 정하고 있다. 앞서 설명한 스페인은 13세에서 16세로 상향하였다.

표 II-3 국가별 의제강간 기준연령

기준연령	국가	국가 수
11	Nigeria	1
12	Angola, Philippines	2
13	Comoros, Japan, South Korea, Niger, Burkina Faso	5
14	Bulgaria, Myanmar, Cape Verde, Chad, China, Colombia, Ecuador, Estonia, Germany, Hungary, Italy, Austria, Liechtenstein, Madagascar, Malawi, Mauritius, Montenegro, Bangladesh, Paraguay, Peru, San Marino, Sao Tome And Principe, Bolivia, Serbia, Bosnia And Herzegovina, Brazil, Albania, Macedonia	28
15	Cambodia, Costa Rica, Croatia, Czech Republic, Denmark, France, Kiribati, Greece, Guinea, Honduras, Iceland, North Korea, Laos, Monaco, Aruba, Poland, Romania, Saint Vincent And The Grenadines, Slovenia, Sweden, Syria, Thailand, Uruguay, Solomon Islands	24
16	Belarus, Algeria, Cameroon, Canada, Sri Lanka, Taiwan, American Samoa, Cook Islands, Cuba, Andorra, Dominica, Fiji, Finland, Georgia, Antigua And Barbuda, Ghana, Grenada, Azerbaijan, Guam, Australia, Indonesia, Israel, Jamaica, Kazakhstan, Jordan, Kyrgyzstan, Lesotho, Latvia, Bahamas, Lithuania, Luxembourg, Malaysia, Mauritania, Mongolia, Moldova, Armenia, Namibia, Barbados, Nepal, Netherlands, Vanuatu, New Zealand, Belgium, Norway, Marshall Islands, Palau, Papua New Guinea, Russia, Saint Kitts And Nevis, Saint Lucia, Senegal, Singapore, South Africa, Zimbabwe, Botswana, Spain, Suriname, Swaziland, Switzerland, Tajikistan, Togo, Tonga, Trinidad And Tobago, Turkmenistan, Ukraine, United Kingdom, Belize, United States, Uzbekistan, Venezuela, Samoa, Zambia, Brunei	73
17	Cyprus, Ireland, Mexico, Nauru	4
18	Burundi, Central African Republic, Chile, Benin, Republic Of The Congo, Dominican Republic, El Salvador, Equatorial Guinea, Ethiopia, Eritrea, Djibouti, Gabon, Gambia, Argentina, Guatemala, Haiti, Vatican City, India, Iraq, Ivory Coast, Kenya, Lebanon, Liberia, Mali, Malta, Nicaragua, Northern Mariana	40

기준연령	국가	국가 수
	Islands, Panama, Bhutan, Rwanda, Seychelles, Sierra Leone, Vietnam, Somalia, South Sudan, Tunisia, Turkey, Uganda, Egypt, Tanzania	
19	Niue	1
21	Bahrain, Portugal	2

*.World Population Review의 내용을 연구자가 재구조화하여 작성함.
<http://worldpopulationreview.com/countries/age-of-consent-by-country/>

4) 외국 사례가 주는 시사점

의제강간에 관한 연령기준은 13세기 영국에서 시작하여 오늘날의 우리나라에 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의제강간 기준연령이 발전하여 변화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그 연령이 12세에서 시작하여 시간이 더할수록 높아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외국의 사례를 보자면, 산업화 이후 사회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가족 기능이 약화된 아동·청소년의 수가 증가하였고, 또 이들의 바깥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이들의 성적인 활동 역시 자유로워지자 이들의 성을 이제는 사회가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각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게 되었다. 이에 대부분의 산업화된 나라들은 16세 이상을 의제강간의 기준연령으로 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 의제강간과 관련한 연령을 15세로 정한 프랑스와 기존의 13세를 16세로 상향 조정한 스페인의 사례는, 사회적 약자인 아동·청소년의 성이 현대사회에서 어떻게 보호되고 있는지 보여줌과 동시에 우리나라의 현 실정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우리나라도 산업의 변화를 거치고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가족 기능이 와해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아동·청소년이 집보다는 학교나

학원 등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진 것이 현실이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확산, 아동·청소년의 신체적/성적인 조숙, 성에 대한 개방적인 사회 풍조와 함께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들의 이성교제가 예전과 비교하여 매우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그들의 자유로운 성적 활동에 대한 욕구 역시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같은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할 때, 산업화로 인해 그 기능이 약화된 가정의 아동·청소년 성 보호 역할을 사회에서 떠맡아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하였던 외국의 사례는 우리 사회가 어떠한 가치를 우선적으로 선택하고 반영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 준다. 그리고 우리 아동·청소년의 성의식의 현주소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 준다.

둘째, 프랑스와 스페인은 우리와 동시대에 살면서 우리와는 사뭇 다른 결론에 도달하였다. 따라서 우리는 이 두 나라가 진행하고 있는 사회적 정책을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두 나라가 의제강간 기준연령을 15세로 정하거나 16세로 상향 조정을 하게 된 시발적인 사건은 유사했던 것으로 보인다. 강요와 협박에 의해서만 강간죄 처벌을 하게 되어서 아동·청소년을 강간하고도 경량의 형벌밖에 판결하지 않은 프랑스나, 낮은 의제강간 연령기준으로 인해 26살 차이가 나는 성인남성에게 무참히 유린되고 결국 살해까지 당한 사건에서 무기력하였던 스페인 정부를 보노라면, 우리나라의 연예기획사 대표와 15세 여중생의 사건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다. 실제로도 그 사건이 2017년에 대법에서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이 난 후에 사회 여러 유관 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이 사건을 핵심으로 한 토론회를 열고, 각성의 목소리 또한 높아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와 같은 외국의 사례는 좋은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3.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를 위한 핵심 쟁점

의제강간 기준연령과 관련한 뜨거운 감자는 단연 성적 자기결정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연령이다. 역사적으로도 그리고 사회마다 의제강간의 기준연령 설정은 과학적이지도 의학적이지도 않았기에(김한균, 2013), 해당 기준연령은 꾸준히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이에 본 장에서는 성적 자기결정권(자기결정능력)은 무엇이며, 어떻게 측정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자 한다.

1)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 결정권(성적 자기 결정 능력)

우리나라의 헌법은 개인의 자유로운 성적 행동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전제로 국민의 기본권 중에 하나로 보장하고 있다(김한균, 2019). 하지만, 성적 자기결정권을 합리적으로 행사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리고 그에 따라 특정 연령의 아동·청소년들에게 성적인 자유를 부여하고 특정 연령 이하의 아동·청소년에게는 성적인 자유를 제한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박광배(2000)은 성적 자기결정 능력을 성행위에 대해 합리적이고 의미 있는 동의를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따라서 이와 같은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사고능력과 이해능력이 동반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아동·청소년이 성적 자기결정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성적 행동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그와 같은 행위가 자신의 상황에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의 유익성 혹은 무익성, 그리고 해로움이 무엇인지에 대해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또, 윤덕경(2012)은 성적 자기결정권이란 성적 문제에 대해 행위자가 스스로 자유로운 결정에 의해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으로, 인위적인 방해가 없이 진행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뿐만 아니라 자기결정권에 대한

존중은 우리 헌법에서 강조하고 있는 행복추구권(헌법 10조)에서 파생된 것으로 인간의 자유 및 책임과 함께 인간의 존엄성까지 반영이 된 원리라고 하였다. 더욱이 박성민(2013)은 독일의 형법을 참고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성적 행위에 관하여 원하는 상대방과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방법으로 할 것인지를 말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는 권리로서, 성적 의사결정과 함께 성적 행동의 자유로움으로 설명하였다. 종합해 보면 성적 자기결정권(자기 결정 능력)은 성적 행위에 대해 당사자가 해당 행위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갖추고 그 행위를 자발적이고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능력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성적 자기결정 능력이라는 것이 사람이 태어나서 누워 있다가 기어다니다가 다시 걷기까지의 단계를 거치는 것과 같은 단계적인 것이라거나 특정 연령 이상이 되면 해당 과업을 완수하게 되는 과업 성취의 유무가 명확한 성격의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권김현영, 2015). 이와 더불어 앞서 언급한 것처럼, 아동·청소년이 성범죄에 맞닥트리는 상황에서는 자신의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그루밍(Grooming)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억압적이고 폭력적인 상황에 대한 인식도 불분명하였다는 사실이 많은 연구에서 밝혀지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연구에서는 14세 이전에 성관계를 경험한 여성의 70% 이상이, 15세 이전에 해당 경험을 한 50% 정도가 강제적인 성관계였으며 자신들은 그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상황에서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없었다고 고백하고 있다(Donovan, 1997). 이에 대해 Donovan은 14세와 15세 정도의 청소년은 자발적으로 그리고 상황을 제대로 인식한 가운데 합의한 성관계를 갖기는 어렵다고 서술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와 같은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몇 가지 주장이 있다. 송숙형, 김신영, 정영기, 신윤미(2008)은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성폭력 피해 연구에서, 대부분의 경우 청소년들이 자기의 생각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대처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 김효현(2014)은 10대 청소년 미혼모를 상대로 한 조사에서, 이들

미혼모 대부분이 자신들이 했던 성관계의 결과가 임신일 줄 몰랐다고, 또 자신들이 이렇게 쉽게 임신을 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아동·청소년들이 성적 행동들을 할 수 있을 만큼 육체적으로는 성숙하였을지 모르지만, 박광배(2000)의 지적처럼 자신의 행위가 자신의 상황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 통합적인 인지나 인식을 할 수 있었는지, 다시 말해 인지 심리적으로 자기결정능력이 있었는지 확인하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 들어서는 뇌과학이 발달하면서 아동·청소년의 뇌의 구조적인 변화를 촬영하는 등, 그들의 해당 능력의 유무에 따른 특징적 변화를 뇌의 변화로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박재홍, 김성환, 2011). 이들의 결과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뇌는 어른의 뇌와 비교하여 아직은 완전히 발달하지 않은 상태로 성인의 뇌구조 변화와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성인과 같은 책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을 가지기는, 특히 성적 행동에 대한 자기 결정적 의견을 내 놓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김희정, 2016). 특히, 뇌과학자들은 이와 같은 뇌기능이 성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은 되어야 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있다(박재홍, 김성환, 2011).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아동·청소년이 심리적으로 그리고 신경생물학적으로 성적 자기결정 능력이 있다는 결론을 내리기에는 근거가 미흡해 보인다. 이에 현재 우리나라의 형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제강간죄의 적용 기준연령인 만 13세는, 성폭력 범죄를 다루는 법 조항이 사회적 합의로도, 과학적 증거로도 충분히 성숙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아동·청소년에 대해서도 어른과 동일한 조건을 적용하는 것임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2)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 능력 측정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는 강간죄를 상대방의 “동의(합의) 없이” 성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때, 주목할 만한 부분이 “동의(합의) 없이” 성관계를 가진다는 표현이다. 이에 대해 해당법은 다시 자세히 이 “동의(합의)”의 의미를 서술하고 있는데, 동의(합의)는 “성관계를 하는 상대방이 자유롭게 자발적이어야 하며 관련 행위에 대한 지식과 완전한 인지가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고 밝히고 있다 (California Penal Code § 261.6., accessed from California Legislative Information). 이는 성적 자기 결정 능력에 대한 중요한 필요조건들의 서술이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성적인 자기 결정 능력이 있는 사람은 성관계를 하는 당사자로서 관련 행위에 대한 지식과 충분한 인지를 바탕으로 그 의미를 알고 있어야 하며, 상대방에 대해서도 같은 의미로서 자유롭게 자발적으로 상황을 인식하고 받아들여 판단할 수 있도록 지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Lyden(2007)은 여러 선행 자료를 바탕으로, 성적 행위를 함에 있어서 합리적으로 성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윤리적, 법적인 근거를 제시하였다. Lyden에 의하면, 영국의 경우 영국의사협회(The British Medical Association)와 법사회(Law Society)에서 성적인 합의 능력을 갖추려면 기본적으로 1) 개인이 성관계의 목적과 그 의미를 이해하고, 2) 의지적으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British Medical Association and Law Society, 2004, Lyden, 2007에서 재인용). 뿐만 아니라 개인이 기본적인 성지식이 있어야 하고 성행위에 대한 거절이나 승낙 의사의 권한이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Murphy와 O'Callaghan(2004)은 성적인 합의 능력은 개인의 합리적이고 자발적인 선택을 기초로, 성과 관련한 지식, 성관계의 결과 초래될 성병이나 임신 등과 관련한 지식, 성행동에 대한 상황적 적절성의 인지, 성폭력적인 상황에 대한 인식,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 자신의

의견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의 요소로 측정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게다가 미국에서는 Ames와 Samowitz(1995), 그리고 Kaeser(1992)가 성적 자기결정 능력에 대해 지적장애인의 경우 “책임 있는 행동에 대한 표현”을 기본으로 하여 1) 자발적으로 성행위를 선택하고, 2)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안전한 상황을 인지하며, 3) 위계나 위력에 의해 성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아야 하며, 4) 둘 사이의 관계에서 심리적으로나 물리적인 착취가 없어야 하며, 5) 언어적이든 비언어적이든 삶은 의사표현을 할 수 있어야 하고, 6) 사회적으로 적절한 시간과 장소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제안하였다. 하지만 이와 같은 능력은 일반적으로 여러 영역의 전문가들(의사, 변호사, 심리학자, 사회복지사, 등)이 위원회를 만들어서 결정하는 것이 보통이라고 소개하고 있다(Lyden, 2007).

우리나라의 경우, 하은혜, 유미숙, 조유진(2004)이 “청소년 성발달 평가척도 개발”을 시도하였고, 성지식 영역, 성태도 영역, 성적 의사결정 영역, 성폭력 인식 및 대처 영역, 그리고 양성 평등의식 영역으로 구분하여 해당 척도를 제시하였다. 이 연구자들은 성지식의 영역을 성지식 자신감과 실제 성지식으로 구분하였고, 성태도 영역의 경우는 성적 자연스러움, 미혼 성관계, 성 수치심으로 나누어 평가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 성적 의사결정 영역과 관련하여서는 이성 관계 의사결정, 성 유혹 거부 의사결정으로, 성폭력 인식 및 대처 영역은 성폭력 인식과 성폭력 수치심 등으로 구분하였으며, 양성평등 의식 영역은 양성평등 의식의 단일 요인으로 구분하여 청소년의 성 발달 정도를 평가하고자 시도하였다.

이와 같은 선행 연구를 기초로 하여 본 연구는 전문가가 아동·청소년의 성적 발달, 특히 성적 자기 결정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연령을 추정 평가할 수 있도록 설문지를 구성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대략적인 수렴 연령을 찾아보고자 한다. 이에 아동·청소년이 성적 자기 결정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 필요한 성지식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지, 그들의 성에 대한 태도는 단순 호기심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그들의 삶에 대한 진지함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지, 또 성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의사결

정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이와 같은 능력의 발휘가 가능한 연령을 추정하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성행위의 결과로 파생될 수 있는 여러 사회적 책임과 본인의 심리적 신체적 문제점을 예측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평가 지표에 포함시키고자 한다.

선행 연구들은 아동·청소년이나 지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같은 집단에 대한 성적 자기 결정 능력 평가는 여러 영역의 전문가들이 다각도에서 측정하고 평가하는 것이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제안하고 있다(Lyden, 2007).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아동·청소년을 관찰하고 또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학교의 담임교사, 성교육 및 성상담 전문 교사, 그리고 사회기관의 해당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해당 지표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성숙 정도를 확인하고자 한다.

4. 맺음말

아동·청소년의 성의 발달은 그 사회문화적인 환경요소에 의해 확연한 개인차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개인차가 있는 요소에 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를 논하는 것은 끊임없이 논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을 듯하다. 다시 말해서 국가의 법이 보호의 명분을 들어 이들을 지나치게 간섭하고 아동·청소년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고, 반대로 이들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받아 마땅한 보호를 소홀히 한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의 아동·청소년의 성의식 수준과 그들의 성적 자기 결정 능력을 확인하는 일은 실증적인 입법 요건을 갖추기 위해 학문적으로 매우 중요한 부분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현재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대상의 성범죄 현황 및 특성을 알아보았고, 현시점에서 우리나라 현행법의 역할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뿐만

아니라 최근 사회 도덕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몇몇 사건들로부터 이슈화되어 지속해서 논쟁거리가 된 우리 형법의 의제강간에 관한 규정 속 ‘만 13세’라는 기준연령의 의미를 확인하였다. 게다가 외국의 의제강간 연령기준의 진화를 확인하면서 이들 국가에서 사회적, 국가적으로 합의된 근거를 알아보았다. 특히, 최근 15세로 그 기준연령을 정한 프랑스와 13세에서 16세로 상향 조정한 스페인의 예를 살펴보고, 이러한 사실이 우리 사회에 시사하는 바를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성적 자기결정 능력에 관한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이를 측정하는 방법을 알아보았다.

이를 종합하여, 본 연구는 우리 아동·청소년의 성은 보호받아야 하며 그들의 자율적인 성적 활동 역시 존중받아 마땅함을 확인하였다. 역사적으로 이러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 대상 연령은 계속 변하였고, 사회문화적 요소를 고려하여 해당 법의 조정이 늘 필요했던 부분이다(김한균, 2013).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성의식 발달 수준과 성적 자기결정 능력에 관해 연령별 평가를 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할 수 있는 전문가로서 학교의 담임교사와 성교육 및 성상담 전문 교사, 그리고 사회 기관에서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고자 한다. 이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성의식 수준과 성적 자기결정 능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연령을 추정해 보고, 현재 아동·청소년의 성적 활동에 대한 정보를 통해 이들의 성을 보호하면서도 보장할 수 있는 합리적인 입법 법안을 위한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제3장 조사 결과 분석

- 1. 조사 개요
- 2. 조사 결과
- 3. 요약 및 시사점



1. 조사 개요

아동·청소년 성 보호를 위한 연령 조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 결정 능력에 대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앞서 탐색하였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평가방법을 도출하여 평가를 실시하였다.

1) 성적 자기 결정 능력 평가도구

앞서 서술한 선행연구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 능력 평가(측정) 방법을 서술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선적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 결정 능력을 평가(측정)하는 도구 개발이 중요한 연구 과제 중 하나이다. 성적 자기 결정 능력을 평가하는 도구의 개발은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 결정 능력에 대한 실증적 자료를 제시해 줄 뿐만 아니라, 정책적 방향을 정하는 중요한 결정 자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성적 자기 결정 능력 평가도구 개발을 위해 선행연구에서 개발된 도구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2018 UNESCO에서 제시하고 있는 성교육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하여 성지식, 성에 대한 태도, 성과 관련된 의사결정, 성폭력에 대한 인식 및 대처, 성적인 자율성의 5개 하위 영역의

문항을 추출하여 관련 전문가들(초 중 고 보건교사 및 성교육 전담교사, 관련 분야 대학교수, 성상담 전문가 10인)과 예비 문항을 검토하고 수정 보완한 다음 하위요인별로 구별하여 총 27문항을 개발하였다. 이후 성에 대한 태도, 성과 관련된 의사결정, 그리고 성적인 자율성에 해당하는 문항들은 내용 타당도 측면(전문가 의견 수렴)과 응답 반응의 상호응집성(통계적 분석 결과)을 고려하여, 성에 대한 태도 및 인식, 성적 자율성의 두 요인으로 통합 분리하여 총 4개의 하위요인(성지식, 성에 대한 태도 및 인식, 성폭력에 대한 인식 및 대처, 성적 자율성)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림 Ⅲ-1 평가도구 개발 과정

또한, 실제 연령 추정을 위한 설문을 실시할 때는 각 요인에 대해서 남학생과 여학생을 구별하여 해당 지시문의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실천이 가능한 연령을

추정하도록 요청하였다. 이는 본 연구를 수행하는 동안 여러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여학생과 남학생이 성적인 정보를 접하는 양에 차이가 있고, 성적인 표현을 하는 것에도 많은 차이를 보인다는 의견을 반영한 결과이다(설문 내용은 부록 참고).

2) 전문가 집단의 선정

본 연구에서 전문가 집단은 아동·청소년들의 성적인 발달과정을 잘 알고 그 사실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학교의 담임교사, 그리고 학교 내의 성교육 전담교사나 성과 관련된 상담교사, 그리고 사회단체에 소속된 성교육 전문가와 성상담 전문가를 주된 평가 집단으로 선정하였다. 특히, 아동·청소년들이 성적인 현상에 노출되는 정도가 지역별/교급별 차이가 있을 것을 고려하여 할당표집(Quota Sampling) 방법을 이용하여 전국적으로 고른 분포를 이루도록 표집하였다. 먼저 학교 교사의 표집은 설문조사 위탁업체를 통하여, 2018년 권역별 교육통계 모집단 분포를 이용하여 지역별, 학교급별 제곱근 비례배분 방법으로 1차 100개의 학교를 선정하여 의뢰하였고, 설문 참여를 거절하는 학교가 발생하여 2차로 50개 학교, 3차로 30개 학교에 추가 의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또한, 사회단체 소속 성교육 전문가와 성상담 전문가는 전국 성문화 센터를 기본적인 전문가 집단으로 선정하여, 먼저 연구자가 개별 센터에 이메일을 통한 협조 요청을 하여 참여 전문가의 개인 연락처를 받은 다음 평가 관련 설문의 링크를 발송하는 형태로 진행하였다.

3) 기관 생명 윤리 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승인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계획된 본 연구는 본원의 제23차 기관 생명 윤리 위원회

(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에서 승인(201909-HR-수시-002-01)되어, 2019년 11월 29일부터 12월 12일까지 조사업체를 통한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2. 조사 결과

1) 응답에 참여한 전문가 특성

본 조사는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청소년을 가까이에서 관찰하고 현장에서 이들에게 성과 관련된 지식을 교육하거나 상담하는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담임교사 및 성교육(성상담) 전담교사, 그리고 사회단체에 소속된 성상담자 및 성교육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본 연구를 위해 제작된 성적 자기결정 능력 평가도구를 사용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에서는 응답자에게 각 지시문에 대해 자신들이 주로 응대하는 아동·청소년들을 미루어 보았을 때 해당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연령을 추정하도록 요청하였다. 온라인 설문조사 방법을 사용하였고,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준오차는 $\pm 6.64\%$ 였다.

먼저 본 설문 참여자의 소속별(사회단체, 학교), 시·도별, 그리고 평가 대상으로 삼은 학년별 분포를 [표 III-1]에 정리하였다. 해당 설문에 참여한 전문가는 총 218명으로, 학교 관련자 115명, 사회단체 관련자 103명이 각각 설문에 참여하였다. [표 III-1]과 같이 전문가들은 전국적으로 고른 분포를 보이며, 평가 대상 청소년의 학년도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II-1 설문 참여자의 지역별 분포 및 평가 대상 청소년의 학년

단위: 빈도 수

			초등 학생	중 1학년	중 2학년	중 3학년	고 1학년	고 2학년	고 3학년 이상	기타	응답자 수
사회 단체 소 속 전문 가	거주 지역	서울	9	5	5	6	7	4	4	2	11
		부산	6	7	5	5	5	5	5	0	9
		대구	3	4	4	4	2	2	1	1	4
		인천	2	2	2	2	2	2	1	1	3
		광주	3	4	4	4	2	1	1	0	4
		대전	1	1	1	1	1	1	1	0	1
		울산	0	0	0	0	0	0	0	0	0
		세종	0	0	0	0	0	0	0	0	0
		경기	18	14	13	12	12	11	9	2	19
		강원	11	9	10	9	8	9	4	1	12
		충북	3	2	2	2	2	2	3	1	5
		충남	5	3	3	3	3	3	2	0	6
		전북	4	3	3	3	2	2	3	0	5
		전남	6	6	6	9	7	6	3	0	9
		경북	4	4	4	4	5	5	5	1	5
		경남	9	6	6	6	6	6	4	2	9
	제주	1	1	1	1	0	0	0	0	1	
합계		85	71	69	71	64	59	46	11	103	
학교	거주 지역	서울	2	3	1	4	1	1	1	0	9
		부산	0	4	4	3	1	1	1	0	5
		대구	2	3	3	4	2	2	2	0	8
		인천	1	4	2	3	0	0	0	0	6
		광주	0	8	6	6	1	1	0	0	10
		대전	0	3	3	2	1	1	1	0	5
		울산	1	4	3	3	1	1	1	0	6
		세종	0	2	3	2	1	1	1	0	3
		경기	4	4	3	4	3	2	2	0	11
		강원	3	3	3	4	2	1	1	0	11
		충북	2	2	1	3	1	0	0	0	6
		충남	2	1	0	0	0	0	0	0	3
		전북	2	1	3	2	1	3	1	0	9
		전남	2	3	3	3	0	0	0	0	5
		경북	2	2	3	2	1	2	1	0	7
		경남	2	3	3	4	1	1	1	0	7
	제주	2	1	1	1	1	1	1	0	4	
합계		27	51	45	50	18	18	14	0	115	

[표 III-2]에 나타난 것과 같이 아동·청소년의 성과 관련된 전문가의 직무를 고려한 직책은 사회단체는 성교육 담당자가 주를 이루었다(98명(95.1%)). 학교의 경우는 성 관련 상담교사가 36명(31.3%)으로 많아 보이나, 기타 응답의 대부분이 보건교사임을 표시하였고, 연구자의 조사에 따르면 일선 학교에서는 보건교사가 성교육을 전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들 역시 성교육 교사에 포함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학교 관계자도 성교육 관련 교사(보건교사 포함)가 64명(55.6%)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성 관련 상담교사 36명(31.1%), 담임교사가 15명(13.0%)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 평가에 참여한 아동·청소년 성 전문가의 직책과 경력

단위: 빈도 수 (%)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15년 미만	15년 이상~ 20년 미만	20년 이상	합계
사회 단체	성 상담 교사	2(100)	0	0	0	0	2(1.9)
	성교육교사 (강사)	56(57.1)	17(34.7)	6(12.2)	1(2.0)	0	98(95.1)
	기타	1(33.3)	1(33.3)	1(33.3)		0	3(2.9)
	합계	59(57.3)	32(31.1)	10(9.7)	2(1.9)	0	103(100)
학 교	담임교사	3(20.0)	6(40.0)	3(20.0)	1(6.7)	2(13.3)	15(13.0)
	성 상담 교사	15(41.7)	9(25.0)	4(11.1)	1(2.8)	7(19.4)	36(31.3)
	성교육교사 (강사)	8(32.0)	6(24.0)	4(16.0)	1(4.0)	6(24.0)	25(21.7)
	기타 (보건교사 등)	16(41.0)	7(17.9)	3(7.7)	5(12.8)	8(20.5)	39(33.9)
	합계	42(36.5)	28(24.3)	14(12.2)	8(7.0)	23(20.0)	100(100)
전체 합계		101(46.3)	60(27.5)	24(11.0)	10(4.6)	23(10.6)	218 (100.0)

해당 업무 관련 경력 기간을 확인한 결과, 경력이 5년 미만인 전문가가 101명(46.3%)으로 평가에 가장 많이 참여하였다. 이를 소속별로 살펴보면 사회단체에

서 59명(57.3%), 학교에서 42명(36.5%)이 참여하였다. 다음으로 5년 이상~10년 미만이 60명(27.5%)로 나타났고, 사회단체에서 32명(31.1%), 학교에서 28명(24.3%)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20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전문가는 사회단체에서는 전혀 참여하지 않았고, 모두 정규 학교에 소속된 것으로 나타났다(23명으로 전체의 10.6%, 학교 소속의 20.0%).

표 III -3 평가에 참여한 아동·청소년 성 전문가의 직책과 평가를 고려한 모집단의 범위

단위: 빈도 수 (%)

		100미만	100이상~200미만	200이상~300미만	300이상~400미만	400이상~500미만	500이상~1,000미만	1,000 이상	기타	합 계
사회 단체	성상담교사	0	0	1(50.0)	0	0	0	1(50.0)	0	2(1.9)
	성교육교사 (강사)	11(11.2)	14(14.3)	11(11.2)	4(4.1)	10(10.2)	21(21.4)	27(27.6)	0	98(95.1)
	기타	1(33.3)	0	0	0	1(33.3)	0	0	1(33.3)	3(2.9)
	합계	12(11.7)	14(13.6)	12(11.7)	4(3.9)	11(10.7)	21(20.4)	28(27.2)	1(1.0)	103(100)
학 교	담임교사	8(53.3)	4(26.7)	0	0	3(20.0)	0	0	0	15(13.0)
	성상담교사	6(16.7)	4(11.1)	5(13.9)	4(11.1)	6(16.7)	10(27.8)	1(2.8)	0	36(31.3)
	성교육교사 (강사)	4(16.0)	2(8.0)	4(16.0)	4(16.0)	3(12.0)	7(28.0)	1(4.0)	0	25(21.7)
	기타 (보건교사 등)	8(20.5)	7(17.9)	8(20.5)	3(7.7)	5(12.8)	5(12.8)	3(7.7)	0	39(33.9)
	합계	26(22.6)	17(14.8)	17(14.8)	11(9.6)	17(14.8)	22(19.1)	5(4.3)	0	115(100)
전체 합계		38(17.4)	31(14.2)	29(13.3)	15(6.9)	28(12.8)	43(19.7)	33(15.1)	1(0.5)	218(100)

본 연구의 분석 단위(unit of analysis)는 전문가 한 사람이기 때문에 개개의 전문가들이 고려한 모집단 수의 차이에 따른 추가적인 통계기법을 사용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본 연구가 개개인의 학생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집단에 대한 평가를 기초로 응답할 것을 요청하였기 때문에 각각의 전문가들이 염두에 두었던 모집단의 수가 많은 차이를 보인다면, 또 다른 이차적인 분석을 고려해야 할지를 확인

할 필요는 있었다. 이에 해당 설문지의 말미에 실제 평가를 염두에 두었던 모집단의 범위를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표 III-3]과 같이 100명 이상을 염두에 두고 평가를 한 것으로 나타났고(사회단체 90명(87.3%), 학교 소속 89명(77.4%), 도합 179명(82.1%), 전반적인 분포도 고르게 퍼져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 참여한 아동·청소년의 성과 관련된 전문가 집단의 전문가들이 제시하고 있는 모집단의 범위를 살펴보면 대체로 사회단체에 소속된 전문가들의 평가 모집단의 범위가 학교에 소속된 전문가들에 비해 큰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학교에 소속된 전문가들은 그들의 소속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평가를 하였을 것이고, 사회단체에 소속된 전문가들은 그들이 속한 지역사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평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 평가도구의 양호도

본 연구 수행을 위해 2018 UNESCO에서 제시하고 있는 성교육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개발된 성적 자기 결정 능력 평가도구의 양호도 검증을 위해서,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이 된 전문가 집단을 통하여 내용이 타당한 문항들을 선별하였다. 전체 개발된 문항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해당 문항들이 측정하고자 하는 하위요인의 내용을 측정하고 있고(수렴 타당도 확인), 각 하위요인이 구별되어(변별 타당도) 4개의 요인(성지식,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성폭력에 대한 인식 및 대처, 성적 자율성)을 확인하였다⁴⁾. 또한, 평가도구의 신뢰도 확인을 위하여 문항 간 일치도를 나타내는 내적 합치도(Cronbach's Alpha)를 확인하였다.

4) 요인분석 결과는 부록에 있음.

[표 III-4]와 같이 성적 자기결정 능력 평가도구의 모든 하위 요인을 하나의 척도로 간주한 후의 신뢰도는 남학생 평가 시 .958, 여학생 평가 시 .965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하위 요인의 신뢰도 역시 남학생을 평가할 시 .884~.935, 여학생을 평가할 시 .896 ~.951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통계적으로는 본 측정 도구의 신뢰도의 지표가 될 것이고, 내용적으로는 해당 하위 영역 내 아동·청소년 성적 발달에 대한 평가가 동일한 수준으로 진행되었음을 예측할 수 있다.

표 III-4 성적 자기결정 능력 연령 추정 평가도구의 하위 요인별 내적 합치도

	성 지식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성폭력에 대한 인식 및 대처	성적 자율성	전체
문항 수	7	7	3	10	27
남학생에 대한 연령 추정	.905	.893	.884	.935	.958
여학생에 대한 연령 추정	.910	.909	.896	.951	.965
전체 학생에 대한 연령 추정	.907	.898	.890	.943	.961

3) 성적 자기 결정 능력의 발달과 관련된 연령 추정 결과

아동·청소년의 성 발달과 더불어 이들의 성적 자기결정 능력과 관련한 연령 추정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결과는 우선, 남학생과 여학생 각각에 대한 전문가들의 추정 결과와 의견을 서술하고, 이후 학교 관련 전문가와 사회단체 소속 전문가들이 각각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비교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1) 성 지식

① 생식기능과 관련된 우리 몸 기능에 대한 이해

생식기능과 관련된 우리 몸의 기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리라 추정되는 아동·청소년의 연령 추정 결과는 [표 III-5]와 같다. 남학생의 경우는 만 12세(초6)(20.6%), 만 15세(중3)(20.2%), 만 14세(중2)(17.4%) 순으로 생식기능 관련 우리 몸의 기능에 대한 성지식을 이해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여학생의 경우는 만 12세(초6)(21.1%), 만 15세(중3)(20.2%), 만 14세(중2)(17.4%) 순으로 추정되었다. 성별 연령 추정 결과를 살펴보면, 평가에 참여한 전문가의 70% 이상이 생식기능과 관련된 자신의 몸 기능을 이해할 수 있는 연령을 만 12세(초6)에서 만 15세(중3)로 추정하였으며, 그중 해당 연령이 남학생/여학생 모두 만 12세(초6)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III-5 남녀학생별 생식기 기능과 관련된 우리 몸의 기능에 관한 성 지식을 충분히 갖추고 있을 아동·청소년의 연령 추정 분포

	남학생			여학생		
	빈도	퍼센트	누적 퍼센트	빈도	퍼센트	누적 퍼센트
만 12세(초6)	45	20.6	20.6	46	21.1	21.1
만 13세(중1)	35	16.1	36.7	36	16.5	37.6
만 14세(중2)	38	17.4	54.1	38	17.4	55.0
만 15세(중3)	44	20.2	74.3	44	20.2	75.2
만 16세(고1)	21	9.6	83.9	31	14.2	89.4
만 17세(고2)	35	16.1	100.0	23	10.6	100.0
합계	218	100.0		218	100.0	

한편, 아동·청소년의 생식기 기능과 관련된 우리 몸의 기능에 관한 성지식에 대한 평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누적빈도(%)를 이용하여 설명하면 다음

과 같다[표 III-5]. 생식기능과 관련된 우리 몸의 기능에 관한 성지식을 충분히 갖추고 있을 연령에 대해서, 남학생의 경우 만 12세(초6) 이상은 20.6%, 만 13세(중1) 이상은 36.7%, 만 14세(중2) 이상은 54.1%, 만 15세(중3) 이상은 74.3%, 만 16세(고1) 이상은 83.9%의 전문가가 해당 연령의 아동·청소년이 관련 성지식을 충분히 알고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이와 비슷하게 여학생의 경우도 만 12세(초6) 이상은 21.1%, 만 13세(중1) 이상은 37.6%, 만 14세(중2) 이상은 55%, 만 15세(중3) 이상은 75.2%, 만 16세(고1) 이상은 89.4%의 전문가가 생식기능과 관련된 우리 몸 기능들을 충분히 알고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결론적으로 보면, 여학생과 남학생에 대한 전문가들의 연령 추정은 비슷하게 나타났다 [그림 III-2]. 즉, 50% 이상의 전문가들이 남녀학생 모두 만 14세(중2) 이상이 되면 생식기 기능과 관련된 우리 몸의 기능에 관한 성지식을 충분히 갖추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였고, 75% 이상의 전문가들은 약 만 15세(중3) 이상의 남녀학생이 이를 인식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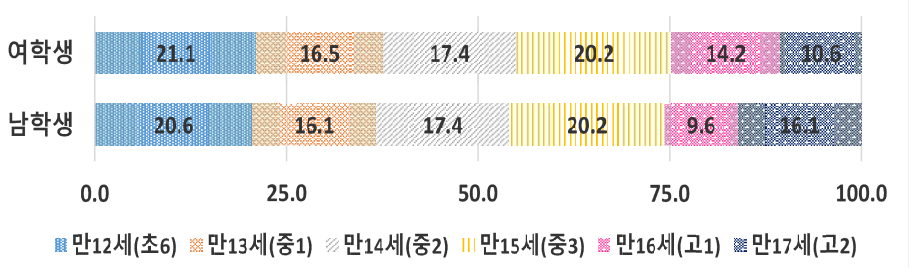


그림 III-2 남녀학생별 생식기 기능과 관련된 우리 몸의 기능에 관한 성 지식을 충분히 갖추고 있을 아동·청소년의 연령 추정

추가적으로, 전문가 소속기관별로 생식기 기능과 관련된 우리 몸의 기능에 관한 성지식을 충분히 알고 있을 것 같은 아동·청소년의 연령을 추정한 결과는 [그림 III-3]과 같다. 사회단체 소속 전문가는 남학생의 경우 만 17세(고2)(23.3%), 만 14세(중2)(20.4%), 만 12세(초6)(17.5%) 순으로, 여학생의 경우 만 16세(고1)(20.4%), 만 13세(중1)(18.4%), 만 12세(초6)(17.5%) 순으로 생식기능 관련 자신의 몸 기능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반면 학교 소속 전문가는 남학생의 경우 만 12세(초6) 및 만 15세(중3)(23.5%), 만 13세(중1)(19.1%) 순으로, 여학생의 경우 만 15세(중3)(27.0%), 만 12세(초6)(24.3%), 만 14세(중2)(20.0%) 순으로 해당 연령을 추정하였다. 전문가 소속별 연령 추정 결과를 살펴보면, 사회단체 소속 전문가의 경우 가장 많은 수가 남학생은 만 17세(고2)에, 여학생은 만 16세(고1)에 생식기능과 관련된 몸 기능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추정하였다. 반면 학교 소속 전문가의 경우 남학생/여학생 모두 사회단체 소속 전문가의 추정보다 이른 나이인 만 15세(중3)에는 생식기 관련 기능을 알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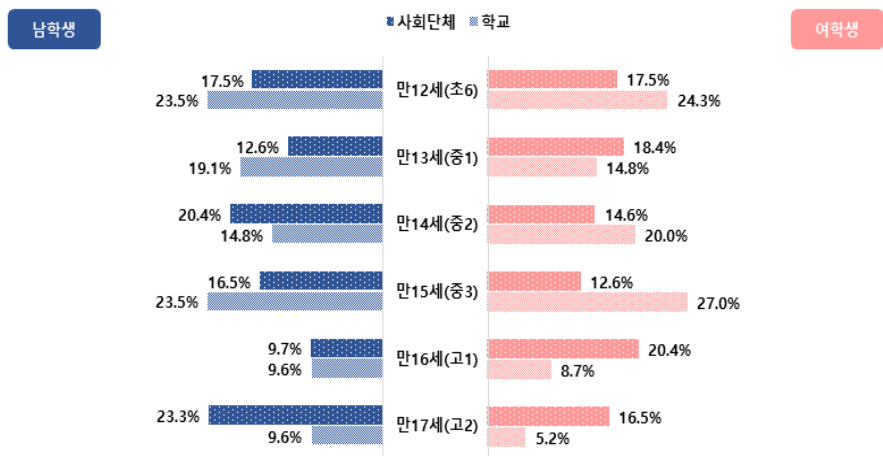


그림 III-3 전문가 소속별 생식기 기능과 관련된 우리 몸의 기능에 관한 성 지식을 충분히 갖추고 있을 아동·청소년의 연령 추정 분포

② 성관계 이유와 목적에 대한 인지

성관계의 이유와 목적을 인지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아동·청소년의 연령 추정 결과는 [표 III-6]과 같다. 남학생의 경우는 만 17세(고2)(27.5%), 만 15세(중3)(17.0%), 만 13세(중1)(15.1%) 순으로 성관계의 이유와 목적에 대한 성지식을 이해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여학생의 경우는 만 15세(중3)(21.6%), 만 13세(중1)(17.9%), 만 16세(고1)(17.0%) 순으로 추정되었다. 성별 연령 추정 결과를 살펴보면, 남학생의 경우 만 17세(고2)가, 여학생의 경우 만 15세(중3)가 성관계의 이유와 목적을 인지할 수 있는 연령으로 가장 많이 추정되었다.

표 III-6 남녀학생별 성관계 이유와 목적에 관한 성 지식을 충분히 갖추고 있을 아동·청소년의 연령 추정 분포

	남학생			여학생		
	빈도	퍼센트	누적 퍼센트	빈도	퍼센트	누적 퍼센트
만 12세(초6)	30	13.8	13.8	23	10.6	10.6
만 13세(중1)	33	15.1	28.9	39	17.9	28.4
만 14세(중2)	31	14.2	43.1	37	17.0	45.4
만 15세(중3)	37	17.0	60.1	47	21.6	67.0
만 16세(고1)	27	12.4	72.5	37	17.0	83.9
만 17세(고2)	60	27.5	100.0	35	16.1	100.0
합계	218	100.0		218	100.0	

다른 한편으로, 성관계의 목적과 이유에 관한 아동·청소년의 성지식 평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누적빈도(%)를 이용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표 III-6]. 성관계의 이유와 목적에 관한 성지식을 충분히 갖추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 연령은 남학생의 경우 만 12세(초6) 이상은 13.8%, 만 13세(중1) 이상은 28.9%, 만 14세(중2) 이상은 43.1%, 만 15세(고1) 이상은 60.1%, 만 16세(고2) 이상은

72.5%로 나타났으며, 여학생의 경우는 만 12세(초6) 이상은 10.6%, 만 13세(중1) 이상은 28.4%, 만 14세(중2) 이상은 45.4%, 만 15세(중3) 이상은 67.0%, 만 16세(고1) 이상은 83.9%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전문가들은 여학생과 남학생을 비슷한 연령 수준으로 해당 성지식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그림 III-4]. 다시 말해 50% 이상의 전문가들은 남녀학생 모두 만 15세(중3) 이상이 되면 성관계 이유와 목적에 관한 성지식을 충분히 알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단, 75% 이상의 전문가들은 여학생은 만 16세(고2) 이후에서 관련 지식을 충분히 알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였고, 남학생의 경우는 만 17세(고2) 이상은 되어야 이를 잘 알고 실제 삶에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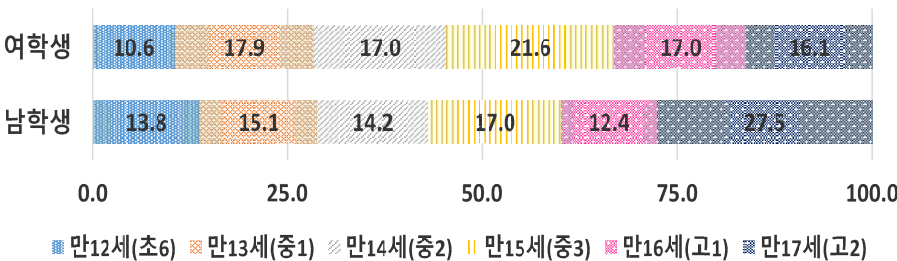


그림 III-4 남녀학생별 성관계 이유와 목적에 관한 성 지식을 충분히 갖추고 있을 아동·청소년의 연령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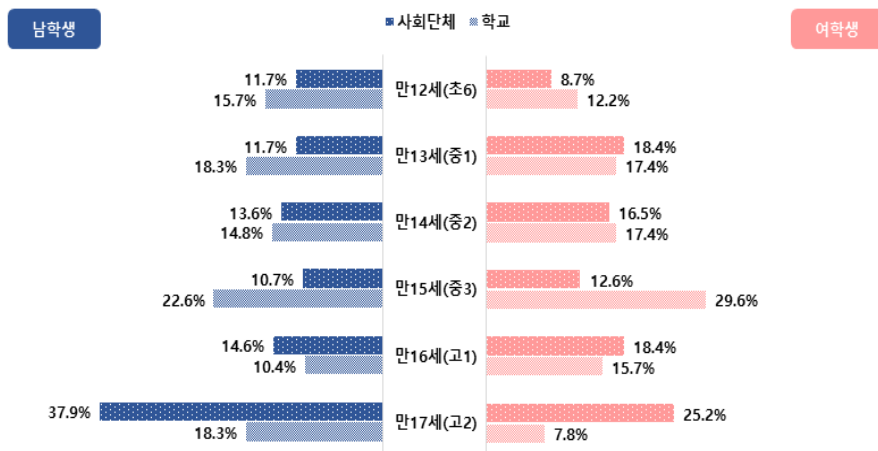


그림 III-5 전문가 소속별 성관계 이유와 목적에 관한 성 지식을 충분히 갖추고 있을
아동·청소년의 연령 추정

전문가 소속별로 아동·청소년의 연령을 추정한 결과는 [그림 III-5]와 같다. 사회단체 소속 전문가는 남학생의 경우 만 17세(고2)(37.9%), 만 16세(고1)(14.6%), 만 14세(중2)(13.6%) 순으로, 여학생의 경우 만 17세(고2)(25.2%), 만 16세(고1) 및 만 13세(중1)(18.4%) 순으로 성관계의 이유와 목적에 대한 성지식을 이해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반면 학교 소속 전문가는 남학생의 경우 만 15세(중3)(22.6%), 만 13세(중1) 및 만 17세(고2)(18.3%) 순으로, 여학생의 경우 만 15세(중3)(29.6%), 만 13세(중1) 및 만 14세(중2)(17.4%) 순으로 해당 연령을 추정하였다. 전문가 소속별 연령 추정 결과를 살펴보면, 사회단체 소속 전문가의 경우 가장 많은 수가 남학생/여학생 모두 만 17세(고2)에 성관계의 이유와 목적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고 추정하였다. 반면 학교 소속 전문가의 경우 남학생/여학생 모두 사회단체 소속 전문가의 추정보다 이른 나이인 만 15세(중3)면 성관계의 이유와 목적을 충분히 알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③ 성관계 결과에 대한 인지

표 III-7 남녀학생별 성관계 결과에 관한 성 지식을 충분히 갖추고 있을
아동·청소년의 연령 추정 분포

	남학생			여학생		
	빈도	퍼센트	누적 퍼센트	빈도	퍼센트	누적 퍼센트
만 12세(초6)	23	10.6	10.6	22	10.1	10.1
만 13세(중1)	31	14.2	24.8	40	18.3	28.4
만 14세(중2)	26	11.9	36.7	41	18.8	47.2
만 15세(중3)	43	19.7	56.4	48	22.0	69.3
만 16세(고1)	30	13.8	70.2	35	16.1	85.3
만 17세(고2)	65	29.8	100.0	32	14.7	100.0
합계	218	100.0		218	100.0	

성관계의 결과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아동·청소년의 연령 추정 결과는 [표 III-7]과 같다. 남학생의 경우는 만 17세(고2)(29.8%), 만 15세(중3)(19.7%), 만 13세(중1)(14.2%) 순으로 성관계 결과에 대한 성지식을 이해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여학생의 경우는 만 15세(중3)(22.0%), 만 14세(중2)(18.8%), 만 13세(중1)(18.3%) 순으로 추정되었다. 성별 연령 추정 결과를 살펴보면, 남학생의 경우 만 17세(고2)가, 여학생의 경우 만 15세(중3)가 성관계의 결과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연령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성관계의 결과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을 아동·청소년의 연령 추정 분포는 누적빈도(%)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종합할 수 있다[표 III-7]. 남학생의 경우 만 12세(초6) 이상은 10.6%, 만 13세(중1) 이상은 24.8%, 만 14세(중2) 이상은 36.7%, 만 15세(중3) 이상은 56.4%, 만 16세(고1) 이상은 70.2%의 전문가가 해당 연령의 아동·청소년이 성관계 결과를 인식하고 있을 것으

로 추정하였다. 여학생의 경우는 만 12세(초6) 이상은 10.1%, 만 13세(중1) 이상은 28.4%, 만 14세(중2) 이상은 47.2%, 만 15세(중3) 이상은 69.3%, 만 16세(고1) 이상은 85.3%의 전문가가 성관계 결과에 관한 성지식을 충분히 갖추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전반적으로 전문가들은 여학생과 남학생을 비슷한 연령 수준으로 해당 성관계 결과에 관한 성지식을 갖추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그림 III-6). 즉, 약 50% 이상의 전문가들은 남녀학생 모두 만 15세(중3) 이상이면 이와 관련된 성지식을 충분히 알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하지만, 약 75%의 전문가들은 여학생은 만 16세(고1) 이상이 관련 성지식을 알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였고, 남학생의 경우는 만 17세(고2) 이상은 되어야 관련 성지식을 알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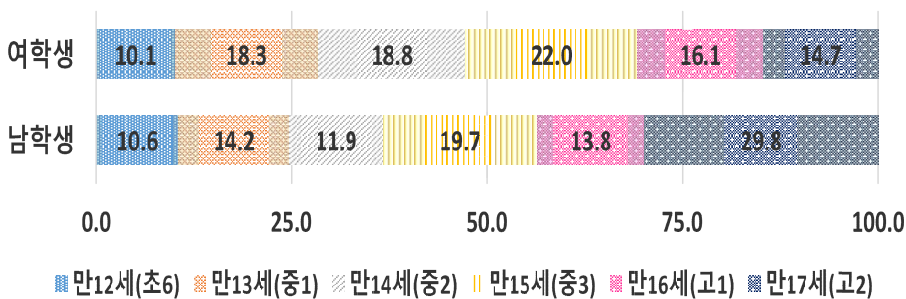


그림 III-6 남녀학생별 성관계 결과에 관한 성 지식을 충분히 갖추고 있을 아동·청소년의 연령 추정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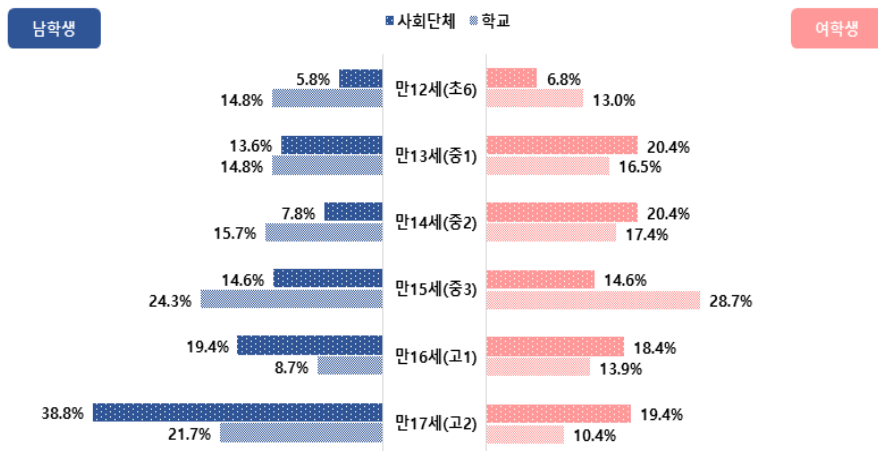


그림 III-7 전문가 소속별 성관계 결과에 관한 성 지식을 충분히 갖추고 있을
아동·청소년의 연령 추정

전문가 소속별로, 성관계의 결과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연령을 추정한 결과는 [그림 III-7]과 같다. 사회단체 소속 전문가는 남학생의 경우 만 17세(고2)(38.8%), 만 16세(고1)(19.4%), 만 15세(중3)(14.6%) 순으로, 여학생의 경우 만 13세(중1) 및 만 14세(중2)(20.4%), 만 17세(고2)(19.4%) 순으로 성관계 결과에 대한 성지식을 이해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반면 학교 소속 전문가는 남학생의 경우 만 15세(중3)(24.3%), 만 17세(고2)(21.7%), 만 14세(중2)(15.7%) 순으로, 여학생의 경우 만 15세(중3)(28.7%), 만 14세(중2)(17.4%), 만 13세(중1)(16.5%) 순으로 해당 연령을 추정하였다. 전문가 소속별 연령 추정 결과를 살펴보면, 사회단체 소속 전문가의 경우 가장 많은 수가 남학생은 만 17세(고2)에, 여학생은 만 13세(중1) 및 만 14세(중2)에 성관계 결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추정하였다. 반면 학교 소속 전문가의 경우 남학생/여학생 모두 만 15세(중3)를 해당 연령으로 추정한 응답이 가장 많았다.

④ 임신 가능 시기에 대한 지식

임신이 가능한 시기를 알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아동·청소년의 연령 추정 결과는 [표 Ⅲ-8]과 같다. 남학생의 경우는 만 17세(고2)(19.3%), 만 13세(중1)(17.9%), 만 14세(중2)(15.6%) 순으로 임신 가능 시기에 대한 성지식을 알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여학생의 경우는 만 14세(중2)(23.4%), 만 15세(중3)(21.6%), 만 13세(중1)(20.6%) 순으로 추정되었다. 성별 연령 추정 결과를 살펴보면, 남학생의 경우 만 15세(중3)가, 여학생의 경우 만 14세(중2)가 임신이 가능한 시기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연령으로 추정되었다.

표 Ⅲ-8 남녀학생별 임신 가능 시기에 관한 성 지식을 충분히 갖추고 있을 아동·청소년의 연령 추정 분포

	남학생			여학생		
	빈도	퍼센트	누적 퍼센트	빈도	퍼센트	누적 퍼센트
만 12세(초6)	25	11.5	11.5	32	14.7	14.7
만 13세(중1)	39	17.9	29.4	45	20.6	35.3
만 14세(중2)	34	15.6	45.0	51	23.4	58.7
만 15세(중3)	46	21.1	66.1	47	21.6	80.3
만 16세(고1)	32	14.7	80.7	18	8.3	88.5
만 17세(고2)	42	19.3	100.0	25	11.5	100.0
합계	218	100.0		218	100.0	

한편, 임신 가능시기에 관한 성지식을 충분히 알 수 있다고 여겨지는 아동·청소년의 연령 추정 분포는 누적빈도(%)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종합할 수 있다. 남학생의 경우 만 12세(초6) 이상은 11.5%, 만 13세(중1) 이상은 29.4%, 만 14세(중2) 이상은 45.0%, 만 15세(중3) 이상은 66.1%, 만 16세(고1) 이상은 80.7%의 전문가가 해당 연령의 아동·청소년이 관련 성지식을 충분히 알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와 비슷하게 여학생의 경우도 만 12세(초6) 이상은 14.7%, 만 13세

(중1) 이상은 35.3%, 만 14세(중2) 이상은 58.7%, 만 15세(중3) 이상은 80.3%, 만 16세(고1) 이상은 88.5%의 전문가들이 임신 가능 시기에 관한 충분한 성지식을 알고 있다고 추정하였다.

결과적으로 전문가들은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하여 임신이 가능한 시기에 관한 성지식을 더 일찍 갖추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그림 III-8]. 즉, 약 50% 이상의 전문가들은 여학생의 경우 만 14세(중2) 이상이면 임신이 가능한 시기에 관한 성지식을 충분히 갖추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였고, 남학생의 경우는 만 15세(중3) 이상은 되어야 해당 성지식을 알 것으로 추정하였다. 하지만 75%의 전문가들은 만 15세(중3) 이후의 여학생이 임신 가능시기에 관한 성지식을 갖추고 있음에 동의하였으나, 남학생의 경우는 만 16세(고1) 이후에나 관련 성지식을 제대로 알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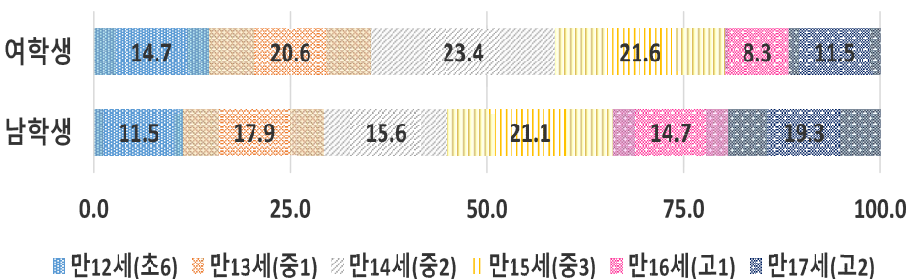


그림 III-8 남녀학생별 임신 가능 시기에 관한 성 지식을 충분히 갖추고 있을 아동·청소년의 연령 추정 분포

전문가 소속별로, 아동·청소년이 임신이 가능한 시기를 알고 있을 것 같은 연령을 추정한 결과는 [그림 III-9]와 같다. 사회단체 소속 전문가는 남학생의 경우 만 17세(고2)(27.2%), 만 15세(중3)(23.3%), 만 14세(중2)(16.5%) 순으로, 여학생의 경우 만 14세(중2)(24.3%), 만 13세(중1)(20.4%), 만 17세(고2)(17.5%) 순으로 임신 가능 시기에 대한 성지식을 이해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반면 학교

소속 전문가는 남학생의 경우 만 13세(중1)(20.0%), 만 15세(중3)(19.1%), 만 16세(고1)(18.3%) 순으로, 여학생의 경우 만 15세(중3)(26.1%), 만 14세(중2)(22.6%), 만 13세(중1)(20.9%) 순으로 해당 연령을 추정하였다. 전문가 소속별 연령 추정 결과를 살펴보면, 사회단체 소속 전문가의 경우 가장 많은 수가 남학생은 만 17세(고2), 여학생은 만 14세(중2)에 임신이 가능한 시기를 인지하고 있다고 추정하였다. 반면 학교 소속 전문가의 경우 해당 연령을 남학생은 만 13세(중1), 여학생은 만 15세(중3)로 추정한 응답이 가장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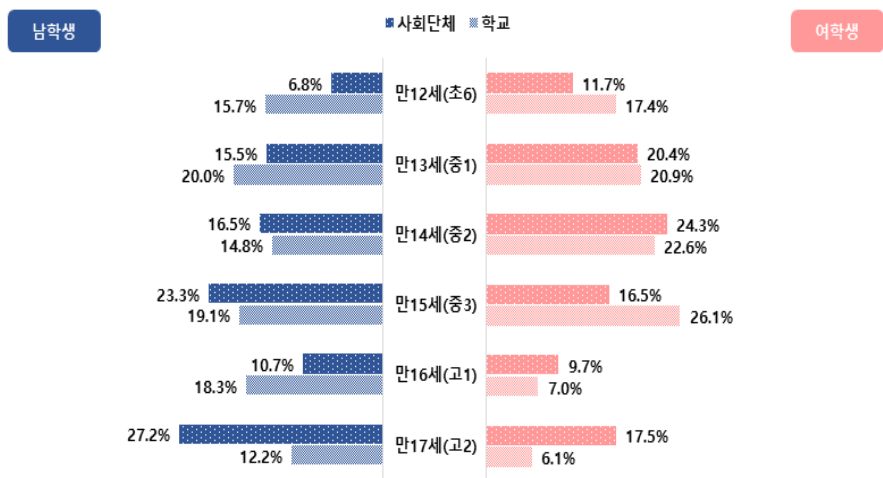


그림 III-9 전문가 소속별 임신 가능 시기에 관한 성 지식을 충분히 갖추고 있을 아동·청소년의 연령 추정

⑤ 성병 예방에 관한 지식

성병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실제로 자신의 경우에 적용할 수 있리라 추정되는 아동·청소년의 연령 추정 결과는 [표 III-9]와 같다. 남학생의 경우는 만 17세(고2)(41.3%), 만 16세(고1)(22.9%), 만 15세(중3)(17.4%) 순으로 성병 예방에 대한 성지식을 이해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여학생의 경우는 만 17세

(고2)(30.3%), 만 15세(중3)(22.0%), 만 16세(고1)(20.2%) 순으로 추정되었다. 성별 연령 추정 결과를 살펴보면, 평가에 참여한 전문가의 70% 이상이 성병 감염 예방법을 알고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연령을 만 15세(중3)에서 만 17세(고2)로 추정하였으며, 그중 해당 연령이 남학생/여학생 모두 만 17세(고2)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III-9 남녀학생별 성병 예방에 관한 성 지식을 충분히 갖추고 있을
아동·청소년의 연령 추정 분포

	남학생			여학생		
	빈도	퍼센트	누적 퍼센트	빈도	퍼센트	누적 퍼센트
만 12세(초6)	5	2.3	2.3	7	3.2	3.2
만 13세(중1)	15	6.9	9.2	21	9.6	12.8
만 14세(중2)	20	9.2	18.3	32	14.7	27.5
만 15세(중3)	38	17.4	35.8	48	22.0	49.5
만 16세(고1)	50	22.9	58.7	44	20.2	69.7
만 17세(고2)	90	41.3	100.0	66	30.3	100.0
합계	218	100.0		218	100.0	

한편, 성병예방에 관한 성 지식을 충분히 알고 자신의 일상에 적용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아동·청소년의 연령 추정 분포는 누적빈도(%)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종합할 수 있다[표 III-9]. 남학생의 경우 만 12세(초6) 이상은 2.3%, 만 13세(중1) 이상은 9.2%, 만 14세(중2) 이상은 18.3%, 만 15세(중3) 이상은 35.8%, 만 16세(고1) 이상은 58.7%의 전문가가 해당 연령의 아동·청소년이 성병예방에 관한 성지식을 충분히 알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여학생의 경우는 만 12세(초6) 이상은 3.2%, 만 13세(중1) 이상은 12.8%, 만 14세(중2) 이상은 27.5%, 만 15세(중3) 이상은 49.5%, 만 16세(고1) 이상은 69.7%의 전문가들이 성병 예방에 관한 충분한 성지식을 알고 있다고 추정하였다. 결론적으로, 성병예방과 관련

된 성지식을 알고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연령은 여학생과 남학생이 다르다[그림 III-10]. 즉, 50%보다 많은 전문가들이 16세(고2) 이후면 성병예방에 관한 성지식을 충분히 갖추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였고, 75% 이상의 전문가들이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17세(고2) 이상에서 관련 성지식을 충분히 알고 실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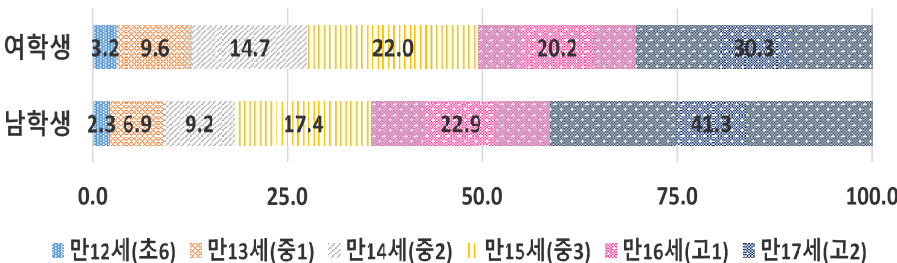


그림 III-10 남녀학생별 성병 예방에 관한 성 지식을 충분히 갖추고 있을
아동·청소년의 연령 추정 분포

전문가 소속별로, 성병예방과 관련된 성지식을 알고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연령을 추정한 결과는 [그림 III-11]과 같다. 사회단체 소속 전문가는 남학생의 경우 만 17세(고2)(52.4%), 만 16세(고1)(21.4%), 만 15세(중3)(14.6%) 순으로, 여학생의 경우 만 17세(고2)(37.9%), 만 15세(중3)(19.4%), 만 14세(중2) 및 만 16세(고1)(16.5%) 순으로 성병 예방에 대한 성지식을 이해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반면 학교 소속 전문가는 남학생의 경우 만 17세(고2)(31.3%), 만 16세(고1)(24.3%), 만 15세(중3)(20.0%) 순으로, 여학생의 경우 만 15세(중3)(24.3%), 만 16세(고1) 및 만 17세(고2)(23.5%) 순으로 해당 연령을 추정하였다. 전문가 소속별 연령 추정 결과를 살펴보면, 사회단체 소속 전문가의 경우 가장 많은 수가 남학생/여학생 모두 만 17세(고2)에 성병 예방에 관한 지식을 알고 실제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반면 학교 소속 전문가의 경우 남학생은 만 17세(고2)를, 여학생은 만 15세(중3)를 해당 연령으로 추정한 응답이 가장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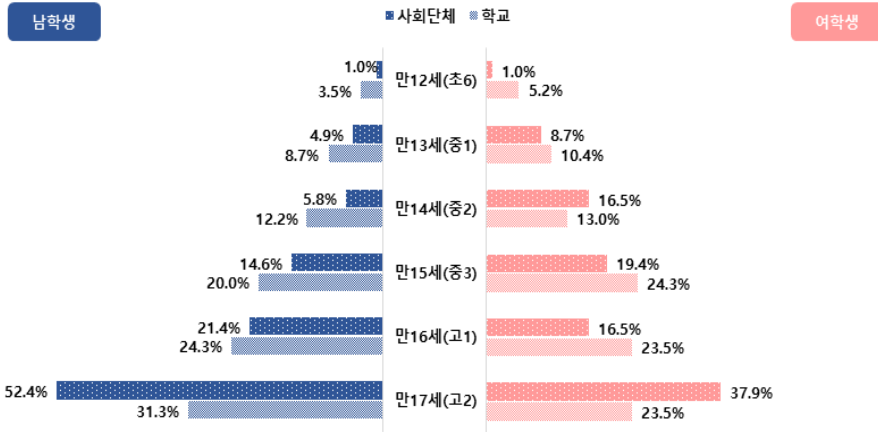


그림 III-11 전문가 소속별 성병 예방에 관한 성 지식을 충분히 갖추고 있을 아동·청소년의 연령 추정

⑥ 성병 감염 경로에 관한 지식

성병, 에이즈에 어떻게 감염이 되는지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아동·청소년의 연령 추정 결과는 [표 III-10]과 같다. 남학생의 경우는 만 17세(고2)(38.5%), 만 15세(중3)(20.2%), 만 16세(고1)(18.3%) 순으로 성병 감염 경로에 대한 성지식을 이해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여학생의 경우는 만 17세(고2)(26.1%), 만 15세(중3)(23.4%), 만 16세(고1)(18.8%) 순으로 추정되었다. 성별 연령 추정 결과를 살펴보면, 평가에 참여한 전문가의 68% 이상이 성병, 에이즈에 어떻게 감염이 되는지 인지할 수 있는 연령을 만 15세(중3)에서 만 17세(고2)로 추정하였으며, 그중 해당 연령이 남학생/여학생 모두 만 17세(고2)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III-10 남녀학생별 성병 감염 경로에 관한 지식을 충분히 갖추고 있을
아동·청소년의 연령 추정 분포

	남학생			여학생		
	빈도	퍼센트	누적 퍼센트	빈도	퍼센트	누적 퍼센트
만 12세(초6)	9	4.1	4.1	17	7.8	7.8
만 13세(중1)	17	7.8	11.9	23	10.6	18.3
만 14세(중2)	24	11.0	22.9	29	13.3	31.7
만 15세(중3)	44	20.2	43.1	51	23.4	55.0
만 16세(고1)	40	18.3	61.5	41	18.8	73.9
만 17세(고2)	84	38.5	100.0	57	26.1	100.0
합계	218	100.0		218	100.0	

한편, 성병 감염 경로에 관한 성 지식을 충분히 알 수 있다고 여겨지는 아동·청소년의 연령 추정 분포는 누적빈도(%)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표 III-10]. 남학생의 경우 만 12세(초6) 이상은 4.1%, 만 13세(중1) 이상은 11.9%, 만 14세(중2) 이상은 22.9%, 만 15세(중3) 이상은 43.1%, 만 16세(고1) 이상은 61.5%의 전문가가 해당 연령의 아동·청소년이 성병 감염 경로에 관한 성지식을 충분히 갖추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여학생의 경우는 만 12세(초6) 이상은 7.8%, 만 13세(중1) 이상은 18.3%, 만 14세(중2) 이상은 31.7%, 만 15세(중3) 이상은 55.0%, 만 16세(고1) 이상은 73.9%의 전문가가 성병 감염 경로에 관해 충분한 성지식을 알고 있다고 추정하였다. 결론적으로 전문가들은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이른 나이에 해당 성지식을 알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그림 III-12]. 즉, 50% 이상의 전문가들이 여학생은 만 15세(중3) 이후에, 남학생은 만 16세(고1) 이후에 성병 감염 경로에 관한 성지식을 충분히 알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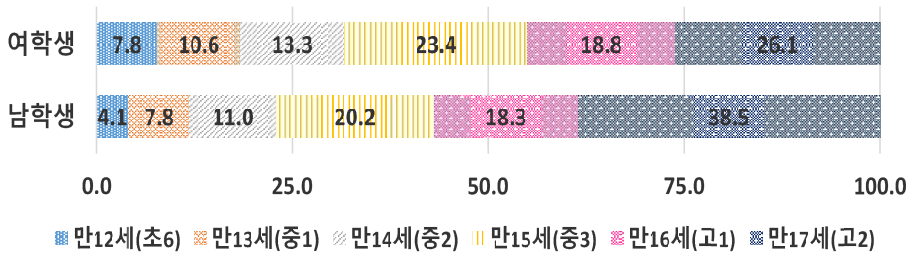


그림 III-12 남녀학생별 성병 감염 경로에 관한 성지식을 충분히 갖추고 있을 아동·청소년의 연령 추정

전문가 소속별로, 성병 감염 경로에 관한 성 지식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연령을 추정한 결과는 [그림 III-13]과 같다. 사회단체 소속 전문가는 남학생의 경우 만 17세(고2)(50.5%), 만 15세(중3)(16.5%), 만 16세(고1)(15.5%) 순으로, 여학생의 경우 만 17세(고2)(35.0%), 만 16세(고1)(21.4%), 만 15세(중3)(20.4%) 순으로 성병 감염 경로에 대한 성지식을 이해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반면 학교 소속 전문가는 남학생의 경우 만 17세(고2)(27.8%), 만 15세(중3)(23.5%), 만 16세(고1)(20.9%) 순으로, 여학생의 경우 만 15세(중3)(26.1%), 만 17세(고2)(18.3%), 만 14세(중2) 및 만 16세(고1)(16.5%) 순으로 해당 연령을 추정하였다. 전문가 소속별 연령 추정 결과를 살펴보면, 사회단체 소속 전문가의 경우 가장 많은 수가 남학생/여학생 모두 만 17세(고2)에 성병 감염 경로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을 것이라 추정하였다. 반면 학교 소속 전문가의 경우 남학생은 만 17세(고2)를, 여학생은 만 15세(중3)를 해당 연령으로 추정한 응답이 가장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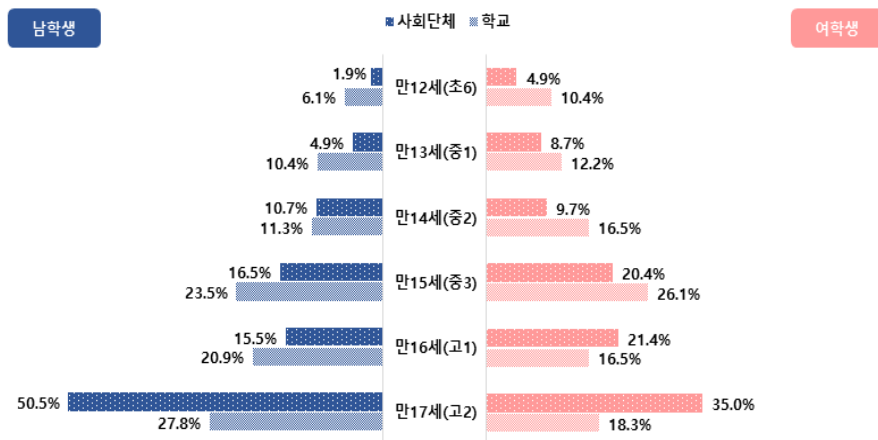


그림 III-13 전문가 소속별 성별 감염 경로에 관한 지식을 충분히 갖추고 있을
아동·청소년의 연령 추정

⑦ 피임 도구 사용방법에 관한 지식

피임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여러 종류의 피임 도구를 사용할 수 있으리라 추정되는 아동·청소년의 연령 추정 결과는 [표 III-11]과 같다. 남·여학생의 경우 모두 만 17세(고2), 만 16세(고1), 만 15세(중3) 순으로 피임 도구 사용 방법에 대한 성지식을 이해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남학생: 만 17세(고2) 42.2% > 만 16세(고1) 22.5% > 만 15세(중3) 17.9%, 여학생: 만 17세(고2) 42.2% > 만 16세(고1) 24.3% > 만 15세(중3) 15.1%). 성별 연령 추정 결과를 살펴보면, 평가에 참여한 전문가의 80% 이상이 피임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여러 종류의 피임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연령을 만 15세(중3)에서 만 17세(고2)로 추정하였으며, 그중 해당 연령이 남학생/여학생 모두 만 17세(고2)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Ⅲ-11 남녀학생별 피임 도구 사용 방법에 대한 지식을 충분히 갖추고 있을
아동·청소년의 연령 추정 분포

	남학생			여학생		
	빈도	퍼센트	누적 퍼센트	빈도	퍼센트	누적 퍼센트
만 12세(초6)	5	2.3	2.3	4	1.8	1.8
만 13세(중1)	9	4.1	6.4	9	4.1	6.0
만 14세(중2)	24	11.0	17.4	27	12.4	18.3
만 15세(중3)	39	17.9	35.3	33	15.1	33.5
만 16세(고1)	49	22.5	57.8	53	24.3	57.8
만 17세(고2)	92	42.2	100.0	92	42.2	100.0
합계	218	100.0		21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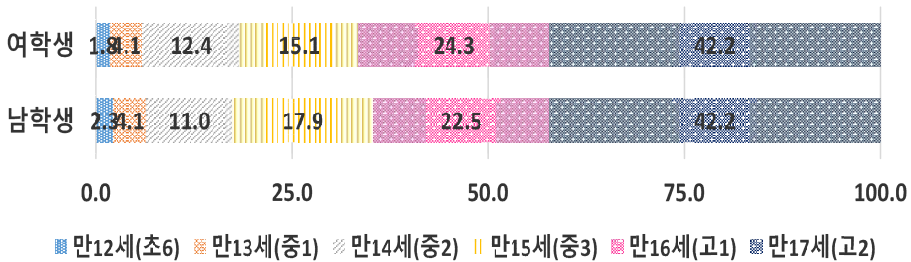


그림 Ⅲ-14 남녀학생별 피임 도구 사용 방법에 대한 성지식을 충분히 갖추고 있을
아동·청소년의 연령 추정

한편, 피임 도구 사용 방법에 대한 지식을 충분히 알 수 있다고 여겨지는 아동·청소년의 연령 추정 분포는 누적빈도(%)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종합할 수 있다[표 Ⅲ-11]. 남학생의 경우 만 12세(초6) 이상은 2.3%, 만 13세(중1) 이상은 6.4%, 만 14세(중2) 이상은 17.4%, 만 15세(중3) 이상은 35.5%, 만 16세(고1) 이상은 57.8%의 전문가가 해당 연령의 아동·청소년이 피임도구 사용방법에 대한 성지식을 충분히 알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와 비슷하게 여학생의 경우도 만 12세(초6) 이상은 1.8%, 만 13세(중1) 이상은 6.0%, 만 14세(중2) 이상은 18.3%,

만 15세(중3) 이상은 33.5%, 만 16세(고1) 이상은 57.8%의 전문가가 피임도구 사용방법에 대한 성지식을 충분히 갖추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결론적으로 피임도구 사용방법에 대한 성지식을 알고 있을 남녀학생의 연령은 비슷하게 추정되었다[그림 III-14]. 즉, 약 50% 이상의 전문가들이 만 16세(고1) 이후에 관련 성지식을 충분히 알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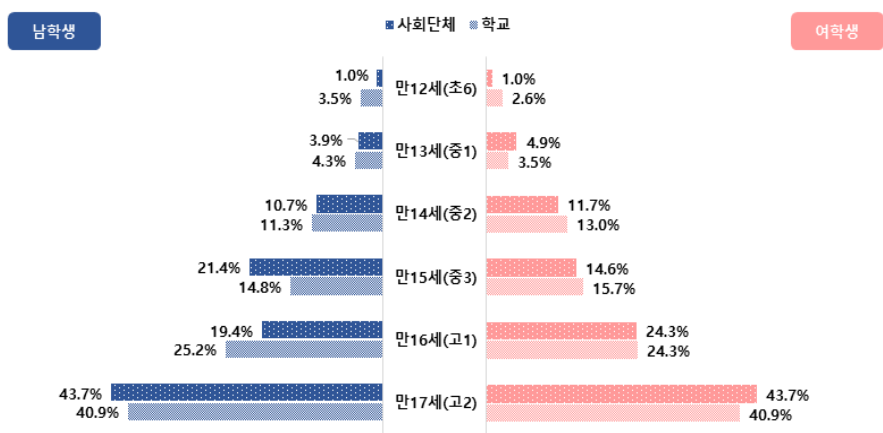


그림 III-15 전문가 소속별 피임 도구 사용 방법에 대한 성지식을 충분히 갖추고 있을 아동·청소년의 연령 추정

전문가 소속별로 아동·청소년의 연령을 추정한 결과는 [그림 III-15]와 같다. 사회단체 소속 전문가는 남학생의 경우 만 17세(고2)(43.7%), 만 15세(중3)(21.4%), 만 16세(고1)(19.4%) 순으로, 여학생의 경우 만 17세(고2)(43.7%), 만 16세(고1)(24.3%), 만 15세(중3)(14.6%) 순으로 피임 도구 사용 방법에 대한 성지식을 이해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반면 학교 소속 전문가는 남학생의 경우 만 17세(고2)(40.9%), 만 16세(고1)(25.2%), 만 15세(중3)(14.8%) 순으로, 여학생의 경우 만 17세(고2)(40.9%), 만 16세(고1)(24.3%), 만 15세(중3)(15.7%) 순

으로 해당 연령을 추정하였다. 전문가 소속별 연령 추정 결과를 살펴보면, 사회단체 소속 전문가와 학교 소속 전문가 모두 남학생/여학생이 만 17세(고2)에 여러 종류의 피임 도구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⑧ 소결

아동·청소년의 성지식에 대한 전문가들의 연령 추정은 다양하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전문가들이 추정한 연령 분포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린 누적 분포 히스토그램은 [그림 III-16]과 같다. 이를 기초로 하여 대략 50%의 전문가들이 추정하고 있는 연령대를 살펴보면, 성지식을 충분히 알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남학생의 연령이 여학생의 연령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조금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이른 나이에 해당 지식을 알고 실제 생활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다시 말해서, 남학생의 경우는 대체로 만 15세(중3)에서 만 16세(고1) 이상으로 추정하였고, 여학생의 경우는 만 14세(중2)에서 만 15세(중3) 이상으로 추정하였다.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생식기, 성관계, 임신 등의 성지식([그림 III-16]의 Q1~Q4)은 남녀학생 모두에 대하여 만 14세(중2)에서 만 15세(중3) 이상이면 충분히 알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반면에, 성병이나 피임 도구 사용방법 관련 성지식은 남학생의 경우는 모두 동일한 만 16세(고1) 이후에 충분히 알고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였고, 여학생의 경우는 만 15세(중3)에서 만 16세(고1) 이후에나 관련 성지식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주목할 만한 것은 남학생의 경우는 성병이나 피임 도구에 대한 지식을 여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늦은 나이가 되어야 제대로 알고 자신들의 생활에 적용할 것이라고 추정하였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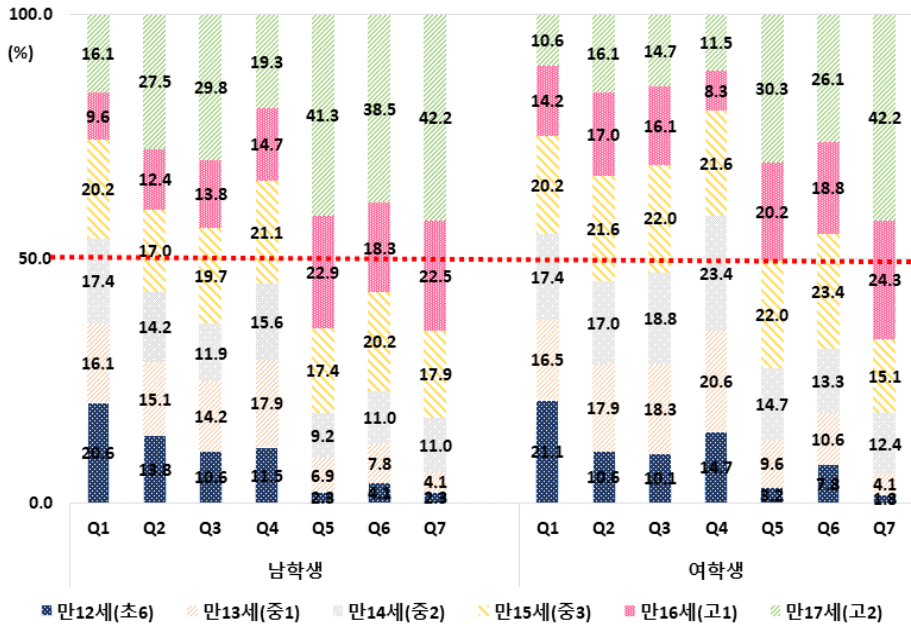


그림 III-16 아동·청소년의 성지식 인식이 가능한 연령 추정 분포

Note. Q1 생식기능과 관련된 우리 몸 기능에 대한 이해, Q2 성관계 이유와 목적에 대한 인지, Q3 성관계 결과에 대한 인지, Q4 임신 가능 시기에 대한 지식, Q5 성병 예방에 관한 지식, Q6 성병 감염 경로에 관한 지식, Q7 피임 도구 사용방법에 관한 지식

(2)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① 성관계에 대한 합의

남녀 사이의 성관계는 두 사람이 합의한 후에 가능하다는 태도를 보일 수 있는 아동·청소년의 연령 추정 결과는 [표 III-12]와 같다. 남학생의 경우는 만 17세(고2)(23.4%), 만 15세(중3)(18.3%), 만 14세(중2)(17.4%) 순으로 성관계가 합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지가 가능한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여학생의 경우는 만 13세(중1)와 만 15세(중3)(21.1%), 만 14세(중2)(17.0%) 순으로 추정되었다.

표 III-12 남녀학생별 성관계가 합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지가 충분히 가능한 아동·청소년의 연령 추정 분포

	남학생			여학생		
	빈도	퍼센트	누적 퍼센트	빈도	퍼센트	누적 퍼센트
만 12세(초6)	32	14.7	14.7	32	14.7	14.7
만 13세(중1)	33	15.1	29.8	46	21.1	35.8
만 14세(중2)	38	17.4	47.2	37	17.0	52.8
만 15세(중3)	40	18.3	65.6	46	21.1	73.9
만 16세(고1)	24	11.0	76.6	26	11.9	85.8
만 17세(고2)	51	23.4	100.0	31	14.2	100.0
합계	218	100.0		218	100.0	

한편, 성관계가 합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태도를 보일 수 있는 아동·청소년의 연령 추정 분포를 누적빈도(%)로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표 III-12]. 남학생의 경우 만 12세(초6) 이상은 14.7%, 만 13세(중1) 이상은 29.8%, 만 14세(중2) 이상은 47.2%, 만 15세(중3) 이상은 65.6%, 만 16세(고1) 이상은 76.6%의 전문가가 해당 연령의 아동·청소년이 성관계는 합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인식할 수 있다고 추정하였다. 이와 비슷하게 여학생의 경우도 만 12세(초6) 이상은 14.7%, 만 13세(중1) 이상은 35.8%, 만 14세(중2) 이상은 52.8%, 만 15세(중3) 이상은 73.9%, 만 16세(고1) 이상은 85.8%의 전문가가 성관계가 합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태도를 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결과적으로 성관계가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는 연령은 큰 차이가 없었다[그림 III-17]. 즉, 남학생의 경우는 약 50% 이상의 전문가들이 만 15세(중3) 이후에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한 인식이 충분할 것으로 추정하였고, 여학생의 경우는 만 14세(중2) 이후면 가능할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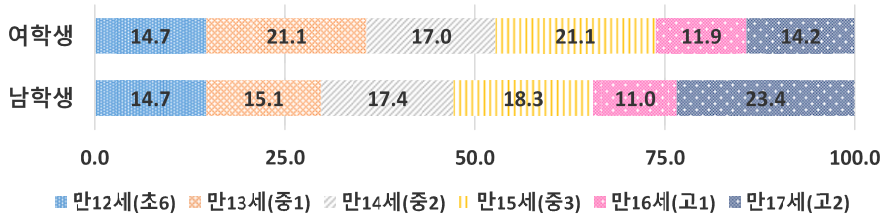


그림 III-17 남녀학생별 성관계가 합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지가 충분히 가능한 아동·청소년의 연령 추정

전문가 소속별로, 성관계는 두 사람이 합의한 후에 가능하다는 태도를 보일 수 있는 연령을 추정한 결과를 살펴보면 [그림 III-18]과 같다. 사회단체 소속 전문가의 남학생의 경우 만 17세(고2)(27.2%), 만 14세(중2)(25.2%), 만 13세(중1)(15.5%) 순으로, 여학생의 경우 만 13세(중1)(22.3%), 만 15세(중3)(20.4%), 만 17세(고2)(19.4%) 순으로 성관계가 합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반면 학교 소속 전문가는 남학생의 경우 만 15세(중3)(27.0%), 만 17세(고2)(20.0%), 만 12세(초6) 및 만 13세(중1)(14.8%) 순으로, 여학생의 경우 만 15세(중3)(21.7%), 만 13세(중1) 및 만 14세(중2)(20.0%) 순으로 해당 연령을 추정하였다. 전문가 소속별 연령 추정 결과를 살펴보면, 사회단체 소속 전문가의 경우 가장 많은 수가 남학생은 만 17세(고2)에, 여학생은 만 13세(중1)에 남녀의 성관계는 두 사람이 합의한 후에 가능하다는 태도를 보일 것으로 추정하였다. 반면 학교 소속 전문가의 경우 남학생/여학생 모두 만 15세(중3)를 해당 연령으로 추정한 응답이 가장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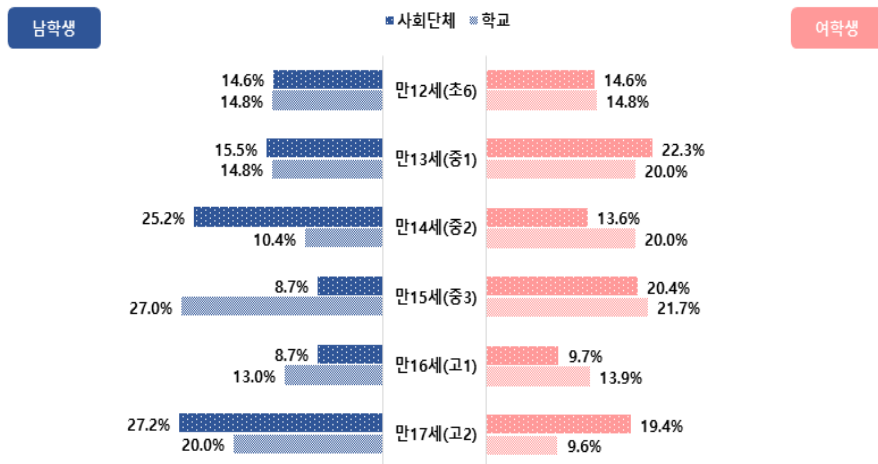


그림 III-18 전문가 소속별 성관계가 합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지가 충분히 가능한 아동·청소년의 연령 추정 분포

② 자신이 임신할(시킬) 가능성에 노출

자신이 성관계를 하면 임신을 할(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아동·청소년의 연령은 [표 III-13]과 같다. 남학생의 경우는 만 13세(중1)(24.8%), 만 14세(중2)(20.2%), 만 15세(중3)(17.9%) 순으로 자신이 임신할(시킬)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인지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여학생의 경우는 만 13세(중1)(26.1%), 만 12세(초6)(21.6%), 만 15세(중3)(19.3%) 순으로 추정되었다. 성별 연령 추정 결과를 살펴보면, 평가에 참여한 전문가의 80% 이상이 성관계를 하면 임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연령을 만 12세(초6)에서 만 15세(중3)로 추정하였으며, 그중 해당 연령이 남학생/여학생 모두 만 13세(중1)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III-13 남녀학생별 자신이 임신할(시킬)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인지가 충분히 가능한 아동·청소년의 연령 추정 분포

	남학생			여학생		
	빈도	퍼센트	누적 퍼센트	빈도	퍼센트	누적 퍼센트
만 12세(초6)	36	16.5	16.5	47	21.6	21.6
만 13세(중1)	54	24.8	41.3	57	26.1	47.7
만 14세(중2)	44	20.2	61.5	40	18.3	66.1
만 15세(중3)	39	17.9	79.4	42	19.3	85.3
만 16세(고1)	19	8.7	88.1	12	5.5	90.8
만 17세(고2)	26	11.9	100.0	20	9.2	100.0
합계	218	100.0		218	100.0	

한편, 자신도 성관계를 하면 임신을 할(시킬) 수 있다고 인식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의 연령 추정 분포를 누적빈도(%)로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표 III-13]. 남학생의 경우 만 12세(초6) 이상은 16.5%, 만 13세(중1) 이상은 41.3%, 만 14세(중2) 이상은 61.5%, 만 15세(중3) 이상은 79.4%, 만 16세(고1) 이상은 88.1%의 전문가가 해당 연령의 아동·청소년이 자신도 성관계를 하면 임신을 할(시킬) 수 있다는 인식이 가능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와 비슷하게 여학생의 경우도 만 12세(초6) 이상은 21.6%, 만 13세(중1) 이상은 47.7%, 만 14세(중2) 이상은 66.1%, 만 15세(중3) 이상은 85.3%, 만 16세(고1) 이상은 90.8%의 전문가가 해당 연령의 아동·청소년이 자신도 성관계를 하면 임신을 할(시킬) 수 있다고 인식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결과적으로 자신이 성관계를 하면 임신을 할(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이 가능한 연령은 남녀학생이 비슷하게 추정되었다. 즉, 50% 이상의 전문가들이 남녀학생 모두 만 14세(중2) 이상이면 자신도 성관계를 하면 임신을 할(시킬) 수 있다고 추정하였고, 75% 이상의 전문가들은 만 15세(중3) 이상이면 이와 같은 인식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사실에 동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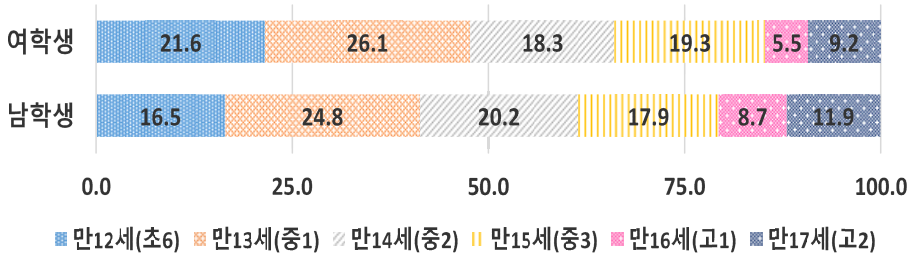


그림 III-19 남녀학생별 자신이 임신할(시킬)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인지가 충분히 가능한 아동·청소년의 연령 추정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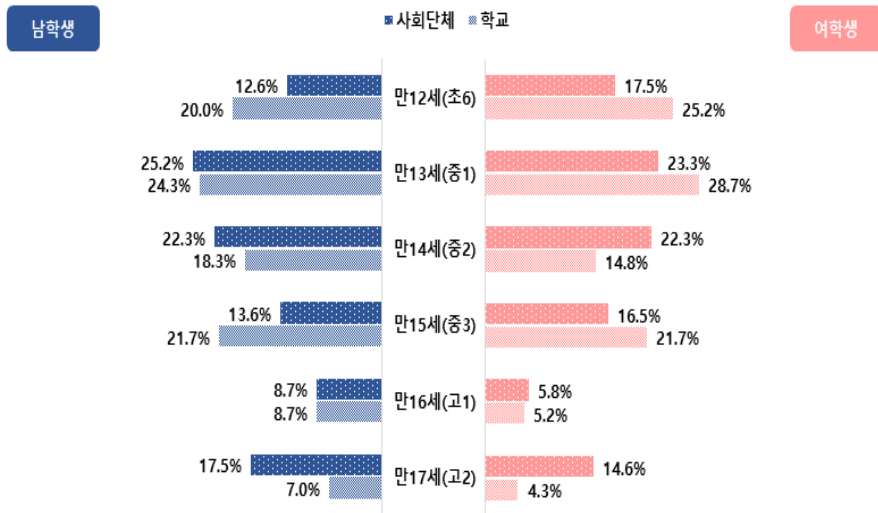


그림 III-20 전문가 소속별 자신이 임신할(시킬)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인지가 충분히 가능한 아동·청소년의 연령 추정

전문가 소속별로 아동·청소년의 연령을 추정한 결과는 [그림 III-20]와 같다. 사회단체 소속 전문가는 남학생의 경우 만 13세(중1)(25.2%), 만 14세(중2)(22.3%), 만 17세(고2)(17.5%) 순으로, 여학생의 경우 만 13세(중1)(23.3%), 만 14세(중2)(22.3%), 만 12세(초6)(17.5%) 순으로 자신이 임신할(시킬) 수 있다

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반면 학교 소속 전문가는 남학생의 경우 만 13세(중1)(24.3%), 만 15세(중3)(21.7%), 만 12세(초6)(20.0%) 순으로, 여학생의 경우 만 13세(중1)(28.7%), 만 12세(초6)(25.2%), 만 15세(중3)(21.7%) 순으로 해당 연령을 추정하였다. 전문가 소속별 연령 추정 결과를 살펴보면, 사회단체 소속 전문가와 학교 소속 전문가 모두 남학생/여학생이 만 13세(중1)에 성관계로 인한 임신 가능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③ 자신의 성병 감염 노출 가능성 인지

표 III-14 남녀학생별 자신이 성병에 감염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인지가 가능한 아동·청소년의 연령 추정 분포

	남학생			여학생		
	빈도	퍼센트	누적 퍼센트	빈도	퍼센트	누적 퍼센트
만 12세(초6)	17	7.8	7.8	22	10.1	10.1
만 13세(중1)	30	13.8	21.6	40	18.3	28.4
만 14세(중2)	41	18.8	40.4	41	18.8	47.2
만 15세(중3)	42	19.3	59.6	48	22.0	69.3
만 16세(고1)	36	16.5	76.1	35	16.1	85.3
만 17세(고2)	52	23.9	100.0	32	14.7	100.0
합계	218	100.0		218	100.0	

성관계를 하면 자신도 성병에 걸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으리라 추정되는 아동·청소년의 연령 추정 결과는 [표 III-14]와 같다. 남학생의 경우는 만 17세(고2)(23.9%), 만 15세(중3)(19.3%), 만 14세(중2)(18.8%) 순으로 자신이 성병에 감염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인지가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여학생의 경우는 만 15세(중3)(22.0%), 만 14세(중2)(18.8%), 만 13세(중1)(18.3%) 순으로 추정되었다. 성별 연령 추정 결과를 살펴보면, 성관계를 하면 자신도 성병에

결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연령에 대해 남학생의 경우 만 17세(고2)라는 응답이, 여학생의 경우 만 15세(중3)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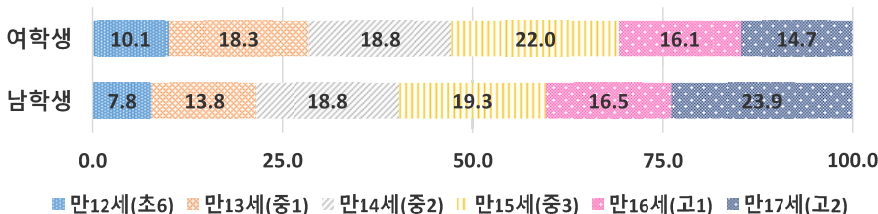


그림 III-21 남녀학생별 자신이 성병에 감염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인지가 충분히 가능한 아동·청소년의 연령 추정 분포

한편, 자신도 성관계를 하면 성병에 감염될 수 있다고 인식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의 연령 추정 분포를 누적빈도(%)로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표 III-14]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남학생의 경우 만 12세(초6) 이상은 7.8%, 만 13세(중1) 이상은 21.6%, 만 14세(중2) 이상은 40.4%, 만 15세(중3) 이상은 59.6%, 만 16세(고1) 이상은 76.1%의 전문가가 해당 연령의 아동·청소년이 자신도 성관계를 하면 성병에 감염될 수 있다는 인식이 가능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여학생의 경우도 만 12세(초6) 이상은 10.1%, 만 13세(중1) 이상은 28.4%, 만 14세(중2) 이상은 47.2%, 만 15세(중3) 이상은 69.3%, 만 16세(고1) 이상은 85.3%의 전문가가 해당 연령의 아동·청소년이 자신도 성관계를 하면 성병에 감염될 수 있다는 인식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하여 조금 이른 나이에 자신도 성관계를 하면 성병에 감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지만 그 차이가 크지는 않았다[그림 III-21]. 즉, 약 50%의 전문가들은 남녀학생 모두 만 15세(중3) 이후면 성병에 감염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였고, 또 75% 이상의 전문가들은 남녀학생 모두 만 16세(고1) 이상이면 이와 같은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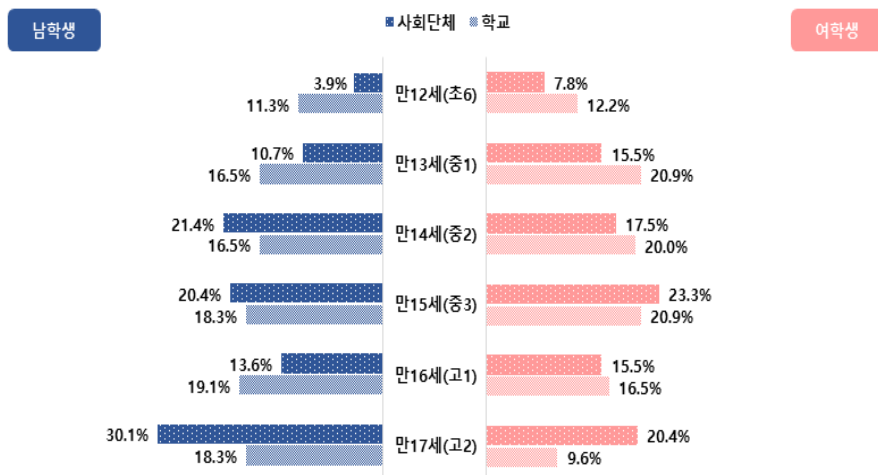


그림 III-22 전문가 소속별 자신이 성병에 감염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인지가 충분히 가능한 아동·청소년의 연령 추정

전문가 소속별로, 자신도 성병에 감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의 연령을 추정한 결과는 [그림 III-22]와 같다. 사회단체 소속 전문가는 남학생의 경우 만 17세(고2)(30.1%), 만 14세(중2)(21.4%), 만 15세(중3)(20.4%) 순으로, 여학생의 경우 만 15세(중3)(23.3%), 만 17세(고2)(20.4%), 만 14세(중2)(17.5%) 순으로 자신이 성병에 감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라 추정하였다. 반면 학교 소속 전문가는 남학생의 경우 만 16세(고1)(19.1%), 만 15세(중3) 및 만 17세(고2)(18.3%) 순으로, 여학생의 경우 만 13세(중1) 및 만 15세(중3)(20.9%), 만 14세(중2)(20.0%) 순으로 해당 연령을 추정하였다. 전문가 소속별 연령 추정 결과를 살펴보면, 사회단체 소속 전문가의 경우 가장 많은 수가 남학생은 만 17세(고2)에, 여학생은 만 15세(중3)에 성관계를 하면 성병에 걸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반면 학교 소속 전문가의 경우 남학생은 만 16세(고1)에, 여학생은 만 13세(중1) 및 만

15세(중3)에는 성관계로 인한 성병 감염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다고 추정하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④ 성관계의 책임소재

표 III-15 남녀학생별 성관계 관련 책임에 대한 인지가 충분히 가능한
아동·청소년의 연령 추정 분포

	남학생			여학생		
	빈도	퍼센트	누적 퍼센트	빈도	퍼센트	누적 퍼센트
만 12세(초6)	18	8.3	8.3	27	12.4	12.4
만 13세(중1)	29	13.3	21.6	47	21.6	33.9
만 14세(중2)	27	12.4	33.9	39	17.9	51.8
만 15세(중3)	38	17.4	51.4	40	18.3	70.2
만 16세(고1)	44	20.2	71.6	34	15.6	85.8
만 17세(고2)	62	28.4	100.0	31	14.2	100.0
합계	218	100.0		218	100.0	

남녀 간 성관계는 책임이 따르는 행위임을 알고 있으리라 추정되는 아동·청소년의 연령 추정 결과는 [표 III-15]와 같다. 남학생의 경우는 만 17세(고2)(28.4%), 만 16세(고1)(20.2%), 만 15세(중3)(17.4%) 순으로 성관계 관련 책임에 대한 인지가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여학생의 경우는 만 13세(중1)(21.6%), 만 15세(중3)(18.3%), 만 14세(중2)(17.9%) 순으로 추정되었다. 성별 연령 추정 결과를 살펴보면, 성관계는 책임이 따르는 행위임을 인지하고 있는 연령에 대해 남학생의 경우 만 17세(고2)라는 응답이, 여학생의 경우 만 13세(중1)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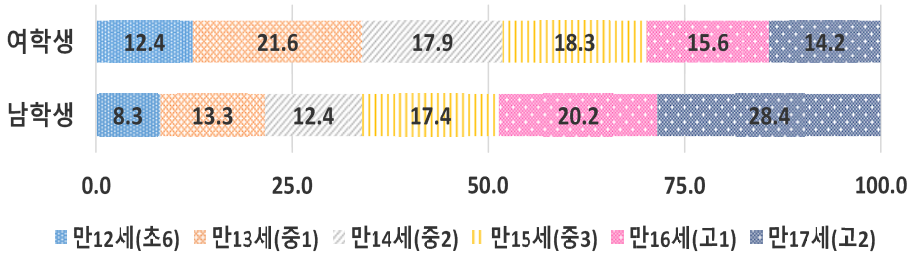


그림 III-23 남녀학생별 성관계 관련 책임에 대한 인지가 충분히 가능한
아동·청소년의 연령 추정 분포

한편, 남녀의 성관계는 책임이 따르는 행위라는 인식을 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의 연령 추정 분포를 누적빈도(%)로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표 III-15]에서 나타내는 것과 같이, 남학생의 경우 만 12세(초6) 이상은 8.3%, 만 13세(중1) 이상은 21.6%, 만 14세(중2) 이상은 33.9%, 만 15세(중3) 이상은 51.4%, 만 16세(고1) 이상은 76.1%의 전문가가 해당 연령의 아동·청소년이 성관계는 책임이 따르는 행위임을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여학생의 경우도 만 12세(초6) 이상은 12.4%, 만 13세(중1) 이상은 33.9%, 만 14세(중2) 이상은 51.8%, 만 15세(중3) 이상은 70.2%, 만 16세(고1) 이상은 85.8%의 전문가가 해당 연령의 아동·청소년이 성관계는 책임이 따르는 행위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결과적으로 전문가들은 여학생들이 남학생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이른 나이에 성관계는 책임이 따르는 행위라고 인식할 것으로 추정하였다[그림 III-23]. 즉, 50%의 전문가들은 여학생은 만 14세(중2) 이후면, 남학생의 경우는 만 15세(중3) 이후면 남녀의 성관계는 책임이 따르는 행위임을 인식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또, 75%의 전문가들은 여학생은 만 16세(고1) 이후에, 남학생은 만 17세(고2) 이후에 이와 같은 인식이 가능할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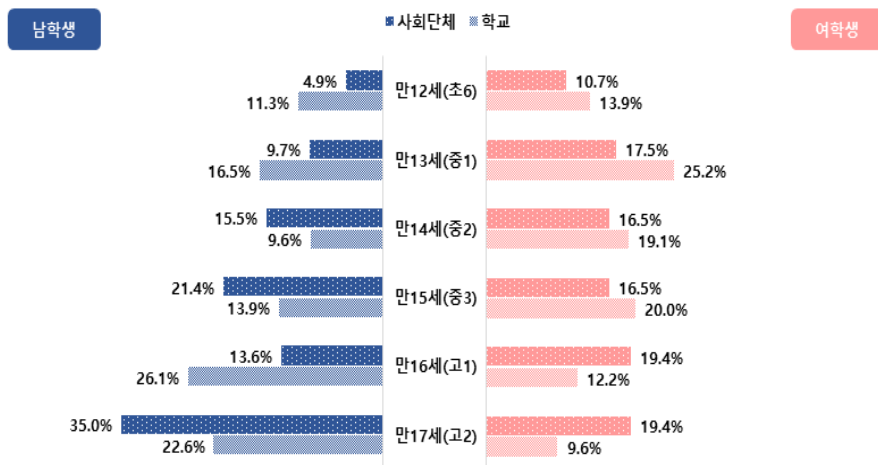


그림 III-24 전문가 소속별 성관계 관련 책임에 대한 인지가 충분히 가능한 아동·청소년의 연령 추정 분포

전문가 소속별로 아동·청소년의 연령을 추정한 결과는 [그림 III-24]와 같다. 사회단체 소속 전문가는 남학생의 경우 만 17세(고2)(35.0%), 만 15세(중3)(21.4%), 만 14세(중2)(15.5%) 순으로, 여학생의 경우 만 16세(고1) 및 만 17세(고2)(19.4%), 만 13세(중1)(17.5%) 순으로 성관계 관련 책임에 대한 인지가 가능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반면 학교 소속 전문가는 남학생의 경우 만 16세(고1)(26.1%), 만 17세(고2)(22.6%), 만 13세(중1)(16.5%) 순으로, 여학생의 경우 만 13세(중1)(25.2%), 만 15세(중3)(20.0%), 만 14세(중2)(19.1%) 순으로 해당 연령을 추정하였다. 전문가 소속별 연령 추정 결과를 살펴보면, 사회단체 소속 전문가의 경우 가장 많은 수가 남학생은 만 17세(고2)에, 여학생은 만 16세(고1) 및 만 17세(고2)에 성관계는 책임이 따르는 행위임을 인지한다고 추정하였다. 반면 학교 소속 전문가의 경우 남학생은 만 16세(고1), 여학생은 만 13세(중1)면 성관계에 대한 책임을 인지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⑤ 성적 욕구에 대한 표현

표 III-16 남녀학생별 성적 욕구에 대한 표현이 충분히 가능한 아동·청소년의 연령 추정 분포

	남학생			여학생		
	빈도	퍼센트	누적 퍼센트	빈도	퍼센트	누적 퍼센트
만 12세(초6)	23	10.6	10.6	15	6.9	6.9
만 13세(중1)	33	15.1	25.7	20	9.2	16.1
만 14세(중2)	33	15.1	40.8	14	6.4	22.5
만 15세(중3)	35	16.1	56.9	29	13.3	35.8
만 16세(고1)	32	14.7	71.6	45	20.6	56.4
만 17세(고2)	62	28.4	100.0	95	43.6	100.0
합계	218	100.0		218	100.0	

자신의 성적인 욕구를 표현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으로 추정되는 아동·청소년의 연령 추정 결과는 [표 III-16]과 같다. 남학생의 경우는 만 17세(고2)(28.4%), 만 15세(중3)(16.1%), 만 13세(중1) 및 만 14세(중2)(15.1%) 순으로 성적 욕구에 대한 표현이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여학생의 경우는 만 17세(고2)(43.6%), 만 16세(고1)(20.6%), 만 15세(중3)(13.3%) 순으로 추정되었다. 성별 연령 추정 결과를 살펴보면, 자신의 성적 욕구를 표현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연령에 대해 남/여학생 모두 만 17세(고2)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를 종합하여 자신의 성적 욕구를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의 연령 추정 분포를 누적빈도(%)로 확인하였다. [표 III-15]에서 나타내는 것과 같이 전문가들은 남학생의 경우 만 12세(초6) 이상은 10.6%, 만 13세(중1) 이상은 25.7%, 만 14세(중2) 이상은 40.8%, 만 15세(중3) 이상은 56.9%, 만 16세(고1) 이상은 71.6%의 전문가가 해당 연령의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에 반하여 여학생의 경우는 만 12세(초6) 이상은 6.9%, 만 13세(중1) 이상은 16.1%, 만 14세(중2) 이상은

22.5%, 만 15세(중3) 이상은 35.8%, 만 16세(고1) 이상은 56.4%의 전문가가 해당 연령의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결과적으로 전문가들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이른 나이에 성적 욕구에 대한 표현이 자연스러울 것으로 추정하였다[그림 III-25]. 즉, 50%의 전문가들은 남학생의 경우는 만 15세(중3) 이후면, 여학생의 경우는 만 16세(고1) 이후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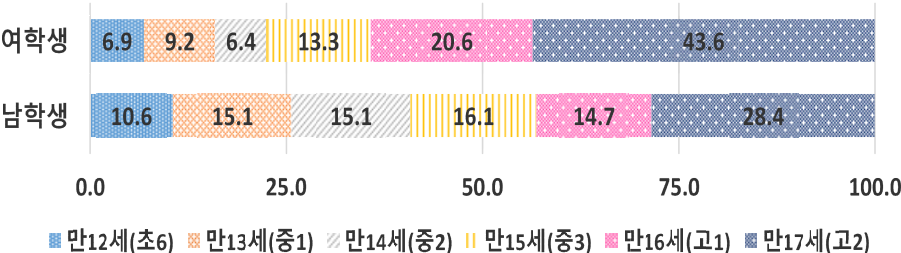


그림 III-25 남녀학생별 성적 욕구에 대한 표현이 충분히 가능한 아동·청소년의 연령 추정 분포

전문가 소속별로, 자신의 성적 욕구에 대해 표현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의 연령을 추정한 결과는 [그림 III-26]과 같다. 사회단체 소속 전문가는 남학생의 경우 만 17세(고2)(29.1%), 만 14세(중2)(20.4%), 만 13세(중1)(17.5%) 순으로, 여학생의 경우 만 17세(고2)(47.6%), 만 16세(고1)(20.4%), 만 15세(중3)(12.6%) 순으로 성적 욕구에 대한 표현이 가능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반면 학교 소속 전문가는 남학생의 경우 만 17세(고2)(27.8%), 만 15세(중3) 및 만 16세(고1)(18.3%) 순으로, 여학생의 경우 만 17세(고2)(40.0%), 만 16세(고1)(20.9%), 만 15세(중3)(13.9%) 순으로 해당 연령을 추정하였다. 전문가 소속별 연령 추정 결과를 살펴보면, 사회단체 소속 전문가와 학교 소속 전문가 모두 남학생/여학생이 만 17세(고2)에 자신의 성적 욕구를 자연스럽게 표현할 것으로 추정하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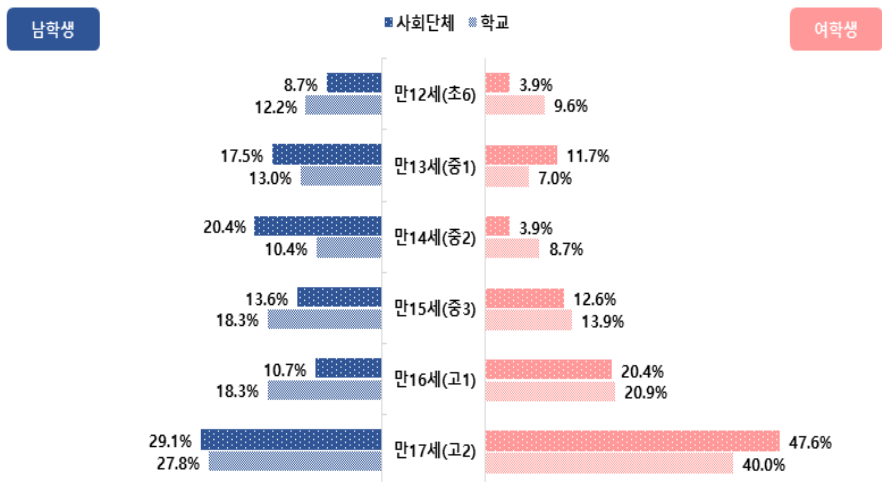


그림 III-26 전문가 소속별 성적 욕구에 대한 표현이 충분히 가능한
아동·청소년의 연령 추정 분포

⑥ 성적 행동에 대한 다양한 감정의 영향에 대한 인지

성적 행동에 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감정들이 자신에게 있음을 알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아동·청소년의 연령 추정 결과는 [표 III-17]과 같다. 남학생의 경우는 만 15세(중3)(25.2%), 만 17세(고2)(21.6%), 만 16세(고1)(20.6%) 순으로 성적 행동에 대한 의사 결정 시 다양한 감정이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인지가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여학생의 경우는 만 15세(중3)(24.3%), 만 14세(중2)(21.1%), 만 17세(고2)(17.0%) 순으로 추정되었다. 성별 연령 추정 결과를 살펴보면, 성적 행동에 대한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감정들이 자신에게 있음을 알고 있는 연령에 대해 남학생/여학생 모두 만 15세(중3)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Ⅲ-17 남녀학생별 성적 행동에 대한 의사 결정 시 다양한 감정이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의 연령 추정 분포

	남학생			여학생		
	빈도	퍼센트	누적 퍼센트	빈도	퍼센트	누적 퍼센트
만 12세(초6)	18	8.3	8.3	19	8.7	8.7
만 13세(중1)	27	12.4	20.6	28	12.8	21.6
만 14세(중2)	26	11.9	32.6	46	21.1	42.7
만 15세(중3)	55	25.2	57.8	53	24.3	67.0
만 16세(고1)	45	20.6	78.4	35	16.1	83.0
만 17세(고2)	47	21.6	100.0	37	17.0	100.0
합계	218	100.0		218	100.0	

한편, 자신의 성적 행동에 대한 의사결정에 다양한 감정이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아동·청소년의 연령 추정 분포를 누적빈도(%)로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표 Ⅲ-17]에서 나타내는 것과 같이 남학생의 경우 만 12세(초6) 이상은 8.3%, 만 13세(중1) 이상은 20.6%, 만 14세(중2) 이상은 32.6%, 만 15세(중3) 이상은 57.8%, 만 16세(고1) 이상은 78.4%의 전문가가 해당 연령의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성적 행동에 대한 의사결정에 다양한 감정이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인지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여학생의 경우는 만 12세(초6) 이상은 8.7%, 만 13세(중1) 이상은 21.6%, 만 14세(중2) 이상은 42.7%, 만 15세(중3) 이상은 67.0%, 만 16세(고1) 이상은 83.0%의 전문가가 해당 연령의 아동·청소년이 성적 행동에 대한 의사결정에 다양한 감정이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인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결론적으로, 전문가들은 남녀학생이 비슷한 연령대에 성행동에 대한 의사결정에는 다양한 감정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즉, 약 50%의 전문가들은 남녀학생 모두 만 15세(중3) 이후에는 성적 행동에 대한 의사결정 시 다양한 감정이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인지할 수 있다고 추정하였다. 또 약 75%의 전문가들은 만 16세(고1) 이상의

청소년이면 이와 같은 사실 인식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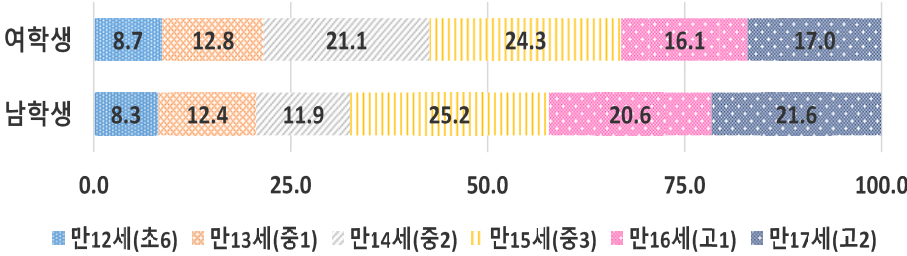


그림 Ⅲ-27 남녀학생별 성적 행동에 대한 의사 결정 시 다양한 감정이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의 연령 추정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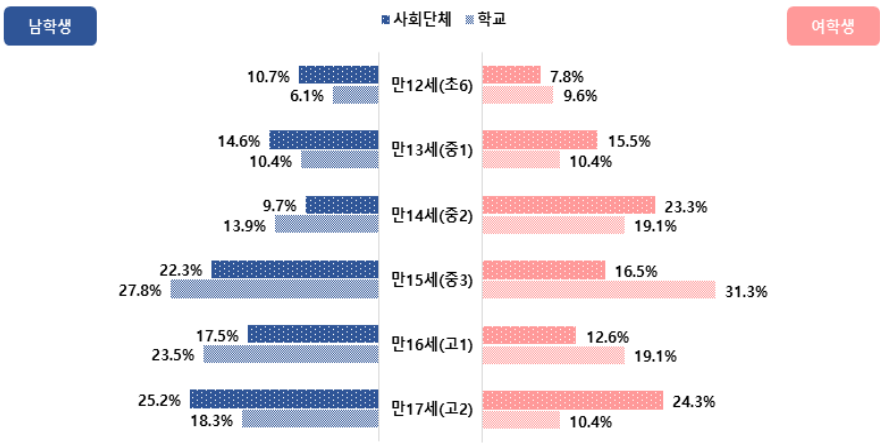


그림 Ⅲ-28 전문가 소속별 성적 행동에 대한 의사 결정 시 다양한 감정이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의 연령 추정 분포

전문가 소속별로 아동·청소년의 연령을 추정한 결과는 [그림 Ⅲ-28]과 같다. 사회단체 소속 전문가는 남학생의 경우 만 17세(고2)(25.2%), 만 15세(중3)(22.3%), 만 16세(고1)(17.5%) 순으로, 여학생의 경우 만 17세(고2)(24.3%),

만 14세(중2)(23.3%), 만 15세(중3)(16.5%) 순으로 성적 행동에 대한 의사 결정 시 다양한 감정이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반면 학교 소속 전문가는 남학생의 경우 만 15세(중3)(27.8%), 만 16세(고1)(23.5%), 만 17세(고2)(18.3%) 순으로, 여학생의 경우 만 15세(중3)(31.3%), 만 14세(중2) 및 만 16세(고1)(19.1%) 순으로 해당 연령을 추정하였다. 전문가 소속별 연령 추정 결과를 살펴보면, 사회단체 소속 전문가의 경우 가장 많은 수가 남학생/여학생 모두 만 17세(고2)에 성적 행동에 대한 의사 결정 시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감정이 자신에게 있음을 알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반면 학교 소속 전문가의 경우 해당 연령을 남학생/여학생 모두 만 15세(중3)로 추정하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⑦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인식

표 III-18 남녀학생별 이성 친구와 함께 있을 때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존재함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의 연령 추정 분포

	남학생			여학생		
	빈도	퍼센트	누적 퍼센트	빈도	퍼센트	누적 퍼센트
만 12세(초6)	10	4.6	4.6	11	5.0	5.0
만 13세(중1)	27	12.4	17.0	29	13.3	18.3
만 14세(중2)	32	14.7	31.7	52	23.9	42.2
만 15세(중3)	50	22.9	54.6	60	27.5	69.7
만 16세(고1)	43	19.7	74.3	30	13.8	83.5
만 17세(고2)	56	25.7	100.0	36	16.5	100.0
합계	218	100.0		218	100.0	

이성 친구와 함께 있을 때 자신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알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아동·청소년의 연령 추정 결과는 [표 III-18]과 같다.

남학생의 경우는 만 17세(고2)(25.7%), 만 15세(중3)(22.9%), 만 16세(고1)(19.7%) 순으로 이성 친구와 함께 있을 때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존재한다는 것에 대한 인지가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여학생의 경우는 만 15세(중3)(27.5%), 만 14세(중2)(23.9%), 만 17세(고2)(16.5%) 순으로 추정되었다. 성별 연령 추정 결과를 살펴보면, 이성 친구와 있을 때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분위기나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음을 알고 있는 연령에 대해 남학생의 경우 만 17세(고2)라는 응답이, 여학생의 경우 만 15세(중3)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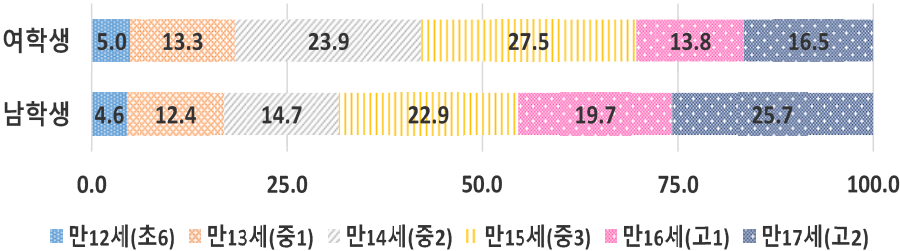


그림 III -29 남녀학생별 이성 친구와 함께 있을 때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존재함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의 연령 추정 분포

한편, 이성 친구와 함께 있을 때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음을 인지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의 연령 추정 분포를 누적빈도(%)로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표 III-18]에서 나타내는 것과 같이 남학생의 경우 만 12세 이상은 4.6%, 만 13세 이상은 17.0%, 만 14세 이상은 31.7%, 만 15세 이상은 54.6%, 만 16세 이상은 74.3%의 전문가가 해당 연령의 아동·청소년이 자기가 여자 친구와 함께 있을 때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음을 인식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여학생의 경우는 만 12세 이상은 5.0%, 만 13세 이상은 18.3%, 만 14세 이상은 42.2%, 만 15세 이상은 69.7%, 만 16세

이상은 83.5%의 전문가가 해당 연령의 아동·청소년이 자기가 남자 친구와 함께 있을 때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음을 알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결과적으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상대적으로 빨리(이른 나이에) 이성 친구와 함께 있을 때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음을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그림 III-29]. 즉, 50%의 전문가들은 남녀학생 모두 만 15세(중3) 이후면 이성 친구와 함께 있을 때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였으며, 여학생의 경우 만 15세(중3) 이상이면 이와 같은 인식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응답한 전문가가 남학생의 경우보다(15% 정도) 더 많았다. 또한 75%의 전문가는 여학생의 경우는 만 16세(고1) 이후면, 남학생의 경우는 만 17세(고2) 이후에나 이와 같은 사실의 인식이 가능할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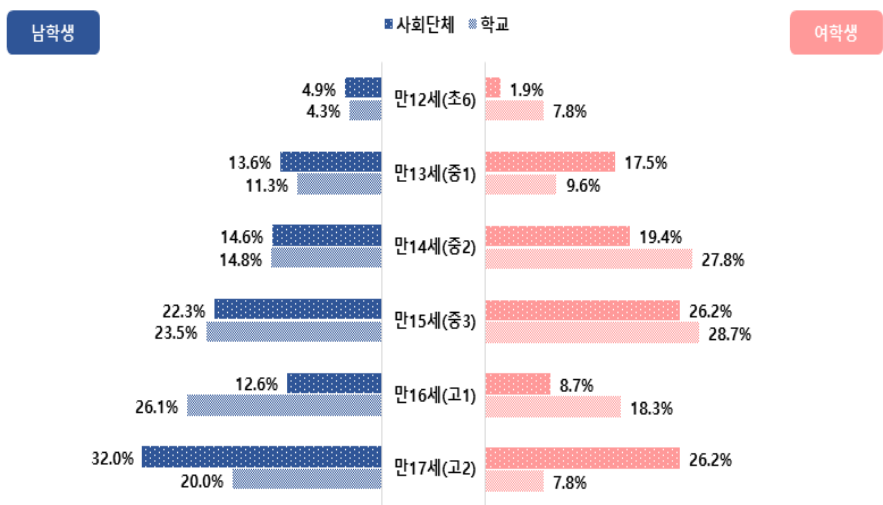


그림 III-30 전문가 소속별 이성 친구와 함께 있을 때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존재함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의 연령 추정 분포

전문가 소속별로 아동·청소년의 연령을 추정한 결과는 [그림 III-30]과 같다. 사회단체 소속 전문가는 남학생의 경우 만 17세(고2)(32.0%), 만 15세(중3)(22.3%), 만 14세(중2)(14.6%) 순으로, 여학생의 경우 만 15세(중3) 및 만 17세(고2)(26.2%), 만 14세(중2)(19.4%) 순으로 이성 친구와 함께 있을 때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반면 학교 소속 전문가는 남학생의 경우 만 16세(고1)(26.1%), 만 15세(중3)(23.5%), 만 17세(고2)(20.0%), 여학생의 경우 만 15세(중3)(28.7%), 만 14세(중2)(27.8%), 만 16세(고1)(18.3%) 순으로 해당 연령을 추정하였다. 전문가 소속별 연령 추정 결과를 살펴보면, 사회단체 소속 전문가의 경우 가장 많은 수가 남학생은 만 17세(고2), 여학생은 만 15세(중3) 및 만 17세(고2)가 이성 친구와 있을 때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음을 알고 있는 연령이라고 추정하였다. 반면 학교 소속 전문가의 경우 남학생은 만 16세(고1), 여학생은 만 15세(중3)를 해당 연령으로 추정한 응답이 가장 많았다.

⑧ 소결

아동·청소년이 성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성에 대한 그들 자신만의 태도를 갖출 것으로 예상이 되는 나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다양하게 추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전문가들이 추정한 연령 분포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린 누적 분포 히스토그램은 [그림 III-31]과 같다. 이를 기초로 하여, 대략 50% 정도의 전문가들이 추정하고 있는 연령대를 살펴보면,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이른 나이에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갖추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었다. 즉, 절반 이상의 전문가들이 남학생의 경우는 만 15세(중3) 이상, 여학생의 경우는 만 14세(중2) 이상이면 성에 대한 충분한 인식과 자신만의 태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하여 늦은 나이(만 16세, 고1)에 자신의 성적 욕구를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것

(Q5)으로 50% 이상의 전문가들이 추정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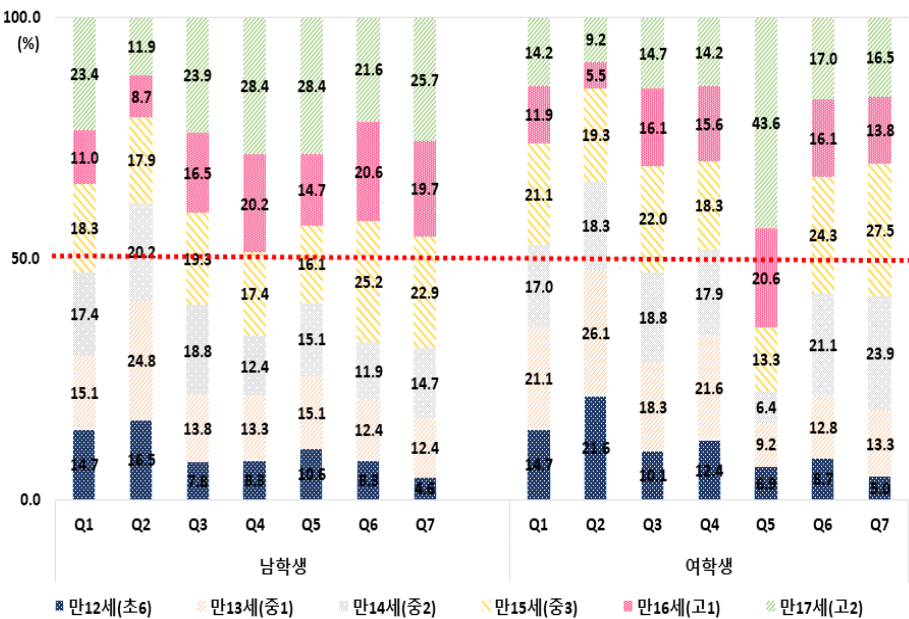


그림 III-31 아동·청소년의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에 대한 연령추정분포

Note. Q1 성관계에 대한 합의, Q2 자신이 임신할(시킬) 가능성에 노출, Q3 자신이 성병 감염에 노출, Q4 성관계의 책임소재, Q5 성적 욕구에 대한 표현, Q6 성적 행동에 대한 의사 결정 시 다양한 감정이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인식, Q7 이성 친구와 함께 있을 때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인식

(3) 성폭력에 대한 인식 및 대처 능력

① 성폭력 상황에 대한 인식

성폭력이란 성적으로 굴욕적이고 불쾌한 신체적, 언어적, 시각적 말과 행동을 포괄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으리라 추정되는 아동·청소년의 연령 추정 결과는 [표 III-19]와 같다. 남학생의 경우는 만 12세(초6)(34.9%), 만 13세(중1)(20.6%), 만 17세(고2)(13.8%) 순으로 성폭력 상황에 대한 인식이 충분히 가능

한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여학생의 경우는 만 12세(초6)(43.1%), 만 13세(중1)(19.7%), 만 14세(중2)(15.1%) 순으로 추정되었다. 성별 연령 추정 결과를 살펴 보면, 평가에 참여한 전문가의 55% 이상이 성폭력이란 성적으로 굴욕적이고 불쾌한 신체적, 언어적, 시각적 말과 행동을 포괄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는 연령으로 만 12세(초6)에서 만 13세(중1)를 추정하였으며, 그중 해당 연령이 남학생/여학생 모두 만 12세(초6)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III-19 남녀학생별 성폭력 상황에 대한 인식이 가능한 아동·청소년의 연령 추정 분포

	남학생			여학생		
	빈도	퍼센트	누적 퍼센트	빈도	퍼센트	누적 퍼센트
만 12세(초6)	76	34.9	34.9	94	43.1	43.1
만 13세(중1)	45	20.6	55.5	43	19.7	62.8
만 14세(중2)	25	11.5	67.0	33	15.1	78.0
만 15세(중3)	27	12.4	79.4	16	7.3	85.3
만 16세(고1)	15	6.9	86.2	14	6.4	91.7
만 17세(고2)	30	13.8	100.0	18	8.3	100.0
합계	218	100.0		218	100.0	

한편, 성폭력 상황에 대한 인식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추정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의 연령의 의미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하고자 누적빈도(%)를 이용하였다. [표 III-19]에서 나타내는 것과 같이, 남학생의 경우 만 12세(초6) 이상은 34.9%, 만 13세(중1) 이상은 55.5%, 만 14세(중2) 이상은 67.0%, 만 15세(중3) 이상은 79.4%, 만 16세(고1) 이상은 86.2%의 전문가가 해당 연령의 아동·청소년이 성폭력 상황에 대한 인식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여학생의 경우도 만 12세(초6) 이상은 43.1%, 만 13세(중1) 이상은 62.8%, 만 14세(중2) 이상은 78.0%, 만 15세(중3) 이상은 85.3%, 만 16세(고1) 이상은 91.7%의 전문가가 해당 연령의 아동·청소년이 성폭력 상황에 대한 인식이 가능할 것이라고 추정하

였다. 이 항목에 대해서는 다른 항목에서보다 상대적으로 이른 나이부터 그 인식이 가능한 것으로 추정되었고, 특히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상대적으로 어린 나이에 성폭력 상황에 대한 인식이 가능한 것으로 추정되었다[그림 III-32]. 즉, 50%의 전문가들은 남녀학생 모두 만 13세(중1) 이후면 성폭력 상황에 대한 인식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추정하였지만, 여학생의 경우 만 13세(중1) 이후에 이와 같은 인식이 가능할 것이라고 응답한 전문가가 남학생의 경우보다(약 7%) 더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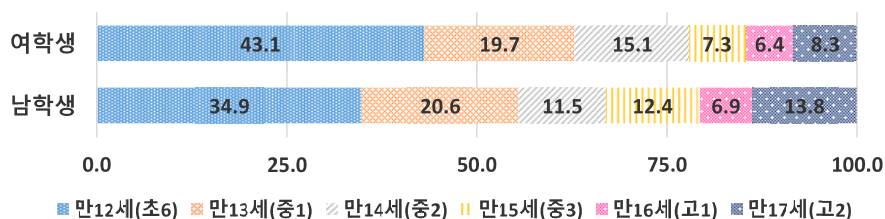


그림 III-32 남녀학생별 성폭력 상황에 대한 인식이 가능한 아동·청소년의 연령 추정 분포

전문가 소속별로, 성폭력 상황에 대한 인식이 가능한 아동·청소년의 연령을 추정한 결과는 [그림 III-33]과 같다. 사회단체 소속 전문가는 남학생의 경우 만 12세(초6)(38.8%), 만 17세(고2)(18.4%), 만 13세(중1)(13.6%) 순으로, 여학생의 경우 만 12세(초6)(46.6%), 만 14세(중2) 및 만 17세(고2)(14.6%) 순으로 성폭력 상황에 대한 인식이 가능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반면 학교 소속 전문가는 남학생의 경우 만 12세(초6)(31.3%), 만 13세(중1)(27.0%), 만 15세(중3)(13.0%) 순으로, 여학생의 경우 만 12세(초6)(40.0%), 만 13세(중1)(28.7%), 만 14세(중2) 15.7%) 순으로 해당 연령을 추정하였다. 전문가 소속별 연령 추정 결과를 살펴보면, 사회단체 소속 전문가와 학교 소속 전문가 모두 남학생/여학생이 만 12세(초6)면 성폭력 상황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고 추정하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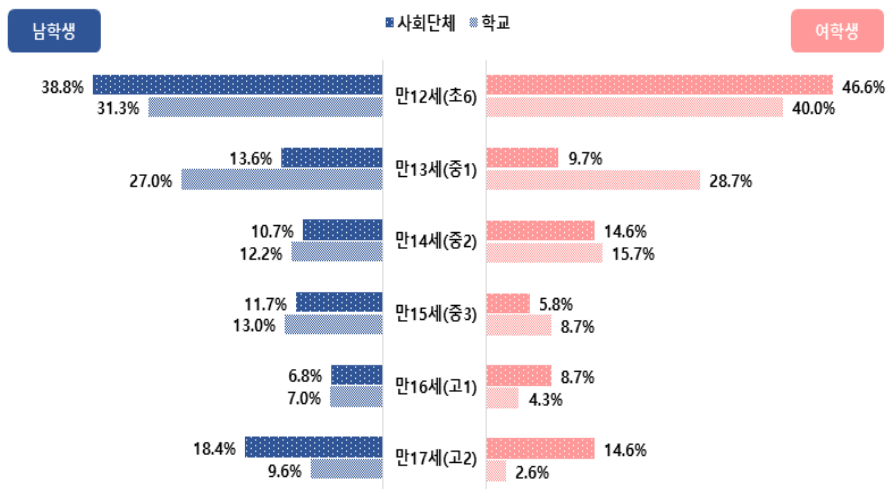


그림 Ⅲ-33 전문가 소속별 성폭력 상황에 대한 인식이 가능한 아동·청소년의 연령 추정 분포

② 성희롱이나 성폭력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

성희롱이나 성폭력의 문제가 남녀 모두에게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아동·청소년의 연령 추정 결과는 [표 Ⅲ-20]과 같다. 남·여학생 모두 만 12세(초6), 만 13세(중1), 만 14세(중2) 순으로 성희롱이나 성폭력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지가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추정되었다(남학생: 만 12세(초6) 37.2% > 만 13세(중1) 19.7% > 만 14세(중2) 13.8%, 여학생: 만 12세(초6) 38.5% > 만 13세(중1) 21.6% > 만 14세(중2) 16.5%). 성별 연령 추정 결과를 살펴보면, 평가에 참여한 전문가의 70% 이상이 만 12세(초6)에서 만 14세(중2)를 성희롱이나 성폭력 문제가 남녀 모두에게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연령으로 추정하였으며, 그중 해당 연령이 남학생/여학생 모두 만 12세(초6)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III-20 남녀학생별 성희롱이나 성폭력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지가 충분히 가능한
아동·청소년의 연령 추정 분포

	남학생			여학생		
	빈도	퍼센트	누적 퍼센트	빈도	퍼센트	누적 퍼센트
만 12세(초6)	81	37.2	37.2	84	38.5	38.5
만 13세(중1)	43	19.7	56.9	47	21.6	60.1
만 14세(중2)	30	13.8	70.6	36	16.5	76.6
만 15세(중3)	21	9.6	80.3	20	9.2	85.8
만 16세(고1)	19	8.7	89.0	10	4.6	90.4
만 17세(고2)	24	11.0	100.0	21	9.6	100.0
합계	218	100.0		218	100.0	

한편, 성희롱이나 성폭력의 문제가 남녀 모두에게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의 연령 추정 분포를 누적빈도(%)로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표 III-20]에서 나타내는 것과 같이, 남학생의 경우 만 12세(초6) 이상은 37.2%, 만 13세(중1) 이상은 56.9%, 만 14세(중2) 이상은 70.6%, 만 15세(중3) 이상은 80.3%, 만 16세(고1) 이상은 89.0%의 전문가가 해당 연령의 아동·청소년이 성희롱이나 성폭력의 문제는 남녀 모두에게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여학생의 경우는 만 12세(초6) 이상은 38.5%, 만 13세(중1) 이상은 60.1%, 만 14세(중2) 이상은 76.6%, 만 15세(중3) 이상은 85.8%, 만 16세 이상은 90.4%의 전문가가 성희롱이나 성폭력의 문제는 남녀 모두에게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결과적으로 성희롱이나 성폭력의 문제가 남녀 모두에게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연령은 남학생이 비슷하게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III-34]. 즉, 50%의 전문가들은 남학생 모두 만 13세(중1) 이후가 되면 남녀 모두에게 성희롱이나 성폭력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인식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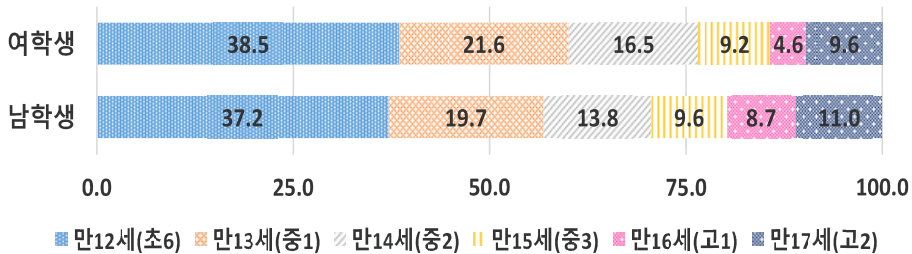


그림 III-34 남녀학생별 성희롱이나 성폭력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지가 충분히 가능한 아동·청소년의 연령 추정

전문가 소속별로, 성희롱이나 성폭력의 문제가 남녀 모두에게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의 연령을 추정한 결과는 [그림 III-35]와 같다. 사회단체 소속 전문가는 남학생의 경우 만 12세(초6)(42.7%), 만 17세(고2)(14.6%), 만 13세(중1) 및 만 14세(중2)(12.6%) 순으로, 여학생의 경우 만 12세(초6)(41.7%), 만 17세(고2)(17.5%), 만 13세(중1)(16.5%) 순으로 성희롱이나 성폭력이 남녀 모두에게 발생할 수 있음을 인식할 수 있다고 추정하였다. 반면 학교 소속 전문가는 남학생의 경우 만 12세(초6)(32.2%), 만 13세(중1)(26.1%), 만 14세(중2)(14.8%) 순으로, 여학생의 경우 만 12세(초6)(35.7%), 만 13세(중1)(26.1%), 만 14세(중2)(19.1%) 순으로 해당 연령을 추정하였다. 전문가 소속별 연령 추정 결과를 살펴보면, 사회단체 소속 전문가와 학교 소속 전문가 모두 남학생/여학생이 만 12세(초6)면 성희롱이나 성폭력 발생 가능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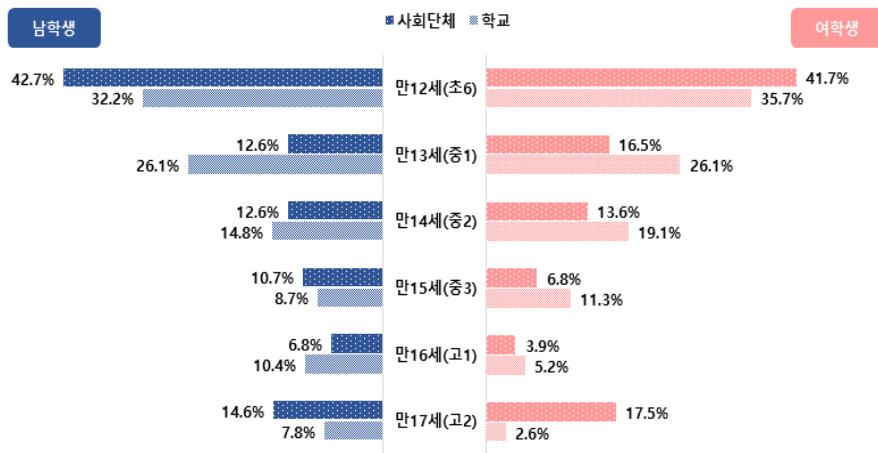


그림 III-35 전문가 소속별 성희롱이나 성폭력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지가 충분히 가능한 아동·청소년의 연령 추정

③ 성폭력에 대한 대처

성폭력에 대한 대처 행동 중 하나로 성폭력을 당했다면 24시간 이내에 병원을 찾아가 진단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아동·청소년의 연령 추정 결과는 [표 III-21]과 같다. 남학생의 경우는 만 17세(고2)(25.7%), 만 13세(중1)(21.1%), 만 12세(초6)(17.9%) 순으로 성폭력 발생 후 대처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여학생의 경우는 만 12세(초6)(19.7%), 만 14세(중2)(18.3%), 만 15세(중3)(17.0%) 순으로 추정되었다. 성별 연령 추정 결과를 살펴보면, 성폭력을 당했을 시 24시간 이내에 병원을 찾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연령에 대해 남학생의 경우 만 17세(고2)라는 응답이, 여학생의 경우 만 12세(초6)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III-21 남녀학생별 성폭력 발생 후 대처가 충분히 가능한 아동·청소년의 연령 추정 분포

	남학생			여학생		
	빈도	퍼센트	누적 퍼센트	빈도	퍼센트	누적 퍼센트
만 12세(초6)	39	17.9	17.9	43	19.7	19.7
만 13세(중1)	46	21.1	39.0	34	15.6	35.3
만 14세(중2)	25	11.5	50.5	40	18.3	53.7
만 15세(중3)	29	13.3	63.8	37	17.0	70.6
만 16세(고1)	23	10.6	74.3	31	14.2	84.9
만 17세(고2)	56	25.7	100.0	33	15.1	100.0
합계	218	100.0		218	100.0	

이를 종합하여 아동·청소년이 성폭력에 대한 대처 방법을 알고 있는지에 대한 연령 추정치를 누적빈도(%)로 확인하였다. [표 III-21]에서 나타내는 것과 같이 남학생의 경우 만 12세(초6) 이상은 17.9%, 만 13세(중1) 이상은 39.0%, 만 14세(중2) 이상은 50.5%, 만 15세(중3) 이상은 63.8%, 만 16세(고1) 이상은 74.3%의 전문가가 해당 연령의 아동·청소년이 만약 성폭력을 당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여학생의 경우는 만 12세(초6) 이상은 19.7%, 만 13세(중1) 이상은 35.3%, 만 14세(중2) 이상은 53.7%, 만 15세(중3) 이상은 70.6%, 만 16세(고1) 이상은 84.9%의 전문가가 해당 연령의 아동·청소년이 성폭력을 당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결론적으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상대적으로 이른 나이에 성폭력에 대한 대처 능력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지만, 50% 이상의 전문가들은 남녀학생 모두 만 14세(중2) 이후에는 성폭력 발생 후 대처 방법 중 하나인 성폭력을 당했다면 24시간 이내에 병원을 찾아가 진단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였고, 75% 이상의 전문가들은 여학생은 만 16세(고1) 이후, 남학생의 경우는 만 17세(고2) 이후에나 이와 같은 인식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그림 III-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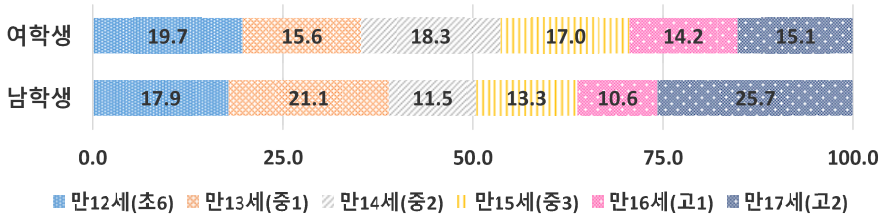


그림 III-36 남녀학생별 성폭력 발생 후 대처가 충분히 가능한 아동·청소년의 연령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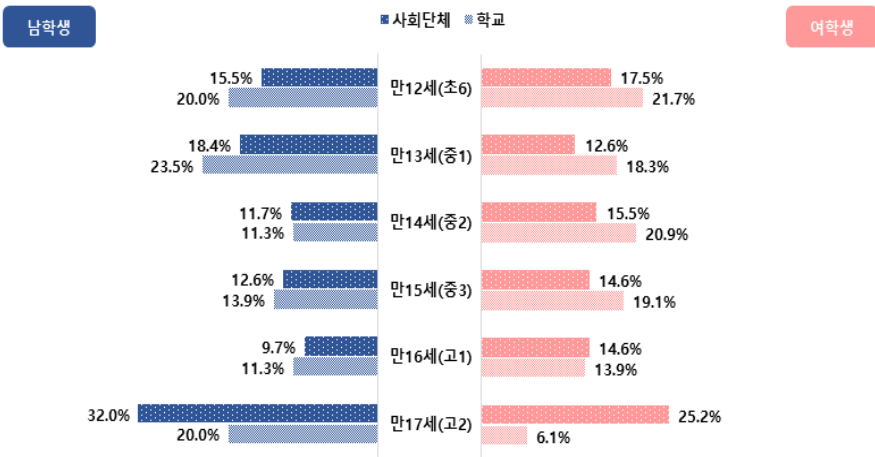


그림 III-37 전문가 소속별 성폭력 발생 후 대처가 충분히 가능한 아동·청소년의 연령 추정

전문가 소속별로 아동·청소년의 연령을 추정한 결과는 [그림 III-37]과 같다. 사회단체 소속 전문가는 남학생의 경우 만 17세(고2)(32.0%), 만 13세(중1)(18.4%), 만 12세(초6)(15.5%) 순으로, 여학생의 경우 만 17세(고2)(25.2%), 만 12세(초6)(17.5%), 만 14세(중2)(15.5%) 순으로 성폭력 발생 후 대처가 가능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반면 학교 소속 전문가는 남학생의 경우 만 13세(중1)(23.5%), 만 12세(초6) 및 만 17세(고2)(20.0%) 순으로, 여학생의 경우 만 12세(초6)(21.7%), 만 14세(중2)(20.9%), 만 15세(중3)(19.1%) 순으로 해당 연령을

추정하였다. 전문가 소속별 연령 추정 결과를 살펴보면, 사회단체 소속 전문가의 경우 가장 많은 수가 남학생/여학생 모두 만 17세(고2)가 24시간 이내 병원을 찾아가는 등 성폭력에 대한 대처 방법을 인지하고 있는 연령이라고 추정하였다. 반면 학교 소속 전문가의 경우 남학생은 만 13세(중1), 여학생은 만 12세(초6)면 성폭력에 대한 대처 방법을 인지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④ 소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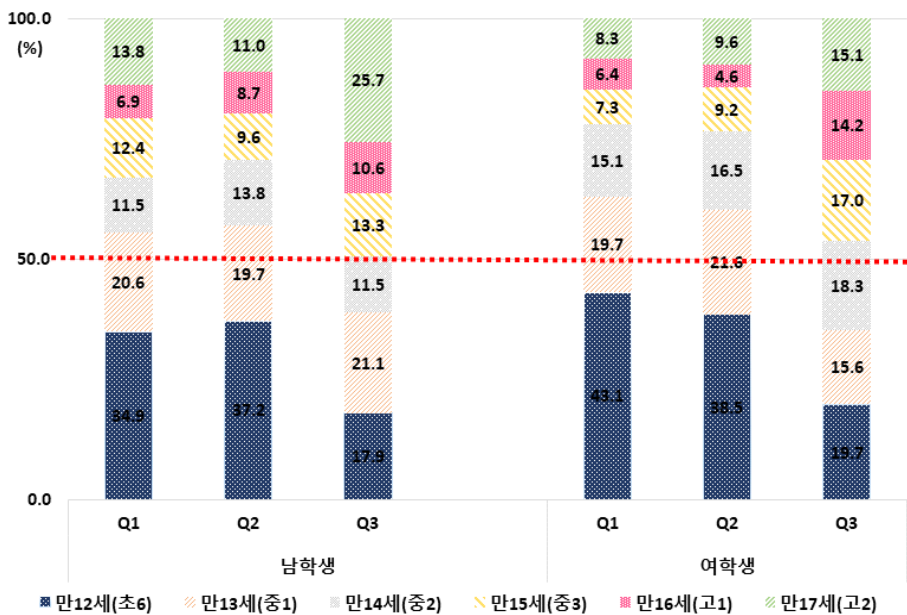


그림 III-38 아동·청소년의 성폭력에 대한 인식 및 대처 능력에 관한 추정 연령 누적 분포

Note. Q1 성폭력 상황에 대한 인식, Q2 성희롱이나 성폭력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 Q3 성폭력에 대한 대처

성폭력 상황에 대한 인식이 가능하고, 또 성폭력을 당했을 때 이를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알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동·청소년의 추정 연령 누적 분포 히스토그램은 [그림 III-38]과 같다. 전반적으로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하여 어린

나이에 성폭력에 대한 인식 및 대처 능력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지만, 남녀학생 모두 그 추정 연령이 다른 항목들에 비하여 어리게 나타났다. 즉, 대략 50%의 전문가들이 남녀학생 모두가 만 13세(중1) 이상이면 성폭력에 대한 인식이 가능하고, 만 14세(중2) 이상은 성폭력 후 대처 방법에 대해 알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었다. 또, 약 75% 이상의 전문가들이 남녀학생 모두 만 15세(중3) 이상이면 성폭력 상황이나 성폭력이 남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음을 인식할 수 있고, 남학생의 경우 만 17세(고2) 이상, 여학생의 경우 만 16세(고1) 이상이면 성폭력이 발생했을 때 대처가 가능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4) 성적 자율성

① 성행위에 대한 자기생각 표현 능력

성행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타인에게 솔직하게 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아동·청소년의 연령 추정 결과는 [표 III-22]와 같다. 남학생의 경우는 만 17세(고2)(26.1%), 만 16세(고1)(22.0%), 만 14세(중2)(18.8%) 순으로 성행위에 대한 자신의 생각 표현이 자유로울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여학생의 경우는 만 17세(고2)(34.9%), 만 16세(고1)(22.0%), 만 15세(중3)(17.0%) 순으로 추정되었다. 성별 연령 추정 결과를 살펴보면, 평가에 참여한 전문가의 65% 이상이 만 15세(중3)에서 만 17세(고2)를 성행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연령으로 추정하였으며, 그중 해당 연령이 남학생/여학생 모두 만 17세(고2)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III-22 남녀학생별 성행위에 대한 자신의 생각 표현이 자유로울 수 있는
아동·청소년의 연령 추정 분포

	남학생			여학생		
	빈도	퍼센트	누적 퍼센트	빈도	퍼센트	누적 퍼센트
만 12세(초6)	16	7.3	7.3	15	6.9	6.9
만 13세(중1)	20	9.2	16.5	17	7.8	14.7
만 14세(중2)	41	18.8	35.3	25	11.5	26.1
만 15세(중3)	36	16.5	51.8	37	17.0	43.1
만 16세(고1)	48	22.0	73.9	48	22.0	65.1
만 17세(고2)	57	26.1	100.0	76	34.9	100.0
합계	218	100.0		218	100.0	

이를 종합하여, 성행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타인에게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의 연령 추정 분포를 누적빈도(%)로 확인하였다. [표 III-24]에서 나타내는 것과 같이 남학생의 경우 만 12세(초6) 이상은 7.3%, 만 13세(중1) 이상은 16.5%, 만 14세(중2) 이상은 35.3%, 만 15세(중3) 이상은 51.8%, 만 16세(고1) 이상은 73.9%의 전문가가 해당 연령의 아동·청소년이 성행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타인에게 솔직하게 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여학생의 경우는 만 12세(초6) 이상은 6.9%, 만 13세(중1) 이상은 14.7%, 만 14세(중2) 이상은 26.1%, 만 15세(중3) 이상은 43.1%, 만 16세(고1) 이상은 65.1%의 전문가가 해당 연령의 아동·청소년이 성행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타인에게 솔직하게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결론적으로 [그림 III-39]와 같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상대적으로 조금 빨리 성행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타인에게 솔직하게 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약 50%의 전문가들은 남학생의 경우 만 15세(중3) 이후면 성행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고, 여학생의 경우는 만 16세(고1)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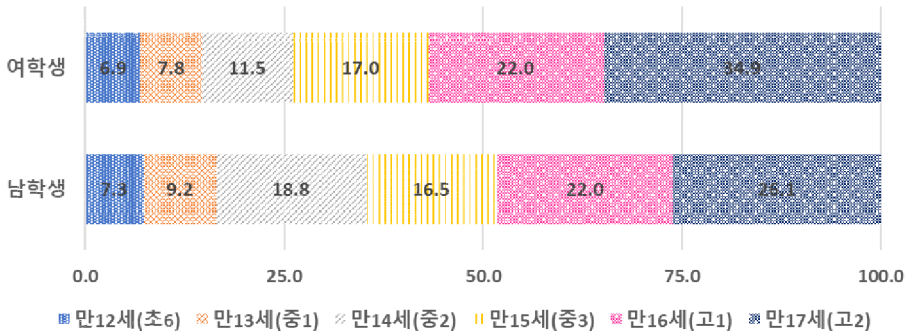


그림 III-39 남녀학생별 성행위에 대한 자신의 생각 표현이 자유로울 수 있는
아동·청소년의 연령 추정 분포

전문가 소속별로, 성행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타인에게 말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의 연령을 추정한 결과는 [그림 III-40]과 같다. 사회단체 소속 전문가는 남학생의 경우 만 17세(고2)(29.1%), 만 14세(중2)(21.4%), 만 15세(중3) 및 만 16세(고1)(18.4%) 순으로, 여학생의 경우 만 17세(고2)(42.7%), 만 16세(고1)(17.5%), 만 15세(중3)(16.5%) 순으로 성행위에 대한 자신의 생각 표현이 자유로울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반면 학교 소속 전문가는 남학생의 경우 만 16세(고1)(25.2%), 만 17세(고2)(23.5%), 만 14세(중2)(16.5%) 순으로, 여학생의 경우 만 17세(고2)(27.8%), 만 16세(고1)(26.1%), 만 15세(중3)(17.4%) 순으로 해당 연령을 추정하였다. 전문가 소속별 연령 추정 결과를 살펴보면, 사회단체 소속 전문가의 경우 가장 많은 수가 남학생/여학생 모두 만 17세(고2)를 성행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타인에게 솔직히 말할 수 있는 연령으로 추정하였다. 반면 학교 소속 전문가의 경우는 남학생은 해당 연령을 만 16세(고1), 여학생은 만 17세(고2)로 추정한 응답이 가장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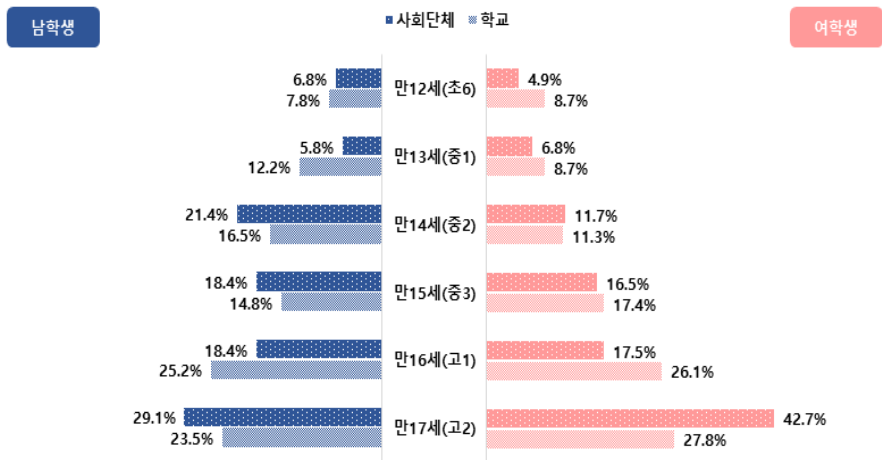


그림 Ⅲ-40 전문가 소속별 성행위에 대한 자신의 생각 표현이 자유로울 수 있는 아동·청소년의 연령 추정 분포

② 원하지 않는 성적 행동에 대한 언어적 표현 능력

자신이 원하지 않는 성적 행동들에 대해 언어적인 표현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아동·청소년의 연령 추정 결과는 [표 Ⅲ-23]과 같다. 남학생의 경우는 만 17세(고2)(23.4%), 만 15세(중3)(18.3%), 만 14세(중2) 및 만 16세(고1)(17.0%) 순으로 원하지 않는 성적 행동에 대한 언어적 표현 능력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여학생의 경우는 만 17세(고2)(25.2%), 만 15세(중3)(20.6%), 만 14세(중2)(15.6%) 순으로 추정되었다. 성별 연령 추정 결과를 살펴보면, 원하지 않는 성적 행동들에 대해 언어적 표현으로 설명할 수 있는 연령에 대해 남학생/여학생 모두 만 17세(고2)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III-23 남녀학생별 원하지 않는 성적 행동에 대해 언어적 표현이 충분히 가능한
아동·청소년의 연령 추정 분포

	남학생			여학생		
	빈도	퍼센트	누적 퍼센트	빈도	퍼센트	누적 퍼센트
만 12세(초6)	28	12.8	12.8	22	10.1	10.1
만 13세(중1)	25	11.5	24.3	29	13.3	23.4
만 14세(중2)	37	17.0	41.3	34	15.6	39.0
만 15세(중3)	40	18.3	59.6	45	20.6	59.6
만 16세(고1)	37	17.0	76.6	33	15.1	74.8
만 17세(고2)	51	23.4	100.0	55	25.2	100.0
합계	218	100.0		218	100.0	

이를 종합하여, 자신이 원하지 않는 성적 행동들에 대해 언어적인 표현을 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의 연령 추정 분포를 누적빈도(%)로 확인하였다. [표 III-23]에서 나타내는 것과 같이 남학생의 경우 만 12세(초6) 이상은 12.8%, 만 13세(중1) 이상은 24.3%, 만 14세(중2) 이상은 41.3%, 만 15세(중3) 이상은 59.6%, 만 16세(고1) 이상은 76.6%의 전문가가 해당 연령의 아동·청소년이 자신이 원하지 않는 성적 행동에 대해 언어적인 표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여학생의 경우는 만 12세(초6) 이상은 10.1%, 만 13세(중1) 이상은 23.4%, 만 14세(중2) 이상은 39.0%, 만 15세(중3) 이상은 59.6%, 만 16세(고1) 이상은 74.8%의 전문가가 자신이 원하지 않는 성적 행동들에 대해 언어적인 표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결과적으로 전문가들은 성적 행동에 대한 의사 표현이 가능한 연령이 남녀가 비슷한 것으로 추정하였다[그림 III-41]. 즉, 50% 이상의 전문가들은 남녀 학생 모두 만 15세(중3) 이후면 자신이 원하지 않는 성적 행동들에 대해 언어적인 표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였고, 대략 75%의 전문가들은 만 17세(고2) 이상은 되어야 성적 행동에 대한 호불호를 언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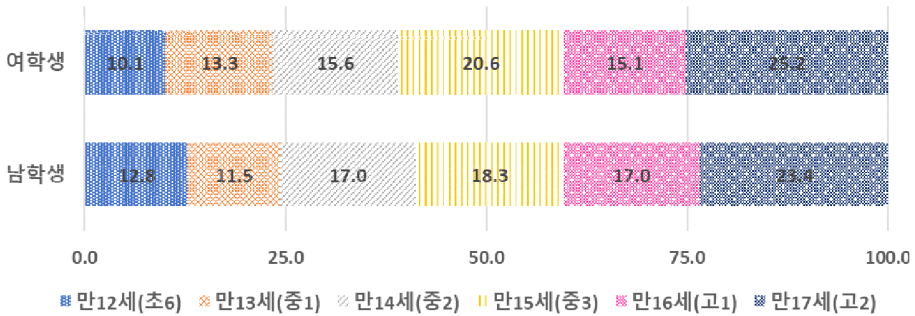


그림 III-41 남녀학생별 원하지 않는 성적 행동에 대해 언어적 표현이 충분히 가능한 아동·청소년의 연령 추정

전문가 소속별로, 원하지 않는 성적 행동에 대해 언어적인 표현을 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의 연령을 추정한 결과는 [그림 III-42]와 같다. 사회단체 소속 전문가는 남학생의 경우 만 17세(고2)(29.1%), 만 15세(중3)(21.4%), 만 16세(고1) 15.5%) 순으로, 여학생의 경우 만 17세(고2)(35.0%), 만 15세(중3)(18.4%), 만 16세(고1)(13.6%) 순으로 원하지 않는 성적 행동에 대한 언어적 표현이 가능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반면 학교 소속 전문가는 남학생의 경우 만 14세(중2) 20.0%), 만 16세(고1) 및 만 17세(고2)(18.3%) 순으로, 여학생의 경우 만 15세(중3) 22.6%), 만 14세(중2)(18.3%), 만 16세(고1) 및 만 17세(고2)(16.5%) 순으로 해당 연령을 추정하였다. 전문가 소속별 연령 추정 결과를 살펴보면, 사회단체 소속 전문가의 경우 가장 많은 수가 남학생/여학생 모두 만 17세(고2)를 원하지 않는 성적 행동에 대해 언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연령으로 추정하였다. 반면 학교 소속 전문가의 경우 남학생은 만 14세(중2), 여학생은 만 15세(중3)면 원치 않는 성적 행동에 대한 언어적 표현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하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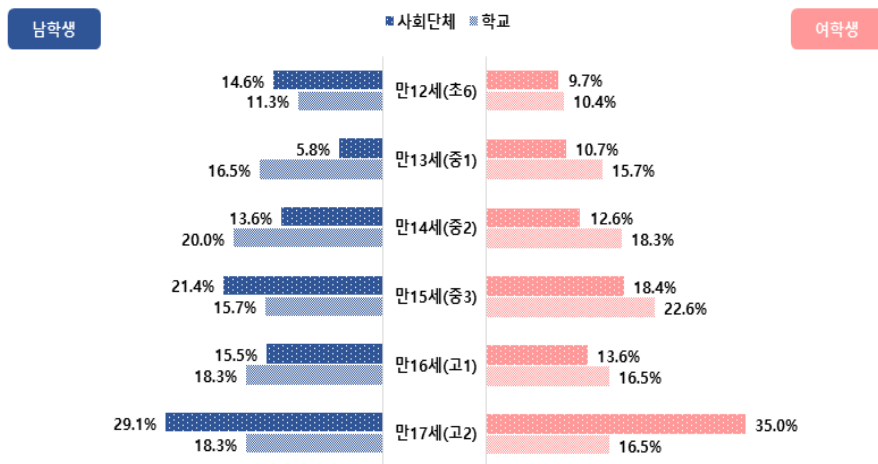


그림 III-42 전문가 소속별 원하지 않는 성적 행동에 대해 언어적 표현이 충분히 가능한 아동·청소년의 연령 추정

③ 안전한 성관계에 관한 대화 능력

안전한 성적인 관계에 대해서 서로 대화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실천할 수 있을 것 같은 아동·청소년의 연령 추정 결과는 [표 III-24]와 같다. 남학생의 경우는 만 17세(고2)(39.4%), 만 16세(고1)(18.8%), 만 15세(중3)(17.9%) 순으로 안전한 성관계에 대한 대화가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여학생의 경우는 만 17세(고2)(33.0%), 만 15세(중3)(21.6%), 만 16세(고1)(18.8%) 순으로 추정되었다. 성별 연령 추정 결과를 살펴보면, 안전한 성적 관계에 대해 대화가 필요하다는 사실 인지 및 실천할 수 있는 연령에 대해 남학생/여학생 모두 만 17세(고2)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III-24 남녀학생별 안전한 성관계에 관한 대화가 충분히 가능한
아동·청소년의 연령 추정 분포

	남학생			여학생		
	빈도	퍼센트	누적 퍼센트	빈도	퍼센트	누적 퍼센트
만 12세(초6)	12	5.5	5.5	14	6.4	6.4
만 13세(중1)	13	6.0	11.5	21	9.6	16.1
만 14세(중2)	27	12.4	23.9	23	10.6	26.6
만 15세(중3)	39	17.9	41.7	47	21.6	48.2
만 16세(고1)	41	18.8	60.6	41	18.8	67.0
만 17세(고2)	86	39.4	100.0	72	33.0	100.0
합계	218	100.0		218	100.0	

이를 종합하여, 안전한 성적 관계에 대해서 서로 대화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실천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의 연령 추정 분포를 누적빈도(%)로 확인하였다. [표 III-24]에서 나타내는 것과 같이 남학생의 경우 만 12세(초6) 이상은 5.5%, 만 13세(중1) 이상은 11.5%, 만 14세(중2) 이상은 23.9%, 만 15세(중3) 이상은 41.7%, 만 16세(고1) 이상은 60.6%의 전문가가 해당 연령의 아동·청소년이 안전한 성적 관계에 대해서 서로 대화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실천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여학생의 경우는 만 12세(초6) 이상은 6.4%, 만 13세(중1) 이상은 16.1%, 만 14세(중2) 이상은 26.6%, 만 15세(중3) 이상은 48.2%, 만 16세(고1) 이상은 67.0%의 전문가가 안전한 성적 관계에 대해서 서로 대화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실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결론적으로 전문가들이 안전한 성관계에 관해 서로 대화가 필요하며 이를 실천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한 연령대는 남학생과 여학생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III-43]. 즉, 약 50% 이상의 전문가들은 만 16세(고1) 이상은 되어야 상대방과 안전한 성관계에 관한 대화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였고, 75%의 전문가들은 만 17세(고2) 이상은 되어야 이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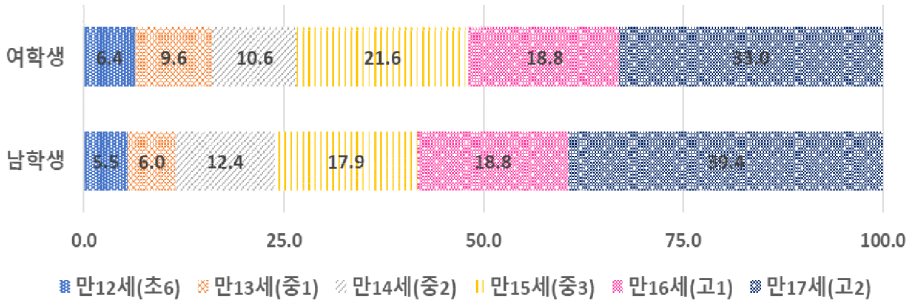


그림 III-43 남녀학생별 안전한 성관계에 관한 대화가 충분히 가능한
아동·청소년의 연령 추정 분포

전문가 소속별로, 안전한 성적 관계에 대해서 서로 대화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실천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의 연령을 추정한 결과는 [그림 III-44]와 같다. 사회단체 소속 전문가는 남학생의 경우 만 17세(고2)(45.6%), 만 15세(중3)(21.4%), 만 14세(중2)(13.6%) 순으로, 여학생의 경우 만 17세(고2)(44.7%), 만 16세(고1)(15.5%), 만 15세(중3)(14.6%) 순으로 안전한 성관계에 대한 대화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반면 학교 소속 전문가는 남학생의 경우 만 17세(고2)(33.9%), 만 16세(고1)(25.2%), 만 15세(중3)(14.8%) 순으로, 여학생의 경우 만 15세(중3)(27.8%), 만 17세(고2)(22.6%), 만 16세(고1)(21.7%) 순으로 해당 연령을 추정하였다. 전문가 소속별 연령 추정 결과를 살펴보면, 사회단체 소속 전문가의 경우 가장 많은 수가 남학생/여학생 모두 만 17세(고2)를 안전한 성관계에 관한 대화 필요성 인지 및 실천 가능 연령으로 추정하였다. 반면 학교 소속 전문가의 경우 남학생은 만 17세(고2), 여학생은 만 15세(중3)를 해당 연령으로 추정한 응답이 가장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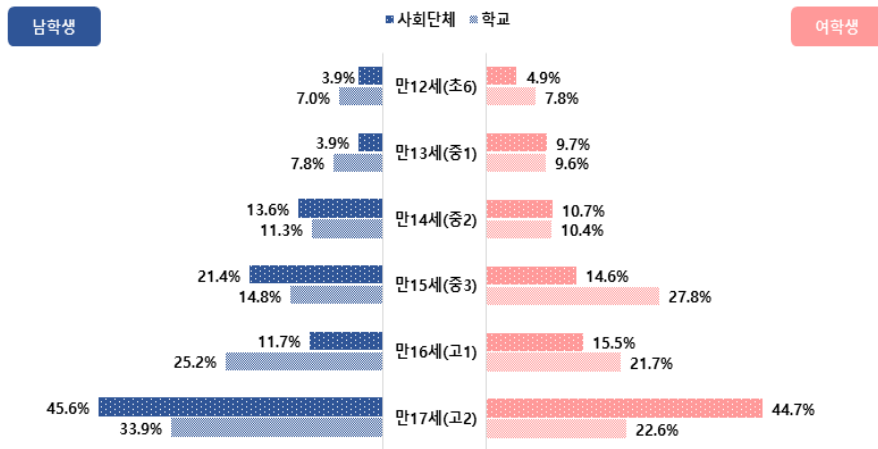


그림 III-44 전문가 소속별 안전한 성관계에 관한 대화가 충분히 가능한
아동·청소년의 연령 추정 분포

④ 성병 예방에 대한 의사소통능력

안전한 성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예로, 성관계를 하게 된다면 성병을 예방하기 위해 상대방과 적절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아동·청소년의 연령 추정 결과는 [표 III-25]와 같다. 남·여학생 모두 만 17세(고2), 만 16세(고1), 만 15세(중3) 순으로 성병 예방에 대한 의사소통이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남학생: 만 17세(고2) 53.7% > 만 16세(고1) 21.6% > 만 15세(중3) 14.7%, 여학생: 만 17세(고2) 45.0% > 만 16세(고1) 27.1% > 만 15세(중3) 14.2%). 성별 연령 추정 결과를 살펴보면, 평가에 참여한 전문가의 85% 이상이 성관계 시 성병 예방을 위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연령을 만 15세(중3)에서 만 17세(고2)로 추정하였으며, 그중 해당 연령이 남학생/여학생 모두 만 17세(고2)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III-25 남녀학생별 성병 예방에 대한 의사소통이 충분히 가능한
아동·청소년의 연령 추정 분포

	남학생			여학생		
	빈도	퍼센트	누적 퍼센트	빈도	퍼센트	누적 퍼센트
만 12세(초6)	4	1.8	1.8	6	2.8	2.8
만 13세(중1)	6	2.8	4.6	7	3.2	6.0
만 14세(중2)	12	5.5	10.1	17	7.8	13.8
만 15세(중3)	32	14.7	24.8	31	14.2	28.0
만 16세(고1)	47	21.6	46.3	59	27.1	55.0
만 17세(고2)	117	53.7	100.0	98	45.0	100.0
합계	218	100.0		218	100.0	

이를 종합하여, 성관계 시 성병 예방을 위해 상대방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의 연령 추정 분포를 누적빈도(%)로 확인하였다. [표 III-25]와 같이 남학생의 경우 만 12세(초6) 이상은 1.8%, 만 13세(중1) 이상은 4.6%, 만 14세(중2) 이상은 10.1%, 만 15세(중3) 이상은 24.8%, 만 16세(고1) 이상은 46.3%의 전문가가 해당 연령의 아동·청소년이 성관계 시 성병을 예방하기 위해 상대방과 적절한 협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여학생의 경우는 만 12세(초6) 이상은 2.8%, 만 13세(중1) 이상은 6.0%, 만 14세(중2) 이상은 13.8%, 만 15세(중3) 이상은 28.0%, 만 16세(고1) 이상은 55.0%의 전문가가 성병예방을 위해 상대방과 대화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결과적으로 전문가들은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하여 이른 나이에 성관계 시 성병 예방을 위해 상대방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그림 III-45]. 즉, 50%의 전문가들은 여학생의 경우 만 16세(고1), 남학생의 경우는 만 17세(고2) 이후에나 이와 같은 의사소통이 가능할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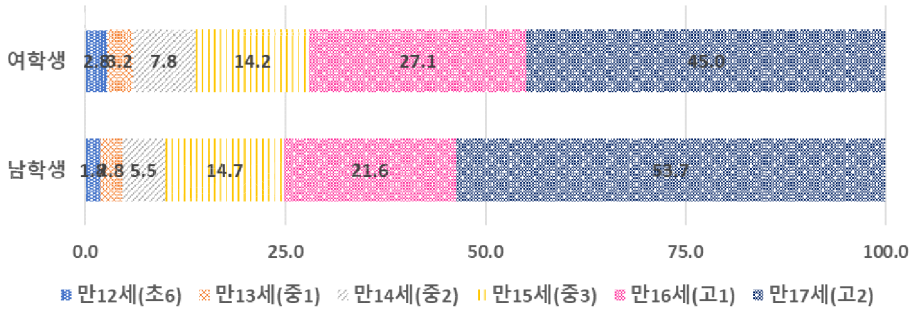


그림 III-45 남녀학생별 성병 예방에 대한 의사소통이 충분히 가능한
아동·청소년의 연령 추정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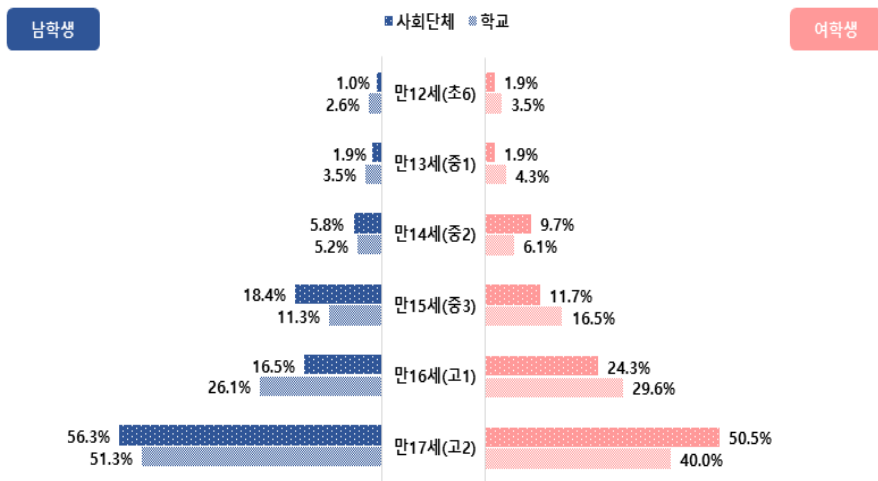


그림 III-46 전문가 소속별 성병 예방에 대한 의사소통이 충분히 가능한
아동·청소년의 연령 추정 분포

전문가 소속별로, 성관계 시 성병예방을 위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아동·청소년의 연령을 추정한 결과는 [그림 III-46]과 같다. 사회단체 소속 전문가는 남학생의 경우 만 17세(고2)(56.3%), 만 15세(중3)(18.4%), 만 16세(고1)(16.5%) 순으로,

여학생의 경우 만 17세(고2)(50.5%), 만 16세(고1)(24.3%), 만 15세(중3)(11.7%) 순으로 성병 예방에 대한 의사소통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반면 학교 소속 전문가는 남학생의 경우 만 17세(고2)(51.3%), 만 16세(고1)(26.1%), 만 15세(중3)(11.3%) 순으로, 여학생의 경우 만 17세(고2)(40.0%), 만 16세(고1)(29.6%), 만 15세(중3)(16.5%) 순으로 해당 연령을 추정하였다. 전문가 소속별 연령 추정 결과를 살펴보면, 사회단체 소속 전문가와 학교 소속 전문가 모두 남학생/여학생이 만 17세(고2)에 성병 예방을 위한 의사소통 능력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⑤ 자신의 성적인 욕구를 알고 조절하는 능력

표 Ⅲ-26 남녀학생별 성적 욕구를 알아차리고 조절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의 연령 추정 분포

	남학생			여학생		
	빈도	퍼센트	누적 퍼센트	빈도	퍼센트	누적 퍼센트
만 12세(초6)	7	3.2	3.2	10	4.6	4.6
만 13세(중1)	13	6.0	9.2	20	9.2	13.8
만 14세(중2)	31	14.2	23.4	29	13.3	27.1
만 15세(중3)	37	17.0	40.4	45	20.6	47.7
만 16세(고1)	52	23.9	64.2	51	23.4	71.1
만 17세(고2)	78	35.8	100.0	63	28.9	100.0
합계	218	100.0		218	100.0	

자신의 성적 욕구를 알아차리고 스스로 조절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아동·청소년의 연령 추정 결과는 [표 Ⅲ-26]과 같다. 남녀학생 모두 만 17세(고2), 만 16세(고1), 만 15세(중3) 순으로 자신의 성적 욕구를 알아차리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남학생: 만 17세(고2) 35.8% > 만 16세(고1) 23.9% > 만 15세(중3) 17.0%, 여학생: 만 17세(고2) 28.9% > 만 16세(고1) 23.4% >

만 15세(중3) 20.6%). 성별 연령 추정 결과를 살펴보면, 평가에 참여한 전문가의 70% 이상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알아차리고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연령을 만 15세(중3)에서 만 17세(고2)로 추정하였으며, 그중 해당 연령이 남학생/여학생 모두 만 17세(고2)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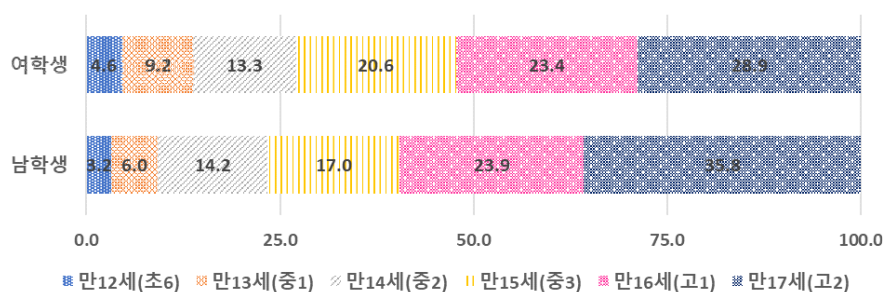


그림 III-47 남녀학생별 성적 욕구를 알아차리고 조절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의 연령 추정 분포

이를 종합하여, 자신의 성적인 욕구를 알아차리고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의 연령 추정 분포를 누적빈도(%)로 확인하였다. [표 III-26]에서 나타내는 것과 같이 남학생의 경우 만 12세(초6) 이상은 3.2%, 만 13세(중1) 이상은 9.2%, 만 14세(중2) 이상은 23.4%, 만 15세(중3) 이상은 40.4%, 만 16세(고1) 이상은 64.2%의 전문가가 해당 연령의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알아차리고 스스로 조절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여학생의 경우는 만 12세(초6) 이상은 4.6%, 만 13세(중1) 이상은 13.8%, 만 14세(중2) 이상은 27.1%, 만 15세(중3) 이상은 47.7%, 만 16세(고1) 이상은 71.1%의 전문가가 자신의 성적인 욕구를 알아차리고 스스로 조절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결론적으로 전문가들은 남학생과 여학생이 스스로의 성적 욕구를 알아차리고 이를 조절하는 능력이 비슷한 연령에서 가능할 것으로 추정하였다[그림 III-47]. 즉, 50% 이상의 전문가들은

만 16세(고1) 이상의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알아차리고 이를 조절할 수 있다고 추정하였으며, 약 75%의 전문가들은 만 17세(고2) 이상이 이를 실천할 수 있다고 추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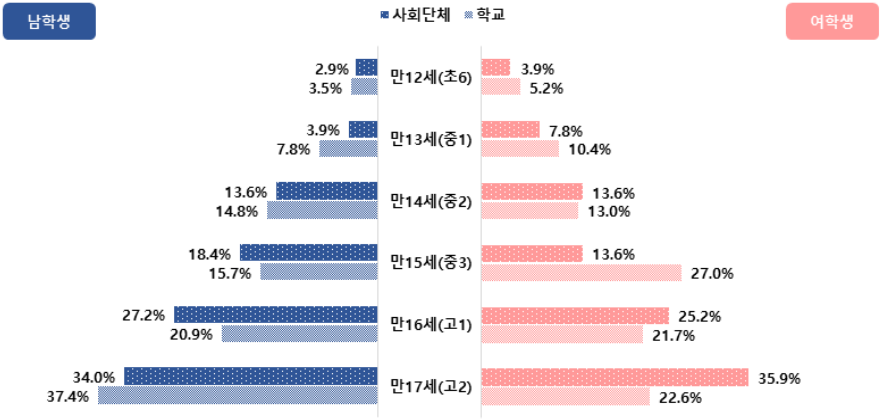


그림 III-48 전문가 소속별 성적 욕구를 알아차리고 조절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의 연령 추정 분포

전문가 소속별로, 자신의 성적 욕구를 알고 이를 조절하는 능력이 있을 것 같은 아동·청소년의 연령을 추정한 결과는 [그림 III-48]과 같다. 사회단체 소속 전문가는 남학생의 경우 만 17세(고2)(34.0%), 만 16세(고1)(27.2%), 만 15세(중3)(18.4%) 순으로, 여학생의 경우 만 17세(고2)(35.9%), 만 16세(고1)(25.2%), 만 14세(중2) 및 만 15세(중3)(13.6%) 순으로 자신의 성적 욕구를 알고 조절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반면 학교 소속 전문가는 남학생의 경우 만 17세(고2)(37.4%), 만 16세(고1)(20.9%), 만 15세(중3)(15.7%) 순으로, 여학생의 경우 만 15세(중3)(27.0%), 만 17세(고2)(22.6%), 만 16세(고1)(21.7%) 순으로 해당 연령을 추정하였다. 전문가 소속별 연령 추정 결과를 살펴보면, 사회단체 소속 전문가의 경우 가장 많은 수가 남학생/여학생 모두 만 17세(고2)를 자신의 성적

욕구를 알아차리고 스스로 조절 가능한 연령으로 추정하였다. 반면 학교 소속 전문가의 경우 남학생은 만 17세(고2), 여학생은 만 15세(중3)를 해당 연령으로 추정한 응답이 가장 많았다.

⑥ 원하지 않는 성관계에 대한 단호한 언어적 표현

표 III-27 남녀학생별 원하지 않는 성관계에 대해 단호한 언어적 표현을 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의 연령 추정 분포

	남학생			여학생		
	빈도	퍼센트	누적 퍼센트	빈도	퍼센트	누적 퍼센트
만 12세(초6)	15	6.9	6.9	17	7.8	7.8
만 13세(중1)	16	7.3	14.2	15	6.9	14.7
만 14세(중2)	25	11.5	25.7	31	14.2	28.9
만 15세(중3)	36	16.5	42.2	45	20.6	49.5
만 16세(고1)	57	26.1	68.3	39	17.9	67.4
만 17세(고2)	69	31.7	100.0	71	32.6	100.0
합계	218	100.0		218	100.0	

원하지 않는 성관계에 대해 단호한 언어적 표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아동·청소년의 연령 추정 결과는 [표 III-27]과 같다. 남학생의 경우는 만 17세(고2)(31.7%), 만 16세(고1)(26.1%), 만 15세(중3)(16.5%) 순으로 원하지 않는 성관계에 대해 단호한 언어적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여학생의 경우 만 17세(고2)(32.6%), 만 15세(중3)(20.6%), 만 16세(고1)(17.9%) 순으로 추정되었다. 성별 연령 추정 결과를 살펴보면, 평가에 참여한 전문가의 70% 이상이 원하지 않는 성관계에 대해 단호하게 언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연령을 만 15세(중3)에서 만 17세(고2)로 추정하였으며, 그중 해당 연령이 남학생/여학생 모두 만 17세(고2)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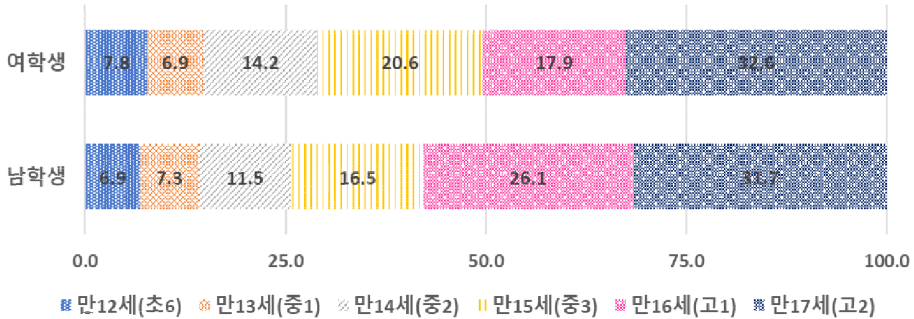


그림 III-49 남녀학생별 원하지 않는 성관계에 대해 단호한 언어적 표현을 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의 연령 추정 분포

이를 종합하여, 원하지 않는 성관계에 대해 단호한 언어적 표현을 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의 연령 추정 분포를 누적빈도(%)로 확인하였다. [표 III-27]에서 나타내는 것과 같이 남학생의 경우 만 12세(초6) 이상은 6.9%, 만 13세(중1) 이상은 14.2%, 만 14세(중2) 이상은 25.7%, 만 15세(중3) 이상은 42.2%, 만 16세(고1) 이상은 68.3%의 전문가가 해당 연령의 아동·청소년이 원하지 않는 성관계에 대해 단호함을 언어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여학생의 경우는 만 12세(초6) 이상은 7.8%, 만 13세(중1) 이상은 14.7%, 만 14세(중2) 이상은 28.9%, 만 15세(중3) 이상은 49.5%, 만 16세(고1) 이상은 67.4%의 전문가가 원하지 않는 성관계에 대한 단호함을 언어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결론적으로 전문가들은 남학생과 여학생이 비슷한 연령에서 원하지 않는 성관계에 대한 단호함을 언어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그림 III-49]. 즉, 약 50%의 전문가들은 만 16세(고1) 이상이면 원하지 않는 성관계에 대한 단호함을 언어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였고, 또 75% 이상의 전문가들은 만 17세(고2) 이상은 되어야 이와 같은 의사표현이 가능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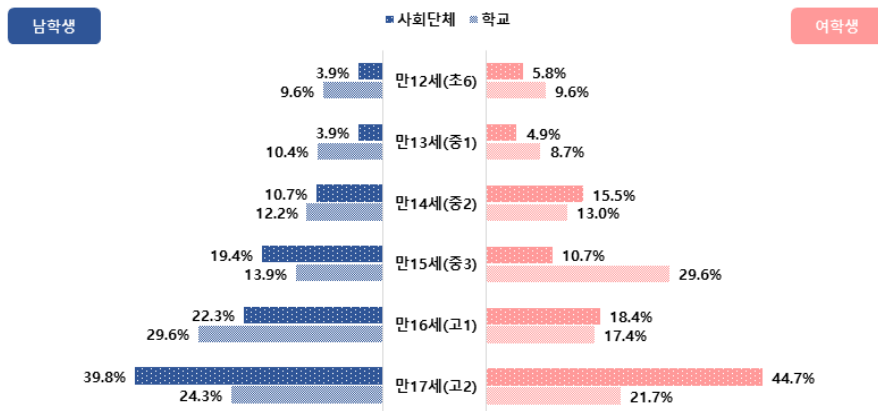


그림 III-50 전문가 소속별 원하지 않는 성관계에 대한 단호한 언어적 표현을 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의 연령 추정 분포

전문가 소속별로, 원하지 않는 성관계에 대해 단호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의 연령을 추정한 결과는 [그림 III-50]과 같다. 사회단체 소속 전문가는 남학생의 경우 만 17세(고2)(39.8%), 만 16세(고1)(22.3%), 만 15세(중3)(19.4%) 순으로, 여학생의 경우 만 17세(고2)(44.7%), 만 16세(고1)(18.4%), 만 14세(중2)(15.5%) 순으로 원하지 않는 성관계에 대해 단호하게 언어적 표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반면 학교 소속 전문가는 남학생의 경우 만 16세(고1)(29.6%), 만 17세(고2)(24.3%), 만 15세(중3)(13.9%) 순으로, 여학생의 경우 만 15세(중3)(29.6%), 만 17세(고2)(21.7%), 만 16세(고1)(17.4%) 순으로 해당 연령을 추정하였다. 전문가 소속별 연령 추정 결과를 살펴보면, 사회단체 소속 전문가의 경우 가장 많은 수가 남학생/여학생 모두 만 17세(고2)를 원하지 않는 성관계에 대해 단호한 언어적 표현이 가능한 연령으로 추정하였다. 반면 학교 소속 전문가의 경우 해당 연령을 남학생은 만 16세(고1), 여학생은 만 15세(중3)로 추정한 응답이 가장 많았다.

⑦ 성관계 후 임신에 대한 대처능력

표 Ⅲ-28 남녀학생별 성관계 후 임신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의 연령 추정 분포

	남학생			여학생		
	빈도	퍼센트	누적 퍼센트	빈도	퍼센트	누적 퍼센트
만 12세(초6)	4	1.8	1.8	7	3.2	3.2
만 13세(중1)	4	1.8	3.7	6	2.8	6.0
만 14세(중2)	10	4.6	8.3	16	7.3	13.3
만 15세(중3)	18	8.3	16.5	28	12.8	26.1
만 16세(고1)	33	15.1	31.7	58	26.6	52.8
만 17세(고2)	149	68.3	100.0	103	47.2	100.0
합계	218	100.0		218	100.0	

성관계 후 (여자친구가) 임신을 하게 되었을 때 대처 방법을 알고 충분히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아동·청소년의 연령 추정 결과는 [표 Ⅲ-28]과 같다. 남·여학생 모두 만 17세(고2), 만 16세(고1), 만 15세(중3) 순으로 성관계 후 임신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남학생: 만 17세(고2) 68.3% > 만 16세(고1) 15.1% > 만 15세(중3) 8.3%, 여학생: 만 17세(고2) 47.2% > 만 16세(고1) 26.6% > 만 15세(중3) 12.8%). 성별 연령 추정 결과를 살펴보면, 평가에 참여한 전문가의 70% 이상이 성관계 후 본인 또는 여자친구가 임신을 하게 되었을 때 대처 능력이 있는 연령을 만 16세(고1)에서 만 17세(고2)로 추정하였으며, 그중 해당 연령이 남녀학생 모두 만 17세(고2)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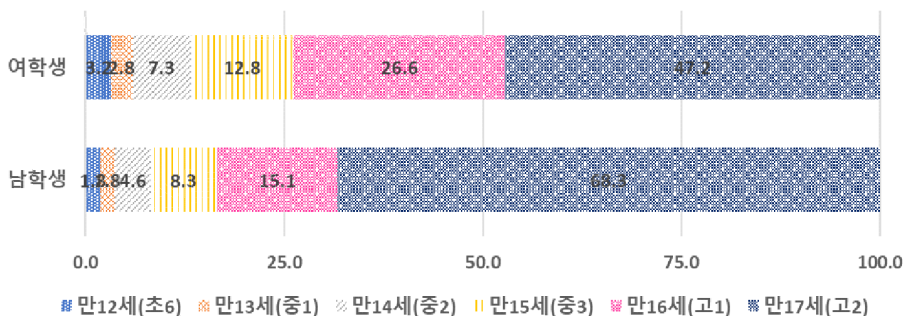


그림 III-51 남녀학생별 성관계 후 임신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의 연령 추정 분포

이를 종합하여, 성관계 후 (여자친구가) 임신을 하게 되었을 때 대처 능력이 있는 아동·청소년의 연령 추정 분포를 누적빈도(%)로 확인하였다. [표 III-28]에서 나타내는 것과 같이 남학생의 경우 만 12세(초6) 이상은 1.8%, 만 13세(중1) 이상은 3.7%, 만 14세(중2) 이상은 8.3%, 만 15세(중3) 이상은 16.5%, 만 16세(고1) 이상은 31.7%의 전문가가 해당 연령의 아동·청소년이 성관계 후 (여자친구가) 임신을 하게 되었을 때 대처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여학생의 경우는 만 12세(초6) 이상은 3.2%, 만 13세(중1) 이상은 6.0%, 만 14세(중2) 이상은 13.3%, 만 15세(중3) 이상은 26.1%, 만 16세(고1) 이상은 52.8%의 전문가가 성관계 후 (여자친구가) 임신을 하게 되었을 때 대처 능력이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결과적으로 전문가들은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하여 이른 나이에 성관계 후 (여자친구가) 임신을 하게 되었을 때 대처 능력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그림 III-51). 즉, 50% 이상의 전문가들은 남학생의 경우 만 17세(고2) 이후에나 여자친구가 임신을 하게 되었을 때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였고, 여학생의 경우는 만 16세(고1) 이후에는 임신을 하게 되었을 때 스스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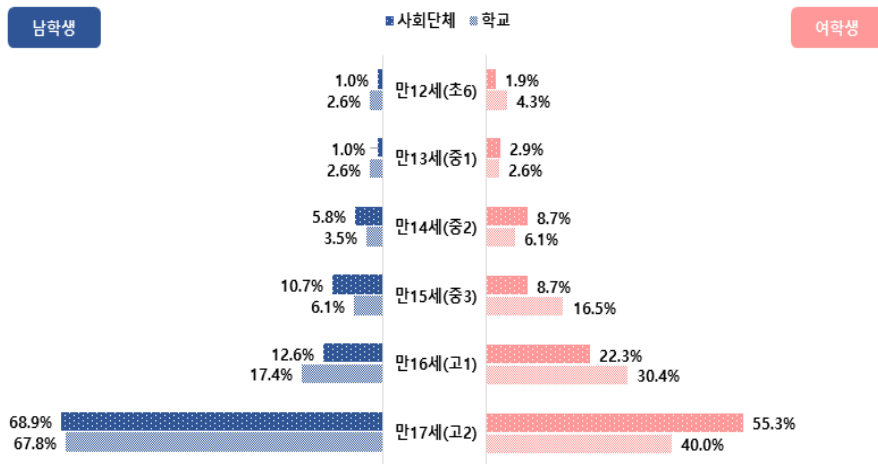


그림 III-52 전문가 소속별 성관계 후 임신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의 연령 추정

전문가 소속별로, 임신에 대처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의 연령을 추정한 결과는 [그림 III-52]와 같다. 사회단체 소속 전문가는 남학생의 경우 만 17세(고2)(68.9%), 만 16세(고1)(12.6%), 만 15세(중3)(10.7%) 순으로, 여학생의 경우 만 17세(고2)(55.3%), 만 16세(고1)(22.3%), 만 14세(중2) 및 만 15세(중3)(8.7%) 순으로 성관계 후 임신에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반면 학교 소속 전문가는 남학생의 경우 만 17세(고2)(67.8%), 만 16세(고1)(17.4%), 만 15세(중3)(6.1%) 순으로, 여학생의 경우 만 17세(고2)(40.0%), 만 16세(고1)(30.4%), 만 15세(중3)(16.5%) 순으로 해당 연령을 추정하였다. 전문가 소속별 연령 추정 결과를 살펴보면, 사회단체 소속 전문가와 학교 소속 전문가 모두 남학생/여학생이 만 17세(고2)에는 임신 대처 방법을 알고 대처 능력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⑧ 신체접촉 관련 요구에 대해 통제할 수 없음의 인식 및 조절

표 III-29 남녀학생별 이성 친구의 신체접촉 관련 요구에 대해 통제할 수 없음을
인식/조절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의 연령 추정 분포

	남학생			여학생		
	빈도	퍼센트	누적 퍼센트	빈도	퍼센트	누적 퍼센트
만 12세(초6)	7	3.2	3.2	8	3.7	3.7
만 13세(중1)	10	4.6	7.8	21	9.6	13.3
만 14세(중2)	22	10.1	17.9	29	13.3	26.6
만 15세(중3)	38	17.4	35.3	51	23.4	50.0
만 16세(고1)	52	23.9	59.2	49	22.5	72.5
만 17세(고2)	89	40.8	100.0	60	27.5	100.0
합계	218	100.0		218	100.0	

이성 친구가 신체적인 접촉에 대한 제안을 할 때 분위기나 상대방과의 관계를 지속하고 싶음 등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자신의 의사결정을 통제할 수 없음을 알고 사전에 그러한 상황을 조절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아동·청소년의 연령 추정 결과는 [표 III-29]와 같다. 남학생의 경우는 만 17세(고2)(40.8%), 만 16세(고1)(23.9%), 만 15세(중3)(17.4%) 순으로 이성 친구의 신체접촉 관련 요구에 대해 통제할 수 없음을 알고 사전에 그러한 상황을 조절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여학생의 경우는 만 17세(고2)(27.5%), 만 15세(중3)(23.4%), 만 16세(고1)(22.5%) 순으로 추정되었다. 성별 연령 추정 결과를 살펴보면, 평가에 참여한 전문가의 70% 이상이 이성친구의 신체접촉 제안 시 자신의 의사결정을 통제할 수 없음을 인식하고 사전에 그 상황을 조절할 수 있는 연령을 만 15세(중3)에서 만 17세(고2)로 추정하였으며, 그중 해당 연령이 남학생/여학생 모두 만 17세(고2)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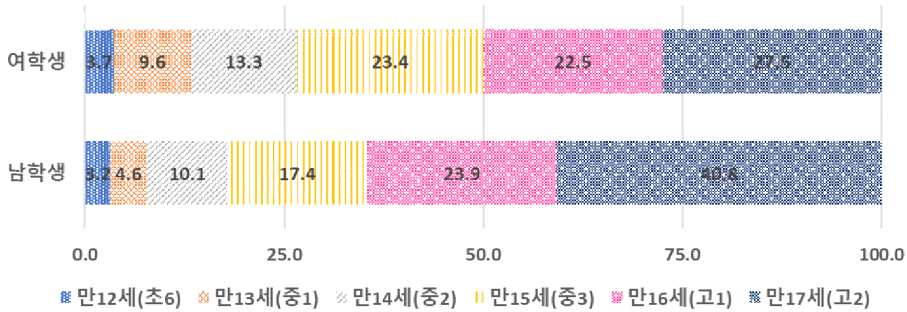


그림 III-53 남녀학생별 이성 친구의 신체접촉 관련 요구에 대해 통제할 수 없음을 인식/조절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의 연령 추정

이를 종합하여, 이성 친구의 신체 접촉 관련 요구에 대해 소신 있게 자신의 의사를 밝힐 수 없을 수도 있음을 사전에 인식하고 이 상황을 통제하거나 조절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의 연령 추정 분포를 누적빈도(%)로 확인하였다. [표 III-29]에서 나타내는 것과 같이 남학생의 경우 만 12세(초6) 이상은 3.2%, 만 13세(중1) 이상은 7.8%, 만 14세(중2) 이상은 17.9%, 만 15세(중3) 이상은 35.3%, 만 16세(고1) 이상은 59.2%의 전문가가 해당 연령의 남학생이 여자친구가 신체접촉을 요구한다면 거절하기 어려울 수도 있음을 알고 이에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여학생의 경우는 만 12세(초6) 이상은 3.7%, 만 13세(중1) 이상은 13.3%, 만 14세(중2) 이상은 26.6%, 만 15세(중3) 이상은 50.0%, 만 16세(고1) 이상은 72.5%의 전문가가 남자 친구가 신체 접촉을 요구할 때 이를 통제할 수 없음을 사전에 알고 그러한 상황을 적절히 조절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결과적으로 전문가들은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하여 이른 나이에 이성 친구가 신체 접촉을 요구할 때 이를 통제할 수 없음을 알고 이와 관련된 상황을 조절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그림III-53]. 즉, 약 50%의 전문가들은 여학생의 경우는 만 15세(중3) 이상이면 이와 같은 상황을 인지하고 사전에 조절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한 반면, 남학생의 경우는 만 16세(고1) 이후에 이와 같은 인식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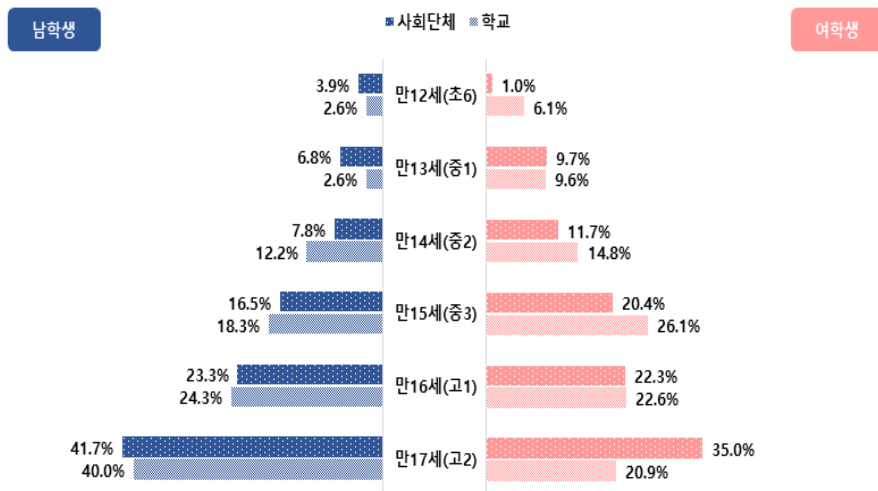


그림 III-54 전문가 소속별 이성 친구의 신체접촉 관련 요구에 대해 통제할 수 없음을 인식/조절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의 연령 추정

전문가 소속별로, 아동·청소년의 연령을 추정한 결과는 [그림 III-54]와 같다. 사회단체 소속 전문가는 남학생의 경우 만 17세(고2)(41.7%), 만 16세(고1)(23.3%), 만 15세(중3)(16.5%) 순으로, 여학생의 경우 만 17세(고2)(35.0%), 만 16세(고1)(22.3%), 만 15세(중3)(20.4%) 순으로 이성 친구의 신체접촉 관련 요구에 통제할 수 없음을 인식하고 사전에 그러한 상황을 조절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반면 학교 소속 전문가는 남학생의 경우 만 17세(고2)(40.0%), 만 16세(고1)(24.3%), 만 15세(중3)(18.3%) 순으로, 여학생의 경우 만 15세(중3)(26.1%), 만 16세(고1)(22.6%), 만 17세(고2)(20.9%) 순으로 해당 연령을 추정하였다. 전문가 소속별 연령 추정 결과를 살펴보면, 사회단체 소속 전문가의 경우 가장 많은 수가 남학생/여학생 모두 만 17세(고2)가 이성친구의 신체접촉 요구 시 통제할 수 없음을 인식하고 사전에 그러한 상황을 조절할 수 있는 연령이라고 추정하였다. 반면 학교 소속 전문가의 경우 해당 연령이 남학생은 만 17세(고2), 여학생은 만 15세(중3)라고 추정한 응답이 가장 많았다.

⑨ 성적 의사결정이 가져올 결과에 대한 예상

표 III-30 남녀학생별 성적 의사결정이 가져올 결과에 대한 예상이 충분히 가능한
아동·청소년의 연령 추정 분포

	남학생			여학생		
	빈도	퍼센트	누적 퍼센트	빈도	퍼센트	누적 퍼센트
만 12세(초6)	6	2.8	2.8	13	6.0	6.0
만 13세(중1)	23	10.6	13.3	26	11.9	17.9
만 14세(중2)	22	10.1	23.4	36	16.5	34.4
만 15세(중3)	40	18.3	41.7	61	28.0	62.4
만 16세(고1)	56	25.7	67.4	40	18.3	80.7
만 17세(고2)	71	32.6	100.0	42	19.3	100.0
합계	218	100.0		218	100.0	

자신의 성적 행동에 대한 의사결정이 가져올 결과에 대해 짐작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아동·청소년의 연령 추정 결과는 [표 III-30]과 같다. 남학생의 경우는 만 17세(고2)(32.6%), 만 16세(고1)(25.7%), 만 15세(중3)(18.3%) 순으로 성적 의사결정이 가져올 결과에 대한 예상이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여학생의 경우는 만 15세(중3)(28.0%), 만 17세(고2)(19.3%), 만 16세(고1)(18.3%) 순으로 추정되었다. 성별 연령 추정 결과를 살펴보면, 성적 행동에 대한 의사결정이 가져올 결과를 짐작할 수 있는 연령에 대해 남학생의 경우 만 17세(고2)라는 응답이, 여학생의 경우 만 15세(중3)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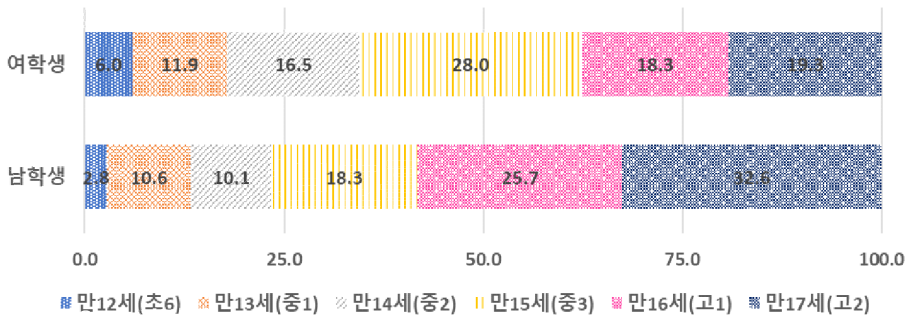


그림 III-55 남녀학생별 성적 의사결정이 가져올 결과에 대한 예상이 충분히 가능한 아동·청소년의 연령 추정 분포

이를 종합하여, 자신의 성적 행동에 대한 의사결정이 가져올 결과에 대해 짐작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의 연령 추정 분포를 누적빈도(%)로 확인하였다. [표 III-30]에서 나타내는 것과 같이 남학생의 경우 만 12세(초6) 이상은 2.8%, 만 13세(중1) 이상은 13.3%, 만 14세(중2) 이상은 23.4%, 만 15세(중3) 이상은 41.7%, 만 16세(고1) 이상은 67.4%의 전문가가 해당 연령의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성적 행동에 대한 의사결정이 가져올 결과에 대해 짐작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여학생의 경우는 만 12세(초6) 이상은 6.0%, 만 13세(중1) 이상은 17.9%, 만 14세(중2) 이상은 34.4%, 만 15세(중3) 이상은 62.4%, 만 16세(중3) 이상은 80.7%의 전문가가 자신의 성적 행동에 대한 의사결정이 가져올 결과에 대해 짐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결과적으로 [그림 III-55]와 같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상대적으로 이른 나이에 자신의 성적 행동에 대한 의사결정이 가져올 결과에 대해 짐작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다시 말해서 대략 50%의 전문가들은 여학생의 경우 만 15세(중3) 이상이면 자신의 성적 행동이 가져올 결과에 대해 짐작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한 반면에, 남학생의 경우는 만 16세(고1) 이후에나 이와 같은 인식이 가능할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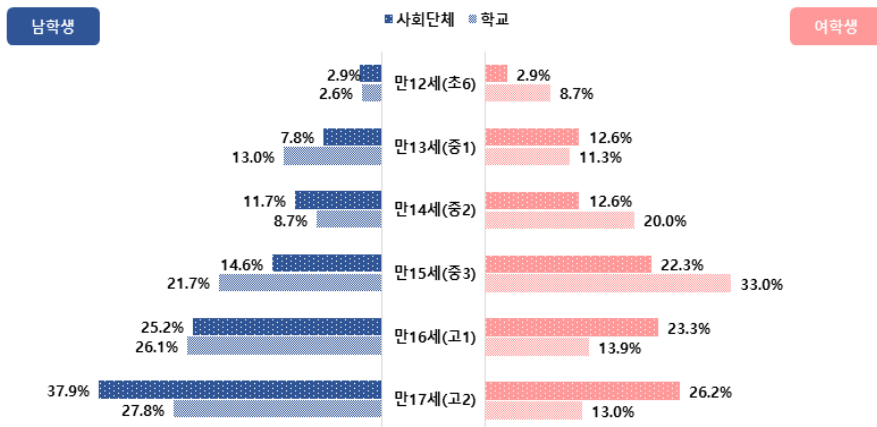


그림 III-56 전문가 소속별 성적 의사결정이 가져올 결과에 대한 예상이 충분히 가능한
아동·청소년의 연령 추정 분포

전문가 소속별로, 자신의 성적 행동에 대한 의사결정이 가져올 결과에 대해 짐작할 수 있는 연령을 추정한 결과는 [그림 III-56]과 같다. 사회단체 소속 전문가는 남학생의 경우 만 17세(고2)(37.9%), 만 16세(고1)(25.2%), 만 15세(중3)(14.6%) 순으로, 여학생의 경우 만 17세(고2)(26.2%), 만 15세(중3) 및 만 16세(고1)(22.3%) 순으로 성적 의사결정이 가져올 결과에 대한 예상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반면 학교 소속 전문가는 남학생의 경우 만 17세(고2)(27.8%), 만 16세(고1)(26.1%), 만 15세(중3)(21.7%) 순으로, 여학생의 경우 만 15세(중3)(33.0%), 만 14세(중2)(20.0%), 만 16세(고1)(13.9%) 순으로 해당 연령을 추정하였다. 전문가 소속별 연령 추정 결과를 살펴보면, 사회단체 소속 전문가의 경우 가장 많은 수가 남학생/여학생 모두 만 17세(고2)를 자신의 성적 행동에 대한 의사결정으로 인한 결과를 짐작할 수 있는 연령으로 추정하였다. 반면 학교 소속 전문가의 경우 해당 연령을 남학생은 만 17세(고2), 여학생은 만 15세(중3)로 추정한 응답이 가장 많았다.

⑩ 성적 의사결정에 대한 권리 인식

표 III-31 남녀학생별 성적 의사결정에 대한 권리가 자신에게 있음을 인지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의 연령 추정 분포

	남학생			여학생		
	빈도	퍼센트	누적 퍼센트	빈도	퍼센트	누적 퍼센트
만 12세(초6)	17	7.8	7.8	12	5.5	5.5
만 13세(중1)	28	12.8	20.6	26	11.9	17.4
만 14세(중2)	34	15.6	36.2	25	11.5	28.9
만 15세(중3)	42	19.3	55.5	39	17.9	46.8
만 16세(고1)	39	17.9	73.4	38	17.4	64.2
만 17세(고2)	58	26.6	100.0	78	35.8	100.0
합계	218	100.0		218	100.0	

자신의 성적인 행동에 대한 의사결정 권리가 자신에게 있음을 알고 실천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아동·청소년의 연령 추정 결과는 [표 III-31]과 같다. 남학생의 경우는 만 17세(고2)(35.8%), 만 15세(중3)(17.9%), 만 16세(고1)(17.4%) 순으로 성적 의사결정에 대한 권리가 자신에게 있음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여학생의 경우는 만 17세(고2)(26.6%), 만 15세(중3)(19.3%), 만 16세(고1)(17.9%) 순으로 추정되었다. 성별 연령 추정 결과를 살펴보면, 자신의 성적 행동에 대한 의사결정 권리가 자신에게 있음을 인지하고 실천할 수 있는 연령에 대해 남학생/여학생 모두 만 17세(고2)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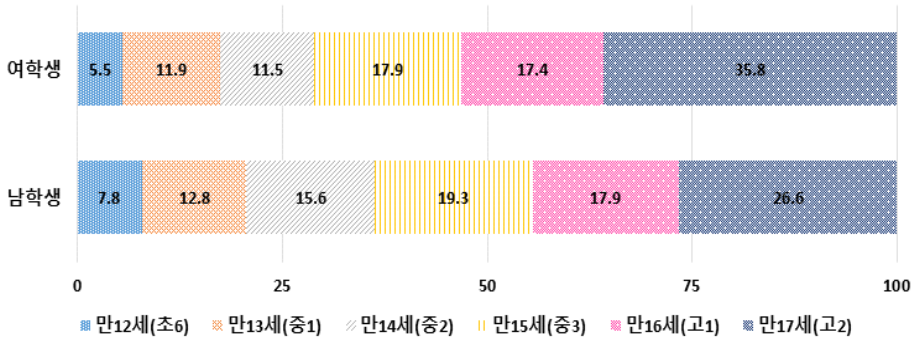


그림 III-57 남녀학생별 성적 의사결정에 대한 권리가 자신에게 있음을 인지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의 연령 추정 분포

한편, 자신의 성적인 행동에 대한 의사결정 권리가 자신에게 있음을 알고 실천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의 연령 추정 분포를 누적빈도(%)로 종합하여 확인하였다. [표 III-31]에서 나타내는 것과 같이 남학생의 경우 만 12세(초6) 이상은 7.8%, 만 13세(중1) 이상은 20.6%, 만 14세(중2) 이상은 36.2%, 만 15세(중3) 이상은 55.5%, 만 16세(고1) 이상은 73.4%의 전문가가 해당 연령의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성적인 행동에 대한 의사결정 권리가 자신에게 있음을 알고 실천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여학생의 경우는 만 12세(초6) 이상은 5.5%, 만 13세(중1) 이상은 17.4%, 만 14세(중2) 이상은 28.9%, 만 15세(중3) 이상은 46.8%, 만 16세(고1) 이상은 64.8%의 전문가가 자신의 성적인 행동에 대한 의사결정 권리가 자신에게 있음을 알고 실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결과적으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상대적으로 이른 나이에 자신의 성적인 행동에 대한 의사결정 권리가 자신에게 있음을 알고 실천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그림 III-57]. 즉, 약 50%의 전문가들이 여학생은 만 16세(고1) 이후면 자신의 성적인 행동에 대한 의사결정의 권리가 자신에게 있음을 알고 실제로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였고, 남학생은 만 15세(중3) 이후에나 이를 실천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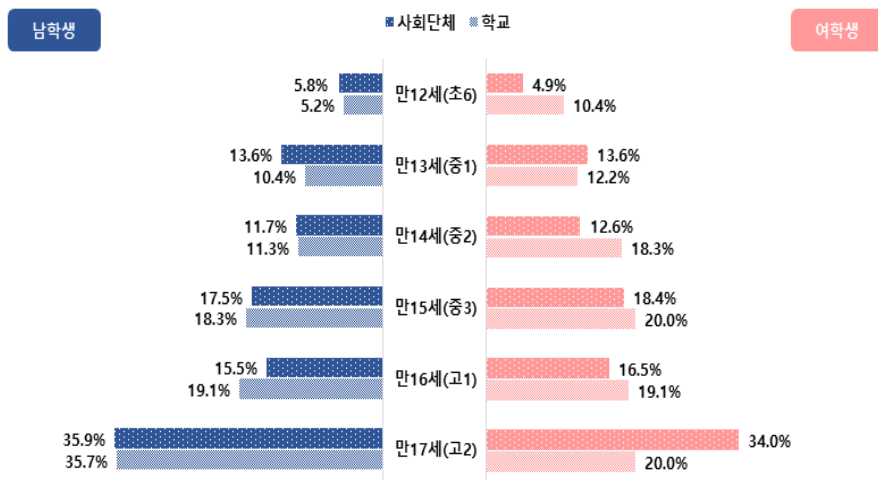


그림 III-58 전문가 소속별 성적 의사결정에 대한 권리가 자신에게 있음을 인지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의 연령 추정 분포

전문가 소속별로, 자신의 성적인 행동에 대한 의사결정 권리가 자신에게 있음을 알고 실천할 수 있는 연령을 추정한 결과는 [그림 III-58]과 같다. 사회단체 소속 전문가는 남학생의 경우 만 17세(고2)(35.9%), 만 15세(중3)(17.5%), 만 16세(고1)(15.5%) 순으로, 여학생의 경우 만 17세(고2)(34.0%), 만 15세(중3)(18.4%), 만 16세(고1)(16.5%) 순으로 성적 의사결정에 대한 권리가 자신에게 있음을 알고 실천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반면 학교 소속 전문가는 남학생의 경우 만 17세(고2)(35.7%), 만 16세(고1)(19.1%), 만 15세(중3)(18.3%) 순으로, 여학생의 경우 만 15세(중3) 및 만 17세(고2)(20.0%), 만 16세(고1)(19.1%) 순으로 해당 연령을 추정하였다. 전문가 소속별 연령 추정 결과를 살펴보면, 사회단체 소속 전문가의 경우 가장 많은 수가 남학생/여학생 모두 만 17세(고2)를 성적 행동에 대한 의사결정으로 인한 결과를 짐작할 수 있는 연령으로 추정하였다. 반면 학교 소속 전문가의 경우는 해당 연령을 남학생은 만 17세(고2), 여학생은 만 15세(중3) 및 만 17세(고2)로 추정한 응답이 가장 많았다.

⑪ 소결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 결정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성적 자율성에 관한 전문가들의 추정연령을 누적 분포 히스토그램으로 나타내면 [그림 III-59]와 같다. 성적 자율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자유로운 의사 표현 능력, 성관계 후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상(예방)과 대처 능력 등이 가능한 연령을 추정한 결과이다. 전반적으로 성적 자율성에 관한 추정 연령은 여학생과 남학생 간에 차이가 있었다. 전문가들은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하여 어린 나이에 성적 자율성을 펼칠 수 있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대략 전문가 50%의 추정 연령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여학생의 경우는 만 15세(중3) 혹은 만 16세(고1) 이후에, 남학생의 경우는 만 15세(중3), 만 16세(고1), 혹은 만 17세(고2) 이후에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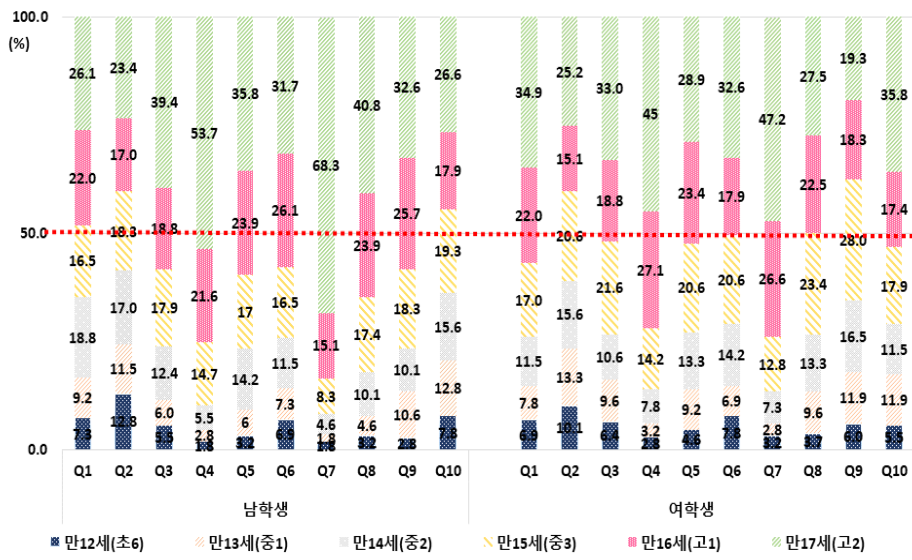


그림 III-59 성적 자율성에 관한 아동·청소년의 연령 추정 누적 분포

Note. Q1 성행위에 대한 자기 생각 표현능력, Q2 원하지 않는 성적 행동에 대한 언어적 표현능력, Q3 안전한 성관계에 관한 대화 능력, Q4 성병 예방에 대한 의사소통능력, Q5 자신의 성적인 욕구를 알고 조절하는 능력, Q6 원하지 않는 성관계에 대한 단호한 언어적 표현, Q7 성관계 후 임신에 대한 대처 능력, Q8 이성 친구의 신체접촉 관련 요구에 대해 통제할 수 없음을 인식하고 조절, Q9 성적 의사결정이 가져올 결과에 대한 예상, Q10 성적 의사결정에 대한 권리 인식

성적 자율성을 충분히 나타낼 수 있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와 관련하여, 성적인 행동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 임신이나 성병 등에 대한 대처 능력이 남녀학생 모두 만 16세(고1)나 만 17세(고2)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전문가의 50% 이상이 추정하고 있다.

4) 아동·청소년들의 성관계 경험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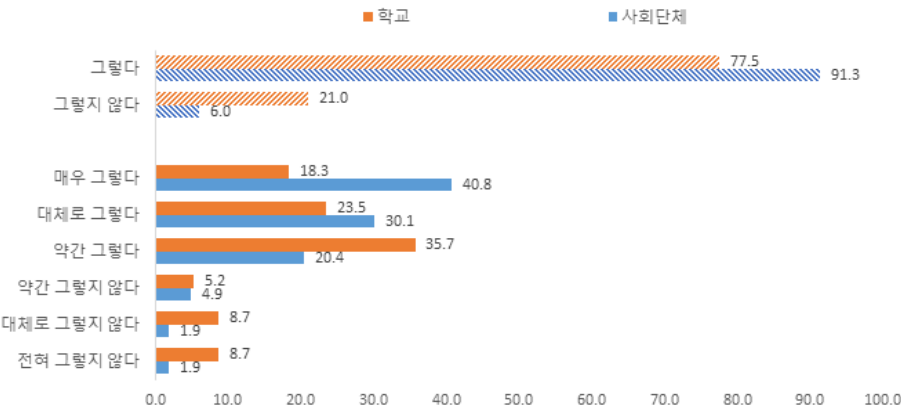


그림 III-60 만 17세 이하 아동·청소년의 성관계 허용에 대한 전문가 의견(%)

[그림 III-60]은 만 17세 이하 아동·청소년의 성관계 허용에 대한 전문가 개인의 동의 정도를 나타낸 것이다. 결과를 보면, 사회단체 소속의 전문가들은 40.8%가 “매우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학교 소속의 전문가들은 18.3%가 “매우 그렇다”로 응답하여 소속 기관에 따라 동의의 정도에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동의의 강도에는 차이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두 집단의 전문가들 모두 17세 이하 아동·청소년의 성관계에 대해 매우 허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학교 소속 전문가, 77.5%; 사회단체 소속 전문가 91.3%).

추가적으로 이와 같이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 서술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III- 32]와 같다. 17세 이하 아동·청소년의 성관계 경험에 대한 전문가 개개인의 의견을 요약하면, 사회의 변화로 인해 아동·청소년들이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이성교제를 간접적으로 경험하기도 하고 또 실제로 자연스러운 이성교제를 경험하게 될 것이기에 허용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과, 이성에 대한 호기심은 사춘기 동안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발달적 과업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다수 제시되었다. 이외에 아동·청소년을 성인과 동일한 성적인 주체로 그들의 성적 자기결정 능력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의견, 그리고 현장에서 이미 경험을 한 아동·청소년을 만났기 때문에 이들의 성관계 경험을 인정하고 허용한다는 의견 등이 있었다.

표 III-32 서술된 만 17세 이하 아동·청소년의 성관계를 개인적으로 허용하는 이유

만 17세 이하 아동·청소년의 성관계를 개인적으로 허용하는 이유
만 17세 이하의 아동·청소년도 성인과 같은 성적 주체로 보는 관점(24건)
호기심이나 타인에게 종속되어 경험하게 될 것으로 보는 관점(34건)
사회적인 변화가 경험을 쉽게 할 수 있게 했다고 보는 관점(46건)
형장 경험을 통해 이미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을 많이 알게 되었다는 관점(19건)

한편, 17세 이하 아동·청소년의 성관계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으로는, 17세 이하의 아동·청소년은 아직 신체적, 정신적으로 성숙한 존재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성관계 후 직면하게 될 일들에 대한 책임을 지기 어렵기 때문에 허용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17세 이하 아동·청소년의 성관계 경험은 자의적이라기보다 대체로 폭력에 의해 혹은 상황적으로 자신을 조절하지 못해서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소수의 의견도 있었다.

5) 만 17세 이하 청소년의 성관계에 대한 사회적 허용에 대한 의견

아동·청소년의 성과 관련된 전문가들은 우리 사회가 만 17세 이하 청소년의 성관계에 대해서 허용적이지 않다는 의견이 대다수를 이루었다(학교 소속, 83.4%; 사회단체 소속, 69.0%). 결과적으로 앞서 서술하였던 전문가들의 개인적인 생각과는 사뭇 차이가 나는 응답으로, 자신들은 우리 아동·청소년의 성관계에 대해 허용적인 태도를 취하는 반면 그들이 평가하는 우리 사회는 아동·청소년의 성관계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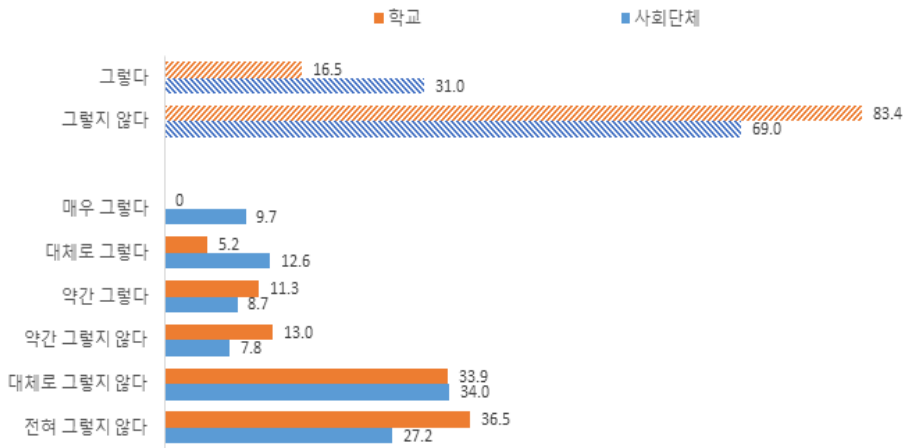


그림 III-61 만 17세 이하 청소년의 성관계에 대한 사회적 허용(%)

이에 우리 사회가 만 17세 이하 아동·청소년의 성관계를 허용하지 않는 이유로, 우리 사회의 통념이 아직 아동·청소년을 성의 주체자가 아니라 미성숙한 존재로 간주하며, 아동·청소년에게는 성과 관련된 행동 이전에 해야 할 과업들이 많다는 사회적 통념이 팽배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 가장 많았다. 또 빠른 성관계 경험은 학업 중단이나 건강상의 문제를 야기하며 미혼부모로 인한 사회적인 책임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이들의 성관계에 대해 허용적이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표 III-33 서술된 만 17세 이하 아동·청소년의 성관계를 우리 사회가 허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이유

우리 사회가 만 17세 이하 청소년의 성관계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이유
우리 사회가 아동·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보호의 대상으로만 보기 때문(42건)
성에 대한 폐쇄적인 사회적 통념 때문(49건)
사회에서 부담해야 하는 이차적인 문제들 때문(22건)

반면에 우리 사회가 이들 아동·청소년의 성관계를 허용한다고 보는 이유로는 우리 사회가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인정해서라는 소수의 의견과 전반적인 사회의 분위기가 아동·청소년의 성에 대한 태도에 맞춰 변화하였기 때문이라는 설명이 있었다.

표 III-34 서술된 만 17세 이하 아동·청소년의 성관계를 우리 사회가 허용한다고 생각하는 이유

우리 사회가 만 17세 이하 청소년의 성관계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이유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존중(6건)
실제 상황에 대한 자연스러운 인식(23건)

6) 의제강간죄 성립 연령인 만 13세에 대한 아동·청소년 성 전문가들의 의견

현행 형법의 의제강간죄에 의해서 규정된 “만 13세”의 적절성에 대해 과반수(56.9%)가 이 연령을 “높여야 한다”로 응답하였고, 이어서 해당 연령을 “더 낮춰야 한다”는 의견(23.4%), 그리고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19.7%) 순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만한 것은 사회단체에 소속된 전문가들의 경우는 반수가 훨씬 넘는 69.9%가 해당 연령을 높여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에 학교 소속의 전문가들은 반수에도 못 미치는 단 45.2%만이 만 13세보다 높여야 한다고 응답하였다[그림 III-62].

추가적으로 현행 의제강간죄 적용 연령인 “만 13세 미만”보다 낮출 경우 적정 연령을 묻는 질문에 대해 가장 많은 전문가들이 10세를 지목하였다. 반면에 해당 연령을 높일 경우에는 18세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이어서 17세, 16세, 19세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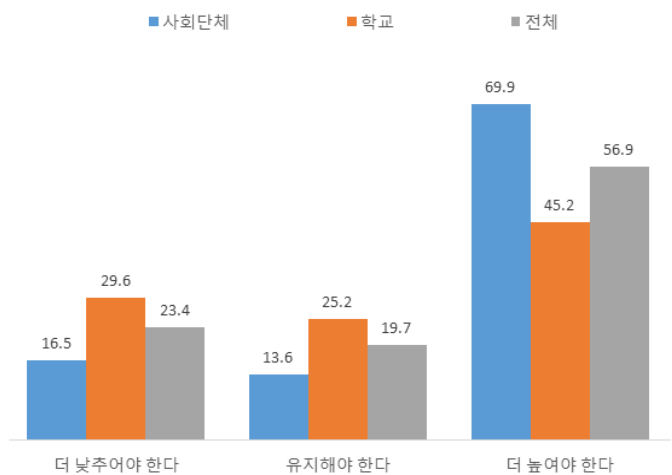


그림 III-62 성관계 이유와 목적에 대한 인지가 충분히 가능한 아동·청소년의 나이 추정(%)

표 III-35 현행 의제강간죄 상한 연령인 만 13세를 낮출 경우, 혹은 높일 경우의 적정 연령

하향연령	0세	1세	5세	7세	8세	10세	11세	12세	합 계
사회단체	0	1	0	0	1	8	2	5	17
학 교	1	0	1	1	2	12	9	8	34
합 계	1	1	1	1	3	20	11	13	51
상향연령	14세	15세	16세	17세	18세	19세	20세	24세	합 계
사회단체	1	2	16	18	21	9	4	1	72
학 교	0	9	9	11	10	12	1	0	52
합 계	1	11	25	29	31	21	5	1	124

3. 요약 및 시사점

이 연구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를 위한 연령 조정과 관련하여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이들의 성적 자기 결정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그 평가에 필요한 하위요인을 탐색하고 관련 대표 문항을 선별하였다. 또, 초·중·고등학교의 담임교사와 성교육 전담교사 및 성 상담 전담교사, 그리고 사회단체 소속의 성교육 전문가와 성 상담자들을 섭외하여, 각 대표 문항에 대해 자신들의 경험에 비추어 해당 내용을 아동·청소년이 알고 있거나 이를 실제 자신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나이를 평가하도록 요청하였다. [표 III-36]은 그 결과를 요약하여 각 하위요인의 대표 문항별로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보인 연령의 빈도수를 세어 나타낸 것이다.

표 III-36 성적 자기 결정 능력에 대한 50% 전문가들의 추정 연령

	남학생						여학생						문항 수
만 나이	12	13	14	15	16	17	12	13	14	15	16	17	
성 지식			1	3	3				2	3	2		7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1	6					3	3	1		7
성폭력에 대한 인식 및 대처능력		2		1				2	1				3
성적 자율성				2	6	2				3	7		10
합 계		2	2	12	9	2		2	6	9	10		27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남학생과 여학생에 대한 평가는 약간의 차이가 있었지만, 50% 이상의 전문가들은 남학생과 여학생 둘 다 적어도 만 15세 이상은 되어야 그들의 실생활에서 성적 자기결정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만 17세 이하 아동·청소년의 성관계에 대한 허용성에 대해서는 전문가 대부분이 개인적으로는 허용한다고 서술했지만, 우리 사회는 이들의 성관계 가능성에 대해

허용적이지 않다고 보고하였다. 마지막으로 의제강간의 기준 연령에 관한 직접적인 질문에 대해 절반 이상의 전문가들은 현재의 만 13세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보고하였고, 그 나이로는 15세 이상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가장 많이 거론되었던 것은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 결정권에 대한 보장이었다. 본 연구에서도 많은 현장전문가는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현장전문가는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은 성적 자기 결정권을 발휘하기에는 아직 여러모로 미흡하고 미성숙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는 앞서 살펴보았던 우리나라 현행법에서 강조하고 있는 만 13세 연령의 재고에 대한 필요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다시 말해서 현재 우리 사회가 주목하고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할 부분이 과연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 결정권에 대한 보장인지 아니면 그들이 성숙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보호의 강화인지, 그 판단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해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급변하는 사회에서 우리의 아동·청소년들은 기성세대가 인지하지 못할 만큼 다양하고 개방적인 성 경험을 하고 있다고 현장전문가들은 설명하고 있다. 이에 사회는 이들의 개방적인 성문화에 맞추어 이들이 성인과 동일한 성적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먼저 인지하고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 그들의 침언이다.



제4장 결론 및 제언

- 1.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를 위한 연령 조정 필요성의 확인
- 2.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를 위한 연령 조정의 방안을 위한 입법적 로드맵

1.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를 위한 연령 조정 필요성의 확인

본 연구는 선행연구 분석과 해외 사례 연구, 그리고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 능력의 현 수준을 평가한 결과를 토대로 현행법에서 정한 성 보호 연령의 조정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먼저 우리나라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현황과 함께 성 보호 실태를 알아보았다. 또,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와 관련하여 기준 연령을 조정한 프랑스와 스페인의 경우를 살펴보았다. 또 이들이 현재 우리 사회에 일러주는 시사점을 확인하였다. 추가적으로, 현재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를 위한 핵심 쟁점인 성적 자기 결정 능력의 개념과 측정방법을 알아보았다. 이와 같은 사실과 함께 현장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UNESCO 2018의 성교육 지침을 바탕으로 설문 문항을 제작하고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 결정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측정 도구를 개발하였다. 이후 아동·청소년의 성과 관련된 현장 전문가(학교 소속의 담임교사, 성교육 및 성 상담 교사, 그리고 사회단체 소속의 성교육 및 성 상담 전문가) 200여 명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이 해당 문항의 내용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그들의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연령을 추정하도록 하였다. 그 추정 연령을 살펴보면, 대략적으로 만 15세에서 만 16세를 유추해 볼 수 있으므로, 현행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만 13세라는 기준 연령이 실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재고의 여지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하여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를 위한 연령 조정 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먼저, 본 연구는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 실태 확인을 위해 이들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현황을 확인하고, 이를 위한 현행법의 역할, 그리고 의제강간의 입법적 의의에 대해 알아보았다. 결과적으로, 2019년 현재 우리나라 성범죄의 주된 표적은 13세 이상 20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더욱이 이와 같은 현실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현행법이 해당 연령 범위의 아동·청소년을 충분히 보호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성을 무조건 보호해 줄 수 있는 내용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 의제강간 관련 법령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함을 확인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해당 영역의 핵심 쟁점이라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들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발휘할 만한 충분한 능력은 갖추었는지 동시에 그와 같은 능력을 발휘하기에 충분한 연령은 언제쯤인지를 먼저 확인하고 해당 법령에 대한 입법안을 수립하여 개정안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근본적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영국에서 처음 제정되어 지속적인 개정을 통해 진화한 의제강간의 원류를 찾아 그 역사적 발전 과정을 살펴보고, 그와 같은 과정에서 제시된 타당한 근거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에 주는 의의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영국의 의제강간 연령은 12세에서 시작하여, 산업화가 시작하고 아동·청소년의 사회 활동이 증가하면서 그 연령이 점차로 높아지는 추세였다. 게다가 최근 새롭게 의제강간에 대한 연령을 법으로 공표한 프랑스의 사례와 스페인의 개정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강한 시사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산업화로 인해 급변한 우리나라의 상황 속에서, 최근 인터넷의 보급과 확산, 또 그로 인해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아동·청소년의 이성 교제가 증가하면서 이들을 성적인 주체로 존중해 주어야 한다는 주장

이 강한 이때, 이러한 주장과는 반대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 연령을 상향 조정한 스페인의 경우와 의제강간 규정을 새로 제정하는 입장에서 기준 연령을 우리나라보다 더 높은 연령으로 정한 프랑스의 경우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와 관련하여 핵심 쟁점이 되는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정의 및 측정 방법을 확인하고, 200여 명의 현장전문가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이 성적 자기 결정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이를 실제 그들의 삶에서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연령을 추정하도록 하였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이 성적 자기 결정 능력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연령을 제시하였고, 이를 통해 성적 자기 결정 능력을 가진 것으로 추정되는 연령이 현재 법에서 성 보호를 위한 기준 연령으로 정한 연령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시 말해서, 현재 우리나라의 아동·청소년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발휘하는 것은 현재의 성 보호 기준연령보다 높은 연령에서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사춘기 아동·청소년이 그 시기의 주된 특성인 충동적인 행동이나 성적 욕구에 대한 조절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결국, 이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현재 우리나라는 사회적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정책적 조정이 필요함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를 위한 연령 조정의 방안을 위한 입법적 로드맵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를 위한 연령 조정은 해당 법의 수혜자인 아동·청소년의 실제 상황을 반영하여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관련법에 대한 개정 혹은 입법의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들은 실제 아동·청소년의 상황에 맞는 실증적이고 과학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으로, 본 연구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경우, 특히 13세 이상 20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법적인 보호는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상식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집행이 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의 주된 표적인 되는 13세 이상 20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수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하는 상황이다.

다른 한편으로, 이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국회에서는 다섯 번의 입법안이 발의되었으나, 본회의에 상정도 하지 못한 채 계류 상태이다. 매 순간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미성년자의 합의하에 한 성관계의 처벌” 관련이다. 다시 말해서 무조건적으로 연령을 상향할 경우 미성년자 사이 혹은 미성년자가 자발적으로 했던 성행위에 대해서 개인의 특히 아동·청소년의 기본권인 행복권을 침해할 수 있음이 지적되었다. 이와 같은 의견의 저변에는 아동·청소년이 합의하에 한 성관계에서 이들을 성적인 주체로 보고, 이들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보장 해 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깔려 있는 셈이다. 하지만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관한 이슈가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연구에서도 아동·청소년의 성의식 발달 수준이나 성적 자기 결정 능력에 대한 실증적인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필요성에 입각하여, 본 연구는 많은 법집행 조문에서 사용되고 있는 피해 청소년의 ‘합의’라는 말에 초점을 두고 그 합의가 과연 의미 있고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많은 현장 전문가들이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은 성적 행동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충분하지 않으며, 그와 같은 행위의 결과가 만들어 낼 상황에 대해서도 예측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혹시라도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대처 능력이 만 17세 이상은 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남녀청소년 모두가 만 15세 이하에서는 자신의 성적인 욕구에 대한 정확한 이해나 표현이 미숙하다고 대부분의 현장 전문가들이 평가하였다. 따라서 이제까

지 법 집행과정에서 많은 피해 아동·청소년의 합의로 인정되어 버렸던 술한 상황에 대해 실제로 그들이 정확히 그 상황을 인지하고 자의적이며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었는지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판단을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현장 전문가의 추정치뿐만 아니라 실제 아동·청소년의 발달 정도를 확인한 실증적인 증거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실증적인 자료를 기반으로 법안이 완성된다면 해당 법의 입법 취지가 더욱 효과적으로 발휘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를 위한 연령 조정을 위해 다음과 같은 입법적 로드맵을 제시한다.

1) 연령기준의 재정립

우선 실제 아동·청소년의 성의식 수준을 고려한 연령기준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앞서 대략적으로 소개한 프랑스와 스페인과 같은 외국 사례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이 요구된다. 특히 스페인의 경우는 최근에 우리나라와 동일한 만 13세에서 만 16세로 상향 조정하였다. 동시대에 벌어진 이와 같은 현안을 면밀하게 살펴 그들이 16세로 연령기준을 재정립한 과정을 자세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이후 그와 같이 해결해야 할 경우 우리나라의 다른 현행법과 마찰 가능성을 고려하여 법리적인 해석을 동반한 연령기준의 재정립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사실, 앞서 짧게 언급한 바와 같이 청소년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연령의 기준은 복잡하게 혼재되어 있어 그 답을 명료하게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 연령기준을 재정립하고 이를 통한 법률의 재정비를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2) 사회적 합의

이와 함께 해당 연령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 역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더 많은 현장전문가가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 결정 능력에 대해 실질적이고 객관적이며 구체적인 평가를 진행해 보고, 실제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해 볼 필요가 있다. 사실 현장전문가들의 의견은 다분히 다차원적이고 분분하여 합의가 어려울 수도 있어 보인다. 이에 관련 전문가들 간 지속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서로의 관점을 이해하고 협력하여 합의점을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 또한, 실제 해당 법률의 수혜자가 될 아동·청소년의 의견을 들어보고 이들이 실제 상황에서 발휘할 수 있는 성적 자기 결정 능력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얼마 전, 세계일보 발표에 따르면, 의제강간 연령을 전혀 알지 못하는 성인이 응답자의 23%나 되며, 또 많은 사람은 이름 정도만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세계일보, 2019-08-22). 이 결과는 의제강간에 대한 우리나라 대다수 성인들의 인식이 낙제점을 받을 정도라고 경고하고 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직까지 이와 관련한 국민적 관심이 약한 것이 사실이다. 국가적 차원에서 대국민 공청회나 포럼 등을 진행하여 국민에게 해당 문제의 개선이 필요함을 알리고, 국민적 관심을 모아서 사회적 합의점을 이끌어 내야 할 것이다.

3) 연구 기반의 법률개정

마지막으로는 연구 기반의 법률개정이 요구된다. 입법 관련 연구자나 집행자에 준한 법률개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청소년 관련 연구를 핵심으로 의학적 관점, 심리 사회적 관점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과학적 검증을 통해 이를 기초로 한 법률체계 개편 및 정비가 중요하다. 이와 더불어 연구의 실효성을 위해서 학제 간 협력적 접근과 함께 여러 관계 부처 간 합동 연구 역시 필요하다고 본다.

4) 소결

급변하는 사회와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정보량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아동·청소년들은 이전에 통념적으로 알려진 단계순의 발달과정에서 벗어나 있다. 이보다는 지식정보습득과 실생활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성에 관한 부분은 더욱더 주의를 요하게 된다. 아동·청소년도 성인과 동일한 인간이기에 성적 주체자로서 활동이 가능하다. 하지만, 신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성숙되지 않은 채 무조건 주체자이자, 행위자로서 실생활에 적용을 하게 된다면, 이는 단기적으로는 아동·청소년에게 학업 중단의 문제를 야기하며, 장기적으로는 이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미혼부모의 증가로 인해 불거질 수 있는 문제나 이들의 신체적, 심리적 병리화를 대처해야 하는 부담까지 가중될 수 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정책적 지원 및 집행을 위해서는 국가가 해당 지원이 필요한 이들을 선별하고 적절하게 해당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조속히 우리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를 위한 연령 재정립을 촉구하는 바이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 권김현영. (2015). 미성년자의제강간, 무엇을 보호하는가?. 인물과사상, (통권 211호), 113-126.
- 김한균. (2013). 형법상 의제강간죄의 연령기준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 형사법연구, 25(1), 105-132.
- 김한균. (2019). 성 보호 형사법의 발전과 헌법의 영향. 저스티스, (170-3), 401-424.
- 김효현. (2014). 청소년 미혼모의 임신과 출산경험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정책대학원.
- 김희정. (2016). 청소년기의 특성을 고려한 청소년과의 '합의'에 의한 성관계의 강간죄 처벌에 관한 고찰-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형사법의 신통향, 395-421.
- 도은수, & 서영숙. (2013). 학생의 성적 자율성에 미치는 영향요인. 기본간호학회지, 20(2), 129-136.
- 박광배. (2000). 아동·청소년의 성적 행위결정능력에 관한 심리학적 연구, 청소년보호 2000-24.
- 박성민. (2013). 개정형법상 성적자기결정권의 의미와 보호의 실제. 성균관법학, 25, 129-150.
- 박연주, 한창근, & 조원희. (2017). 한국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양형분석연구. 한국아동복지학, (58), 47-76.
- 박재홍, & 김성환. (2011). 청소년기 뇌 발달과 인지, 행동 특성. 생물치료정신의학, 17(1), 11-20.

- 박찬걸. (2017). 청소년성보호법상 ‘대상’아동·청소년을 ‘피해’아동·청소년으로 변경하는 입법안에 대한 비판적 고찰. *소년보호연구*, 30(4), 105-159.
- 송숙형, 김신영, 정영기, & 신윤미. 소아·청소년 성폭력 피해의 실태 : 원스톱 지원센터 대상자를 중심으로. *소아청소년정신의학* 19(3).
- 여성가족부. (2018). 아동·청소년 성범죄 발생 추세·동향 보고서.
- 오승주. (2015).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 규정에 관한 개선방안. *비교법연구*, 15(1), 155-186.
- 윤덕경. (2012). 형사법상 성적 자기결정권의 보호에 관한 연구.
- 이미경. (2017) 피해자의 경험과 맥락, 공대위 활동의 의미, “연예기획사 대표에 의한 청소년 성폭력 사건”의 의미와 쟁점 토론회 자료집, 1-14.
- 이수정. (2018). 우리 아이들을 성범죄로부터 지키려면, 세상을 바꾸는 시간 957회 2018. 8. 16일 방송.
- 이수정. (2019). 그루밍성범죄와 처벌, 최강1교시/ 성범죄 그것이 알고 싶다(2019. 10. 28), <https://youtu.be/ChucohNBCYw> 2019. 11.12 접속
- 정은경. (2016). 의제강간죄 연령상향의 타당성에 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 27(2), 5-31.
- 조국. (2018). 미성년자 의제강간·강제추행 연령개정론, 법률신문, 2018.06.18일자
- 천정아. (2015), 청소년 성 보호를 위한 의제강간죄 연령기준 상향,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연령 상향에 관한 토론회 자료집, 1-13.
- 홍종희. (2015),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조정에 대한 검토,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연령 상향에 관한 토론회 자료집, 21-24.
- 황승흠. (2003) 청소년보호연령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청소년보호 연령기준에 대한 정책토론회, 청소년보호위원회
- Ames, T., Samowitz, P. (1995). Inclusionary standard for determining sexual consent for individual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Ment. Retard.* 4, 264-268.

- British Medical Association and Law Society. (2004) Assessment of mental capacity: Guidance for doctors and lawyers. *British Medical Association, London*.
- Chang, S. B. (2002). Development of sexual autonomy measurement for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Womens Health Nursing*, 8, 106-115.
- Donovan, P. (1997). Can statutory rape laws be effective in preventing adolescent pregnancy?. *Family planning perspectives*, 29(1), 30-40.
- Ha, E. H., Yoo, M. S., & Cho, Y. J. (2005). A Preliminary Study on the Sexual Development Assessment Scale for Adolescents.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6(1), 279-297.
- Kaeser, F. (1992). Can people with severe mental retardation consent to mutual sex? *Sex. Disabil.* 10, 33-42.
- Kost, K., Maddow-Zimet, I., & Arpaia, A. (2017). Pregnancies, births and abortions among adolescents and young women in the United States, 2013: national and state trends by age, race and ethnicity.
- Lara, L. A., & Abdo, C. H. (2016). Age at time of initial sexual intercourse and health of adolescent girls. *Journal of Pediatric and Adolescent Gynecology*, 29(5), 417-423.
- Lyden, M. (2007). Assessment of sexual consent capacity. *Sexuality and disability*, 25(1), 3-20.
- Martin, J. A., Hamilton, B. E., Osterman, M. J., Driscoll, A. K., & Drake, P. (2018). Births: final data for 2016.
- Murphy, G., O'Callaghan, A. (2004). Capacity of adul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to consent to sexual relationships. *Psychol. Med.* 34, 1347-1357.

Ryan, R. M., & Deci, E. L. (2017). Self-determination theory: Basic psychological needs in motivation, development, and wellness. Guilford Publications.

Skinner, S. R., Robinson, M., Smith, M. A., Robbins, S. C. C., Mattes, E., Cannon, J., ... & Doherty, D. A. (2015). Childhood behavior problems and age at first sexual intercourse: a prospective birth cohort study. *Pediatrics*, 135(2), 255-263.

Stephen Robertson, "Age of Consent Laws," in Children and Youth in History, Item #230, <http://chnm.gmu.edu/cyh/items/show/230> (accessed August 14, 2019).

UNICEF (2014). Children, adolescents and AIDS. 2014 statistical update. New York: UNICEF; 2014.

<https://stats.idre.ucla.edu/spss/seminars/introduction-to-factor-analysis/a-practical-introduction-to-factor-analysis-confirmatory-factor-analysis/>
2019-12-20 접속

http://leginfo.legislature.ca.gov/faces/codes_displaySection.xhtml?lawCode=PEN§ionNum=261.62 2019. 11.12 접속

World Population Review:
<http://worldpopulationreview.com/countries/age-of-consent-by-country/>
/ 2019. 10.3접속

<https://www.theatlantic.com/international/archive/2018/03/frances-existential-crisis-over-sexual-harassment-laws/550700/> 2019. 11.12접속

<https://www.bbc.com/news/world-europe-43300313>

대검찰청 사이트 <http://www.spo.go.kr/site/spo/crimeAnalysis.do>(2019. 08. 24., 접속) 2019)

연합뉴스 https://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332907

중앙일보(2014. 11. 25., 종합 지면 10면) <https://news.joins.com/article/16515129> 2019. 8.10. 접속

세계일보(2019-08-22) 성인 64%“미성년 성 보호 삭제”..23%는 의제강간 몰라[탐사기획-‘은별이 사건’ 그후] <https://www.segye.com/newsView/20190821512178> 2019.11.08. 접속

○ — 부 록

요인분석 결과표

	진술문	요인부하량			
		1	2	3	4
성자식	Q1-1) 생식기능과 관련된 우리 몸의 기능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605			
	Q1-2) 성관계의 이유와 목적에 대해 안다.	.652			
	Q1-3) 성관계의 결과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다.	.707			
	Q1-4) 임신이 가능한 시기를 알고 있다.	.591			
	Q1-5) 성병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고, 실제로 자신의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726			
	Q1-6) 성병, 에이즈에 어떻게 감염이 되는지에 대해 잘 안다.	.719			
	Q1-7) 피임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여러 종류의 피임도구를 사용할 줄 안다.	.538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성적 자율성	Q2-1) 남녀 사이의 성관계는 두 사람이 합의한 후에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734		
	Q2-2) 자신이 성관계를 하면 임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793		
	Q2-3) 자신도 성관계를 하면 성병에 걸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736		
	Q2-4) 남녀 사이에 성관계는 책임이 따르는 행위임을 알고 있다.		.772		
	Q2-5) 자신의 성적인 욕구를 표현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455		
	Q3-1) 성적 행동에 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감정들이 있음을 알고 있다.		.634		
	Q3-2) 이성 친구와 있을 때 자신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을 알고 있다.		.551		
성폭력에 대한 인식 및 대처 능력	Q4-1) 성폭력이란 성적으로 굴욕적이고 불쾌한 신체적 언어적, 시각적 말과 행동을 포괄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다.			.848	
	Q4-2) 성희롱이나 성폭력의 문제는 남녀 모두에게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			.869	
	Q4-3) 성폭력을 당했다면 24시간 이내에 병원을 찾아가 진단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653	
성적 자율성	Q3-3) 이성 친구가 신체적인 접촉에 대한 제안을 할 때, 자신의 의사결정을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음을 알고 조절할 수 있다				.659
	Q3-4) 자신의 성적 행동의 대한 의사결정을 한 후 자신의 결정이 가져올 결과에 대해 짐작할 수 있다.				.584
	Q3-5) 자신이 스스로 성적인 행동에 대한 의사결정에 대한 권리가 있음을 알고 실천할 수 있다				.581

Q5-1) 성행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타인에게 솔직하게 말할 수 있다.	.671
Q5-2) 자신이 원하지 않는 성적 행동들에 대해 언어적인 표현으로 설명할 수 있다	.619
Q5-3) 안전한 성적인 관계에 대해서 서로 대화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실천할 수 있다	.787
Q5-4) 자신의 성적인 욕구를 알아차리고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	.751
Q5-5) 원하지 않는 성관계에 대한 단호함을 언어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749
Q5-6) 성관계 후 (여자친구가) 임신을 하게 되었을 때 대처 방법이나 대처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769
Q5-7) 성관계를 하게 된다면 성병에 예방하기 위해 상대방과 적절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798

안녕하세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청소년을 위한 국가정책을 연구, 개발하는 국무총리산하 국책연구기관입니다. 본 연구원에서는 2019년에 진행하는 과제의 일환으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성의식 발달과 성적 자기결정 능력 발달 정도를 확인하고자 청소년들을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계시는 여러 현장 전문가 선생님들의 의견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설문을 내용들로 우리 청소년들의 개인별 차이를 전부를 여쭙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귀하가 만나는 청소년들의 70%정도가 나타내는 특성을 고려하여 청소년들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고 있는 것보다 실제 자신의 일상에 적용할 수 있음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주십시오. 또 다른 한 가지는 선행연구들에서 성의식에 대한 성차가 끊임없이 보고되고 있는 바, 해당 문항에서 대해서 남학생과 여학생을 구분하여 여쭙고 있습니다. 우선은 남자 청소년의 특징을 그리고 이후 여자 청소년의 특징을 생각하여 응답하여 주시면 됩니다.

귀하가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에 따라 익명성이 보장되고, 응답내용에 대한 비밀보장이 철저히 이루어집니다. 귀하의 응답내용은 아동·청소년 성보호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 자료로만 활용됨을 밝혀드립니다.

각 조사 문항에 대해 귀하의 의견을 솔직하고 성실하게 응답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본 조사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9. 11.

- ▶ 조사연구기관: 국무총리산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 연구책임자: 이정민 부연구위원 044-415-2139 jminlee@nypi.re.kr
- ▶ 공동연구원: 이수정 교수
- ▶ 조사대행기관:
- ▶ 실사담당자:

연구 참여 동의서

1. 본인은 본인의 정보를 연구목적으로 이용하는 것과 참여기간, 절차 및 방법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며, 추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연구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철회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연구와 관련된 모든 자료는 엄격하게 비밀로 보장된다는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자발적인 의사로 이 연구에 참여할 것을 동의합니다.
3. 본인이 응답하신 내용은 연구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될 수 있으며, 관련 정보를 제3자(연구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개인 식별 정보는 익명화되고 엄격하게 관리되어 제공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4. 본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파생된 결과나 개발 내용에 대한 직접적 금전보상이 없는 것에 동의합니다.

본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데 동의하시면 해당 항목에 표시를 부탁드립니다.

연구 참여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설문 참여 후 사례 기프트콘 지급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모바일 전화번호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성 명 : _____ (서명)

남자 청소년

[Q1] 다음은 **성지식**에 관한 문항들입니다. 우리나라의 **남자 청소년**은 대략적으로 몇 살 정도가 되면 다음과 같은 **성지식**을 충분히 잘 알고 있다고 평가하시는지 적어도 70%이상의 학생들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연령을 선택하여 ✓ 표시 해 주세요.

항 목	만12세 (초6)	만13세 (중1)	만14세 (중2)	만15세 (중3)	만16세 (고1)	만17세 (고2)
1) 생식기능과 관련된 우리 몸의 기능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2) 성관계의 이유와 목적에 대해 안다.	①	②	③	④	⑤	⑥
3) 성관계의 결과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4) 임신이 가능한 시기를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5) 성병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고, 실제로 자신의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6) 성병, 에이즈에 어떻게 감염이 되는지에 대해 잘 안다.	①	②	③	④	⑤	⑥
7) 피임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여러 종류의 피임도구를 사용할 줄 안다.	①	②	③	④	⑤	⑥

[Q2] 다음은 **성에 대한 태도**와 관련한 문항들입니다. 우리나라의 **남자 청소년**은 대략적으로 몇 살 정도가 되면 다음과 같은 성에 대한 태도를 나타내며 실제 자신의 행동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 평가하시는지 적어도 70%이상의 학생들이 그렇다고 생각하는 연령을 선택하여 ✓ 표시 해 주세요.

항 목	만12세 (초6)	만13세 (중1)	만14세 (중2)	만15세 (중3)	만16세 (고1)	만17세 (고2)
1) 남녀 사이의 성관계는 두 사람이 합의한 후에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2) 자신이 성관계를 하면 임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3) 자신도 성관계를 하면 성병에 걸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4) 남녀 사이에 성관계는 책임이 따르는 행위임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5) 자신의 성적인 욕구를 표현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⑥

[Q3] 다음은 이성교제 시 의사결정을 하는 한 태도와 관련한 문항들입니다. 우리나라의 남자 청소년은 대략적으로 몇 살 정도가 되면 다음과 같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 또 실제 자신의 행동으로 나타낼 수 있는지를 귀하가 그동안의 청소년들을 관찰한 경험을 바탕으로 평가하시는지 적어도 70%이상의 학생들이 그렇다고 생각하는 연령을 선택하여 ✓ 표시 해 주세요.

항 목	만12세 (초6)	만13세 (중1)	만14세 (중2)	만15세 (중3)	만16세 (고1)	만17세 (고2)
1) 성적 행동에 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감정들이 자신에게 있음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2) 여자 친구와 있을 때 자신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고 분위기나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3) 여자 친구가 신체적인 접촉에 대한 제안을 할 때, 자신의 의사결정을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음을 알고 조절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4) 자신의 성적 행동의 대한 의사결정이 가져올 결과에 대해 짐작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5) 자신의 성적인 행동에 대한 의사결정에 대한 권리가 자신에게 있음을 알고 실천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Q4] 다음은 성폭력을 인식하고 대처하는 능력과 관계되는 문항들입니다. 우리나라의 남자 청소년은 대략적으로 몇 살 정도가 되면 다음과 같이 성폭력을 인식하고 또 실제 자신의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적어도 70%이상의 학생들이 그렇다고 생각하는 연령을 선택하여 ✓ 표시 해 주세요.

항 목	만12세 (초6)	만13세 (중1)	만14세 (중2)	만15세 (중3)	만16세 (고1)	만17세 (고2)
1) 성폭력이란 성적으로 굴욕적이고 불쾌한 신체적 언어적, 시각적 말과 행동을 포괄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2) 성희롱이나 성폭력의 문제는 남녀 모두에게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3) 성폭력을 당했다면 24시간 이내에 병원을 찾아가 진단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Q5] 다음은 성행위와 관련된 문항들입니다. 우리나라의 남자 청소년은 대략적으로 몇 살 정도가 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고, 실제 자신이 성행위를 하게 된다면 이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귀하가 그동안의 청소년들을 관찰한 경험을 바탕으로 적어도 70%이상의 학생들이 그렇다고 생각하는 연령을 선택하여 ☒ 표시 해주세요.

항 목	만12세 (초6)	만13세 (중1)	만14세 (중2)	만15세 (중3)	만16세 (고1)	만17세 (고2)
1) 성행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타인에게 솔직하게 말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2) 자신이 원하지 않는 성적 행동들에 대해 언어적인 표현으로 설명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3) 안전한 성적인 관계에 대해서 서로 대화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실천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4) 자신의 성적인 욕구를 알아차리고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5) 원하지 않는 성관계에 대한 단호함을 언어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6) 성관계 후 여자친구가 임신을 하게 되었을 때 대처 방법이나 대처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7) 성관계를 하게 된다면 성병에 예방하기 위해 상대방과 적절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여자 청소년

[Q1] 다음은 **성지식**에 관한 문항들입니다. 우리나라의 **여자 청소년**은 대략적으로 몇 살 정도가 되면 다음과 같은 **성지식**을 충분히 잘 알고 있다고 평가하시는지 적어도 70%이상의 학생들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연령을 선택하여 ✓ 표시 해 주세요.

항 목	만12세 (초6)	만13세 (중1)	만14세 (중2)	만15세 (중3)	만16세 (고1)	만17세 (고2)
1) 생식기능과 관련된 우리 몸의 기능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2) 성관계의 이유와 목적에 대해 안다.	①	②	③	④	⑤	⑥
3) 성관계의 결과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4) 임신이 가능한 시기를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5) 성병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고, 실제로 자신의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6) 성병, 에이즈에 어떻게 감염이 되는지에 대해 잘 안다.	①	②	③	④	⑤	⑥
7) 피임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여러 종류의 피임도구를 사용할 줄 안다.	①	②	③	④	⑤	⑥

[Q2] 다음은 **성에 대한 태도**와 관련한 문항들입니다. 우리나라의 **여자 청소년**은 대략적으로 몇 살 정도가 되면 다음과 같은 **성에 대한 태도**를 나타내며 **실제 자신의 행동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 평가하시는지 적어도 70%이상의 학생들이 그렇다고 생각하는 연령을 선택하여 ✓ 표시 해 주세요.

항 목	만12세 (초6)	만13세 (중1)	만14세 (중2)	만15세 (중3)	만16세 (고1)	만17세 (고2)
1) 남녀 사이의 성관계는 두 사람이 합의한 후에나 가능한 것을 안다.	①	②	③	④	⑤	⑥
2) 자신이 성관계를 하면 임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3) 자신도 성관계를 하면 성병에 걸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4) 남녀 사이에 성관계는 책임이 따르는 행위임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5) 자신의 성적인 욕구를 표현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⑥

[Q3] 다음은 이성교제 시 의사결정을 하는 한 태도와 관련한 문항들입니다. 우리나라의 여자 청소년은 대략적으로 몇 살 정도가 되면 다음과 같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 또 실제 자신의 행동으로 나타낼 수 있는지를 귀하가 그동안의 청소년들을 관찰한 경험을 바탕으로 적어도 70%이상의 학생들이 그렇다고 생각하는 연령을 선택하여 ☒ 표시 해 주세요.

항 목	만12세 (초6)	만13세 (중1)	만14세 (중2)	만15세 (중3)	만16세 (고1)	만17세 (고2)
1) 성적 행동에 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감정들이 자신에게 있음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2) 남자 친구와 있을 때 자신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고 분위기나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3) 남자 친구가 신체적인 접촉에 대한 제안을 할 때, 자신의 의사결정을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음을 알고 조절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4) 자신의 성적 행동의 대한 의사결정이 가져올 결과에 대해 짐작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5) 자신의 성적인 행동에 대한 의사결정에 대한 권리가 자신에게 있음을 알고 실천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Q4] 다음은 성폭력을 인식하고 대처하는 능력과 관계되는 문항들입니다. 우리나라의 여자 청소년은 대략적으로 몇 살 정도가 되면 다음과 같이 성폭력을 인식하고 또 실제 자신의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적어도 70%이상의 학생들이 그렇다고 생각하는 연령을 선택하여 ☒ 표시 해 주세요.

항 목	만12세 (초6)	만13세 (중1)	만14세 (중2)	만15세 (중3)	만16세 (고1)	만17세 (고2)
1) 성폭력이란 성적으로 굴욕적이고 불편한 신체적 언어적, 시각적 말과 행동을 포괄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2) 성희롱이나 성폭력의 문제는 남녀 모두에게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3) 성폭력을 당했다면 24시간 이내에 병원을 찾아가 진단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Q5] 다음은 성행위와 관련된 문항들입니다. 우리나라의 여자 청소년은 대략적으로 몇 살 정도가 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고, 실제 자신이 성행위를 하게 된다면 이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귀하가 그동안의 청소년들을 관찰한 경험을 바탕으로 적어도 70%이상의 학생들이 그렇다고 생각하는 연령을 선택하여 ✓ 표시 해주세요.

항 목	만12세 (초6)	만13세 (중1)	만14세 (중2)	만15세 (중3)	만16세 (고1)	만17세 (고2)
1) 성행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타인에게 솔직하게 말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2) 자신이 원하지 않는 성적 행동들에 대해 언어적인 표현으로 설명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3) 안전한 성적인 관계에 대해서 서로 대화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실천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4) 자신의 성적인 욕구를 알아차리고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5) 원하지 않는 성관계에 대한 단호함을 언어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6) 성관계 후 임신을 하게 되었을 때 대처 방법이나 대처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7) 성관계를 하게 된다면 성병에 예방하기 위해 상대방과 적절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기 타 개 인 배 경 질 문

[PQ1] 귀하의 직책은 무엇인가요?

- ① 담임교사 ② 성상담교사 ③ 성교육교사(강사) ④ 기타()

[PQ2] 귀하는 주로 몇 학년인 아동·청소년과 활동을 합니까?[중복응답 가능]

- ① 초등학생 ② 중 1학년 ③ 중 2학년 ④ 중 3학년
⑤ 고 1학년 ⑥ 고 2학년 ⑦ 고 3학년 이상 ⑧ 기타 ()

[PQ3] 귀하가 위에서 응답한 현 직책에서의 경력은 얼마나 되셨습니까?

- ① 5년 미만 ② 5년 이상 10년 미만
③ 10년 이상 15년 미만 ④ 15년 이상 20년 미만
⑤ 20년 이상

[PQ4] 귀하가 본 설문에서 응답할 때 고려하였던 청소년 모집단의 수는 대략 어느 정도인가요?

- ① 100미만 ② 100이상 200미만 ③ 200이상 300미만 ④ 300이상 400미만
⑤ 400이상 500미만 ⑥ 500이상 1000미만 ⑦ 1000이상 ⑧ 기타()

[PQ5] 귀하는 만17세 이하 청소년이 성관계를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발적인 의지나 동의하에 할 수 있는 성관계를 의미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⑥

[PQ5-1] [PQ5]에서 ①~③으로 응답한 경우,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몇 살 정도부터 성관계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조건
의 경우 우리 청소년이 성관계를 경험해도 무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PQ5-2] [PQ5]에서 ④~⑥으로 응답한 경우,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몇 살 정도부터 성관계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조건의 경우
 우리 청소년이 성관계를 경험해도 무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019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기관고유과제

- 19-R01 청소년 '일 경험' 제도 운영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Ⅱ : 대학교 실습학기제를 중심으로 / 김승경·최정원·강정한
- 19-R02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Ⅳ / 김형주·연보라·유설희
- 19-R02-1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Ⅳ - 전년도 공개데이터 심층분석보고서 / 김형주·연보라·유설희
- 19-R02-2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Ⅳ - 기초분석보고서 / 김형주·연보라·유설희
- 19-R03 국가 미래인적자원으로서 재외동포청소년 성장과 지원방안 연구Ⅱ / 김경준·김정숙
- 19-R04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지원체계 구축 방안 연구 / 강경균·성윤숙·김승보·장현진
- 19-R05 청소년 체험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업사회공헌 사업과의 협업 추진 방안 연구 / 임지연·황세영·김도영
- 19-R06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청년정책 개선 방안 / 김지경·변금선·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 19-R07 정보기술을 활용한 위기청소년 사회서비스 확충 방안 / 김지연·이경상·노법래
- 19-R08 남북한 청소년 교류협력을 위한 중장기 전략연구 / 배상률·이정민
- 19-R09 미래지향적 청소년관련 법 정비 방안 / 김영한·서정아·권일남
- 19-R10 청소년지도자 양성시스템 재구축 방안Ⅰ : 청소년 활동분야 중심으로 / 최창욱·좌동훈·남화성·박정배
- 19-R11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 및 조성사업 연구Ⅶ / 오해섭·문호영·염유식
- 19-R12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2019 - 총괄보고서 / 김영지·김희진·이민하·김진호
- 19-R12-1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2019 - 심화분석보고서 / 강지영
- 19-R12-2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2019 - 기초분석보고서 / 김영지·김희진
- 19-R13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청소년 성장지원정책 추진체계 구축방안 연구Ⅰ / 최인재·이윤주·송민경·조윤정
- 19-R14 한국 아동·청소년패널조사Ⅹ - 사업보고서 / 하형석·김성은·이용해

- 19-R14-1 한국 아동·청소년패널조사X - 데이터분석보고서 / 김성은·김준엽
- 19-R15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2019 - 총괄보고서 / 양계민·장윤선·정윤미
- 19-R15-1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2019 - 기초분석보고서 / 양계민·장윤선·정윤미

협동연구과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9-59-01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모델 개발연구Ⅱ :
질적 패널조사를 중심으로 / 장근영·윤철경·서고운·이동훈 (자체번호 19-R16)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9-59-02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모델 개발연구Ⅱ :
지역사회 지원모델 개발을 위한 중소도시 지역 질적 연구 / 조아미·임정아·김남은
(자체번호 19-R16-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9-60-01 청년 핵심정책 대상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Ⅱ :
학교 졸업예정자 / 김기현·유민상·김창환·정지운 (자체번호 19-R17)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9-60-02 청년 핵심정책 대상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Ⅱ :
학교 졸업예정자-해외사례조사 / 김기현·유민상(자체번호 19-R17-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9-61-01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Ⅰ /
임희진·백혜정·김동식 (자체번호 19-R18)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9-61-02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Ⅰ -
학생 청소년의 건강불평등 실태 분석 / 김동진·정연·채수미 (자체번호 19-R18-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9-61-03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Ⅰ -
기초분석보고서 / 임희진·백혜정 (자체번호 19-R18-2)

연구개발직립금

- 19-R52 청소년정책 재구조화 방안연구 / 김기현·최정원·변금선·이종원·이민정·정지희
- 19-R21 청소년 참여 연구사업 운영을 통한 청소년활동 활성화 및 역량 증진방안 연구 / 모상현
- 19-R21-1 청소년 참여 연구사업 운영을 통한 청소년활동 활성화 및 역량 증진방안 연구 :
10대연구소 연구사업 운영보고 / 모상현·함세정

수 시 과 제

- 19-R53 아동청소년 성보호를 위한 연령조정 방안연구 / 이정민
- 19-R54 청소년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 김형주·이종원
- 19-R55 학교 밖 청소년 추정치 추계방안 연구 / 하형석·이종원·이정민
- 19-R56 2030 혁신리더 양성개발 및 평가 / 최정원·김현철·문호영·이윤주·박지숙·정은진
- 19-R57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역기관 연계 종합지원모델 개발 / 연보라·이윤주·김현철

수 탁 과 제

- 19-R19 포용사회 구현을 위한 이주배경아동·청소년 성장기회격차 해소방안연구 :
통계구축방안을 중심으로 / 양계민·김지연·장윤선
- 19-R20 한국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 구축 방안 연구 :한국 아동口청소년의 삶의 질 지표
DB 구축 및 보고서 작성 / 유민상·이용해
- 19-R22 청소년 비즈쿨 지원사업 교육운영모형 개발 및 활성화 방안 연구 / 강경균
- 19-R23 학교폭력 예방 또래활동 프로그램(초등학교) / 성윤숙·이혜정
- 19-R24 학교폭력 예방 또래활동 프로그램(중학교) / 성윤숙·이혜정
- 19-R25 학교폭력 예방 또래활동 프로그램(고등학교) / 성윤숙·이혜정
- 19-R26 2018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프로그램 적용효과 분석 / 성윤숙·김현수
- 19-R27 2019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 매뉴얼 / 성윤숙·장안서
- 19-R28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심층 프로그램 / 성윤숙·서정아·문호영·장안서
- 19-R29 2018 개정 학부모 어울림 프로그램 : 초등학교 저학년,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고등학교(24종) / 성윤숙·김현수
- 19-R30 2015 개정교육과정을 반영한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교과 연계 프로그램 : 중학교 국어·
도덕·사회 및 고등학교 국어·통합사회(5종) / 성윤숙·황세영·김성은·김현수
- 19-R31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실 프로그램 모듈 개발(중등용) 및 프로그램(5종) / 황세영·한지형
- 19-R32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 김지연·서고운·김태완
- 19-R33 2019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 김경준·김영지·임지연
- 19-R34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 윤철경·최인재·김승경·김성은
- 19-R35 고양시 청소년재단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 연구 / 김영한
- 19-R36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분석 연구 - 아동권리협약 이행 제5·6차 심의자료 및 권고사항
(국문) / 김영지·이윤주·유설희

- 19-R36-1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분석 연구 - 아동권리협약 이행 제56차 심의자료 및 권고사항 (영문) / 김영지·이윤주·유선희
- 19-R37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개선방안연구 / 양계민·장윤선
- 19-R38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정책 중장기발전 계획수립 연구용역 / 최창욱·좌동훈·문호영·남화성
- 19-R38-1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정책 중장기발전 계획 / 최창욱·좌동훈·문호영·남화성
- 19-R39 소년 범죄피해자 인권보호 실태분석 및 제고방안 / 김지연·정소연·김혁·이경상
- 19-R40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사전 연구 / 김지경·김균희
- 19-R41 청소년 보호법 체계 개선 방안 연구 / 김지경·장근영·고은아
- 19-R42 2019년 학교 시민교육 정책 네트워크 운영 / 배상률·장근영·이정민
- 19-R43 천안시 청소년재단 설립 타당성 연구 / 최창욱·좌동훈·문호영·남화성·노자은
- 19-R43-1 천안시 청소년재단 설립 타당성 연구 요약보고서 - 천안시 청소년재단 기본구상 및 중장기계획 - / 최창욱·좌동훈·문호영·남화성·노자은
- 19-R44 중국 청소년의 한류 인식 및 수용 실태 연구 / 배상률·문수정·장수
- 19-R45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조사 2019 / 김희진·임희진·하형석·정윤미
- 19-R46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사업 평가지표 개발 연구 / 김지연·백혜정·류정희·이상정
- 19-R47 발명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 연계 방안 연구 / 강경균
- 19-R48 2019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효과만족도 연구 / 서정아·조아미
- 19-R49 지역사회 기반 직업계고 운영 활성화 방안 / 강경균
- 19-R50 고등교육 고비용부담 및 양극화 현상 진단과 대안 / 김기현·김형주
- 19-R51 청년정책 체계성 강화 연구 / 변금선·김기현·하형석·이용해
- 19-R58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실 프로그램 모듈 개발(초등용) 및 프로그램(2종) / 황세영·김성은·김현수
- 19-R59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실태조사 연구 / 오해섭·박지영·이지혜·임하린
- 19-R60 홈스쿨링 도입 방안 연구 / 이종태·하태욱·차상진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19-S01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실 프로그램 모듈 시범적용 결과 발표회 및 활용방안 워크숍(1.11)
- 19-S02 2019 학교폭력예방교육 운영학교 담당자 워크숍(1.24)
- 19-S03 학교폭력예방교육 운영학교 우수사례집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1.31)
- 19-S04 2019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학교 담당자 연수(1차-초등학교)(2.12~13)
- 19-S05 2019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학교 담당자 연수(1차-중학교)(2.14~15)
- 19-S06 2019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학교 담당자 연수(1차-고등학교)(2.19~20)

19-S07	2019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실(꿈지락) 프로그램 워크숍 자료집(4.15~16)
19-S08	2019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단 워크숍(2.22)
19-S09	제13회 청소년정책포럼(3.6)
19-S10	2019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학교 담당자 연수(2차) 초등학교(3.27~4.10)
19-S11	2019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학교 담당자 연수(2차) 중학교(3.29~4.17)
19-S12	2019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학교 담당자 연수(2차) 고등학교(3.29~4.17)
19-S13	제14회 청소년정책포럼(4.29)
19-S14	제15회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 토크콘서트 자료집(5.24)
19-S15	2019년 대안학교(각종학교 및 특성화 중·고교) 관리자 협의회(6.4)
19-S16	2019년 대안학교(각종학교 및 특성화 중·고교) 담당자 연수(6.5)
19-S17	제20차 NYPI 직원 역량강화 콜로키움(6.10)
19-S18	제15회 청소년정책포럼(6.14)
19-S19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개원 30주년 기념 국제 컨퍼런스(6.18)
19-S20	제16회 청소년정책포럼(7.26)
19-S21	제17회 청소년정책포럼(8.28)
19-S22	제21차 NYPI 직원 역량강화 콜로키움(8.14)
19-S23	2019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단 워크숍(8.13~14)
19-S24	2019년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관리자 연수(8.22)
19-S25	2019년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담당자 연수(8.23)
19-S26	2019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시도교육청 협의체 워크숍(8.26)
19-S27	제18회 청소년정책포럼:청소년지도사 양성체계 및 처우개선 방안 제1차 재구조화 포럼(9.19)
19-S28	제22회 청소년정책포럼: 2019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 포럼(10.25)
19-S29	제19회 청소년정책포럼: 미래지향적 청소년관련 법 정비 방안(9.26)
19-S30	제20회 청소년정책포럼(9.27)
19-S31	2019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발전방안 포럼(9.26)
19-S32	제22차 NYPI 직원 역량강화 콜로키움(잠재프로파일 분석의 이론과 실제)(9.27)
19-S33	제23회 청소년정책포럼: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성장지원 체계 강화를 위한 지역자원 연계방안(11.7)
19-S34	제24회 청소년정책포럼:청소년 주도적 참여기반 확대 및 활성화 방안(11.19)
19-S35	제23차 NYPI 직원 역량강화 콜로키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정책 협력 추진 방안 (11.12)
19-S36	제8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 학술대회(11.15)
19-S37	제21회 청소년정책포럼:2019 전국청소년 지표조사 결과 발표 및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10.1)

- 19-S38 제25회 청소년정책포럼: 청소년을 위한 NPO-기업 사회공헌사업의 협업추진 방안(12.6)
- 19-S39 제24차 NYPI 직원 역량강화 콜로키움: 정책평가를 위한 이중차분법의 활용: 이중차분법의 이해와 한국아동청소년패널 데이터 이용 사례(12.2)
- 19-S40 제26회 청소년정책포럼: 한국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현황 및 전망(12.12)
- 19-S41 제27회 청소년정책포럼: 2019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발전방안 포럼- 해외사례를 통한 국내 학교폭력 예방교육 활성화 방안 모색(12.12)
- 19-S42 고교학점제와 지역사회 청소년 체험활동 자원의 연계방안 모색을 위한 포럼(12.16)
- 19-S43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교육청 공동 세미나: 서울 학교 밖 청소년 실태와 정책 진단, 그리고 미래(10.8)

학 술 지

- 「한국청소년연구」 제30권 제1호(통권 제92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30권 제2호(통권 제93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30권 제3호(통권 제94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30권 제4호(통권 제95호)

기타 발간물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13호 : 가정 밖 청소년의 실태와 자립지원 방안 연구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14호 : 제4차 산업혁명시대 대비 청소년활동정책 전략 연구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15호 :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모델 개발연구 I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16호 : 위기청소년 교육적 선도제도 실효성 제고방안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17호 : 청소년을 위한 NPO-기업 사회공헌사업(CSR) 간 협업추진을 위한 '협업지침'과 '중추지원조직 기능·추진사항' 개발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18호 : 미래지향적 「청소년복지 지원법」 정비 방안
- NYPI Bluenote 통계 46호 :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 V
- NYPI Bluenote 통계 47호 : 청년 핵심정책 대상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I : 청년 니트(NEET)
- NYPI Bluenote 통계 48호 : 부모 특성과 아동·청소년 발달의 관계



연구보고 19-R53

아동청소년 성보호를 위한 연령조정 방안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0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6/7층
Social Policy Building, Sejong National Research Complex,
370, Sicheong-daero, Sejong-si, 30147, Korea
Tel. 82-44-415-2114 Fax. 82-44-415-2369 www.nypi.re.kr

아동·청소년 성 보호를 위한 연령조정 방안연구

인 쇄 2019년 12월 23일

발 행 2019년 12월 31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발행인 송 병 국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주) 계문사 전화 02)725-5216(代)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44) 415-2125(학술정보관)